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소속기관)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소속기관 □

2014 :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무역위원회	1
<일 반 회 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 (계속)	7
2. 경제자유구역단	15
<일 반 회 계>	
1) 울춘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21
2)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26
3)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31
4)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37
5)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44
6)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49
7)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54
8)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59
9)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63
10)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67
11)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신규)	71
12) 마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76
13) 군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80
14) 대불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84
15) 동해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88
16) 울춘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92
17) 김제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96
18) 울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신규)	10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9)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계속)	105
20)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계속)	112
21)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계속)	117
22)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계속)	122
23) 석동-소사간 도로(계속)	126
24) 기타 기반시설 지원(계속)	130
25) 명지지구 간선도로(계속)	136
26)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계속)	140

3. 국가기술표준원 145

<일 반 회 계>

1) 국가표준활성화(계속)	151
2) 국제표준활동지원(계속)	166
3)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계속)	177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계속)	183
5) 안전제도기반조성(계속)	190
6)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계속)	200
7)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계속)	209
8)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계속)	221
9) 신기술제품인증(계속)	231
10)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사업(계속)	244
1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계속)	260
12)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계속, ODA)	273
13)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계속, 정보화)	283
14)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계속, R&D)	298
15) 기술표준원충북혁신도시이전정착(계속)	332
16) 기술표준원기관운영(계속)	337
17) 기술표준정책(계속)	341
18) 제품안전정책(계속)	347
19) 지식산업표준화(계속)	355
20) 적합성정책(계속)	360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1,180	1,200	1,470	270	22.5
○ 무역구제지원사업	1,180	1,200	1,470	270	22.5
【 합 계 】	1,180	1,200	1,470	270	22.5

일 반 회 계

무역구제지원사업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무역구제지원사업	1,180	1,200	1,470	270	22.5

* 사업코드 : 21-11-0-110-113-1200-1233-301

* 답 당 자 : 무역조사실장(박진규), 무역구제정책팀장(나기용, 044-203-5850), 사무관(이승준, 044-203-5855), 주무관(전지현, 044-203-585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FTA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 정책 운영
총사업비	'02~계속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2. 사업목적

- ☐ FTA 확대와 같은 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덤핑·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증가가 우려되는 환경 속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무역구제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국제무역질서 확립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무역구제진흥(430백만원) : 중소기업 등의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미래 무역구제 인력양성을 위한 경연대회·논문대회 개최 등
 - * 무역구제지발간 및 세미나(60백만원), 홍보(150백만원), 경연대회 및 논문대회(70백만원), 인쇄비(50백만원), 행사비 및 통역비 등 기타 경비(100백만원)
- 불공정무역행위조사(220백만원) : FTA확대 등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및 무역피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국내산업 보호
 - * 감시·발굴 등 조사활동 및 전문가 자문료, 불공정무역신고센터 등 (170백만원), 무역조정지원 피해진단 비용(50백만원)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500백만원) : 산업피해·덤핑·불공정무역행위 관련 국내외 조사제도 연구, 조사 사례별 이슈 및 시사점 분석 등 무역구제제도 연구
 - * 산업경쟁력조사 (200백만원), 실태조사(70백만원), 무역구제제도연구(230백만원)
-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320백만원) : 양자간·다자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무역구제서울국제 포럼 등 국제협력행사 개최
 - * 국제포럼 등 국제협력행사 개최(160백만원),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및 회의 참석 (100백만원), 무역구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6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무역구제지원사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등 무역구제 관련 정책지원 사업
- 무역구제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홍보, 국제행사, 산업피해진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무역구제관련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특히, 사업적 기반이 열악하고 법률적 대응 능력이 미비한 국내 중소기업이 덤핑 등 불공정 무역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무역구제지원사업 필요
 - FTA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대응하여 조사·심의 예산 확보 필요
 - 국내외 기업 간 특허권 분쟁 등과 같은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의 증가가 우려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위한 현지조사,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 설명회 등 소요예산의 지원 필요
 - 불공정무역신고센터*를 통한 업종별 실태조사와 상담·자문기능 강화
- *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광학공업협동조합, 산업용재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안경산업지원센터, 판유리산업협회,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완구공업협동조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무역구제지원사업(1,470)	1,180	1,200	1,470	270	22.5
▪ 무역구제진흥	259	317	430	113	35.6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79	220	220	-	-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 제도 연구	442	433	500	67	15.5
▪ 전세계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200	230	320	90	39.1
☐ 비목(1,470)	1,180	1,200	1,470	270	22.5
○ 일반수용비(210-01)	508	502	764	262	52.2
○ 국내여비(220-01)	10	9	10	1	11.1
○ 국외업무여비(220-02)	40	20	98	78	390
○ 사업추진비(240-01)	10	9	8	△1	△11.1
○ 연구개발비(260-00)	522	570	500	△70	△12.3
○ 민간경상보조(320-01)	90	90	9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덤핑, 보조금지급, 지채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수출업체의 대응능력 제고
- FTA의 피해를 사전에 진단하고 신속히 지원하는 선제적 무역피해 방지체제 구축, FTA 시대에 맞는 국제협력 전략의 재정비
- 특히, 사업적 기반이 열악하고 법률적 대응 능력이 미비한 국내 중소기업이 덤핑 등 불공정 무역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예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2	무역구제진흥(3.17),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2),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4.33), 국제협력(2.3)
'14	14.7	무역구제진흥(4.3),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2),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5), 국제협력(3.2)
'15	12	무역구제지원사업 12억
'16	12	무역구제지원사업 12억
'17	12	무역구제지원사업 12억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6조(직권조사), 제9조(판정 및 통지), 제14조의 3(포상금의 지급), 제25조(산업경쟁력영향조사),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 동법시행령 제27조(무역구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 추진경위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미관세법332조)를 벤치마킹, '02년 산업경쟁력조사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변속기 등 4개 과제 조사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방안 보고
- '07년 무역위 20주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07년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보고
- '08년 지재권 침해 조사 활성화 방안 발표
- '09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사업 수행
- '10년 EU의 아국산 폴리에스터강력사 반덤핑조치 무혐의 판정
- '11년 2011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11년 한·중,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 '12년 FTA 자문단을 통해 한·중 FTA에 대응
- '12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
- '13년 201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13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무역구제경연대회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무역구제 지원사업	11	11.5	11.5	12	14.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예산 33백만원 불용
- 2011년 : 한미 FTA발효 지연으로 FTA피해 관련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46백만원 불용 및 무역구제 관련 계약체결 지연으로 39백만원 이월
- 2012년 : 일반수용비 1백만원 및 연구개발비 정산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8백만원이 절감되어 총 9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1 ()	- ()	- ()	11.0 ()	10.67 ()	- ()	0.33 ()
'11년	11.5 ()	- ()	- ()	11.5 ()	10.65 ()	0.39 ()	0.46 ()
'12년	11.5 ()	0.39 ()	- ()	11.89 ()	11.80 ()	- ()	0.09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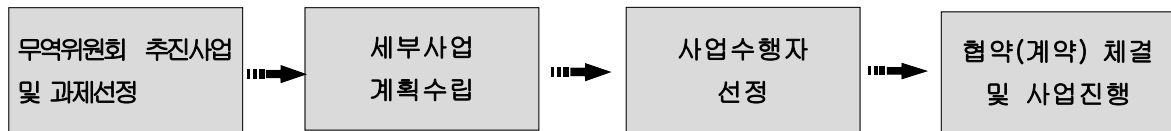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초당적인 준사법 연방 기구,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와 관련한 산업피해 여부 판정, 세이프가드 조치여부의 결정,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수입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무역과 관련한 정부의 전략연구소로서의 기능 수행
-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 통상담당 집행위원 산하에 통상총국장과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덤핑조사국과 피해·상계조사국이 실질적인 무역구제기관으로서 덤핑조치의 감시 및 통제,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WTO 분쟁 해결, 역외국의 무역장벽 조사 등의 기능 수행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 재무부 산하의 준사법적 독립기관, 무역위원회·관세심의위원회·무역재판소 등의 복합적 성격의 기구로써 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판정, 국세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결정, 정부조달 절차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결정, 세이프가드 조사수행 및 정부에 필요한 조치건의 등의 기능 수행

(5) 사업추진절차

○ 무역구제진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경제자유구역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 일반회계 >	124,643	126,570	48,605	△77,965	△61.6
○ 대불자유무역지역조성	10,583	-	-	-	-
○ 울춘자유무역지역조성	11,425	10,437	10,648	211	2.0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62,680	23,236	5,482	△17,754	△76.4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13,663	31,828	11,814	△20,014	△62.9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21,038	47,264	16,871	△30,393	△64.3
○ 동해자유무역지역조성	3,108	10,642	-	△10,642	순감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	469	1,071	969	△102	△9.5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372	406	372	△34	△8.4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	467	489	467	△22	△4.5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152	278	198	△80	△28.8
○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	139	144	423	279	193.8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	-	179	329	150	83.8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	-	-	450	450	순증
○ 마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399	379	379	-	-
○ 군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1	72	72	-	-
○ 대불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4	70	70	-	-
○ 동해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	7	7	-	-
○ 울춘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	6	6	-	-
○ 김제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62	24	△38	△61.3
○ 울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	24	24	순증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18,784	158,715	99,533	△59,182	△37.3
○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16,836	15,425	12,450	△2,975	△19.2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20	1,118	1,128	10	0.9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200	4,830	4,950	120	2.5
○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4,750	6,688	-	△6,688	순감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6,000	40,000	3,320	△36,680	△91.7
○ 소사~녹산간 도로	-	3,066	-	△3,066	순감
○ 석동~소사간 도로	18,000	9,910	11,000	1,090	10.9
○ 기타 기반시설 지원	53,878	53,671	49,098	△4,573	△8.5
○ 송도5-7공구 진입도로	-	1,307	-	△1,307	순감
○ 명지지구 간선도로	14,000	4,000	3,687	△313	△7.8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	18,700	13,900	△4,800	△25.7
【 합 계 】	243,427	285,285	148,138	△137,147	△48.0

일 반 회 계

울촌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울촌자유무역지역조성	11,425	10,437	10,648	211	2.0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04

* 담 당 자 : 관리원장(윤우열, 061-727-9790), 주무관(서도원, 061-727-97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6~'15 (부지조성 : '06~'15, 기반시설확충 : '12~'14)
총사업비	○ 762억원 - 울촌자유무역지역개발 : 571억원(전액 국비) - 울촌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191억원(국비 124, 지방비 67)
사업규모	○ 지역개발 : 부지(343천㎡), 청사(1동), 경비초소(2동) 조성 ○ 기반시설확충 : 연면적 12,662㎡ 규모 표준형공장 1동 건립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지역개발 : 전액국비 - 기반시설확충 : 지방비 매칭, 국비 65%, 지방비 35%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제조·물류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울촌자유무역지역개발) 부지조성 토지매입비 : 4,711백만원
 - 조성원가 123,243원/㎡ x 금차 지급면적 38,225㎡(총 조성면적 343,623㎡)
 - 울촌자유무역지역('10. 6월 준공) 토지매매계약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제4항에 따라 '11년까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비를 완납하여야 하나,
 - 국가재정 여건상 '11년까지 토지비를 미지급 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15년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 (울촌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시설비 : 5,937백만원
 - '13.4월 설계완료, 시공기간 2년('13~'14)을 기준으로 공정을 100%에 해당하는 시설비 필요

□ 지원 필요성

- (개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15년까지 토지비 완납을 위한 '14년 토지비 지원 필요
- (기반시설확충) 외국인투자기업의 표준공장 입주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시설물의 조기 완공으로 외국인 입주수요에 선제적 대응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 울춘자유무역지역조성	11,425	10,437	10,648	211	2.0
▪ 울춘자유무역지역개발	11,207	4,500	4,711	211	4.7
▪ 울춘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218	5,937	5,937	-	-
☐ 비목(합계)	11,425	10,437	10,648	211	2.0
○ 토지매입비(410-00)	11,207	4,500	4,711	211	4.7
○ 실시설계비(420-02)	218	-	-	-	-
○ 시설비(420-03)	-	5,937	5,937	-	-

* (개발) 조성원가 123,243원/m² x 금차 지급면적 38,225m²(총 조성면적 3'43,623m²)

* (기반시설확충) 국비 124억(65%), 지방비 67억(35%) 투입에 따른 공정을 100%의 잔여 시설비(국비) 5,937백만원 투입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개발) '15년까지 토지비 지급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외투기업 및 수출중심 중소기업의 입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 (기반시설확충)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연차별 적기 투입으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04	○ 지역개발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 45억원 ○ 기반시설확충 - 공정을 50%에 따른 시설비 59억원
'14	106	○ 지역개발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 47억원 ○ 기반시설확충 - 공정을 100%에 따른 시설비 59억원
'15	71	○ 지역개발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 71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49조

○ 추진경위

1) 울춘자유무역지역개발

- 2005. 03. :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타당성 검토 완료(산자부, KDI)
- 2005. 12. : 울춘자유무역지역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8호)
- 2006. 12. : 울춘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 2007. 03. : 울춘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10. 06. : 울춘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완공
- 2015. 12. : 총사업비 완료(토지매입비 완료)

2) 울춘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2012. 01. : 지방비 매칭 조건으로 신규사업 확정
- 2012. 08 : 설계용역 착수
- 2013. 04 : 설계용역 완료
- 2013. 06 : 표준공장 착공
- 2014. 12 : 표준공장 완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울춘자유무역 지역조성	25	54	118	104	106
- 개발	25	54	112	45	47
- 기반시설확충	-	-	6	59	5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울춘자유무역지역개발

- '10년 : 비목편성 오류(설계비⇒토지매입비)로 설계비(500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5)	(31)	(-)	(56)	(51)	(-)	(5)
'11년	(54)	(-)	(-)	(54)	(54)	(-)	(-)
'12년	(112)	(-)	(-)	(112)	(112)	(-)	(-)

○ 울춘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12년 : 설계비 낙찰차액 23백만원 불용, 연약지반처리 공사비 산정 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설계비 328백만원 차년도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	()	()	()	()	()	()
'12년	(6)	(-)	(-)	(6)	(2)	(3)	(0.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개발) 자유무역지역 지정 → 토지매매계약 체결 → 대행자(조달청장)를 통한 공사계약 → 토지매입비 지급
- (기반시설확충) 조달청 설계용역 발주 →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62,680	23,236	5,482	△17,754	△76.4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09

* 담 당 자 : 관리원장(오재순, 052-269-7290), 주무관(방상규, 052-269-729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14
총사업비	2,287억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 837,502m ² ○ 공사내역(연면적) - 건축공사 44,640m ² * 표준공장 3개동 36,227m ² , 청사동 7,699m ² , 설비동 453m ² 초소 및 경비동 261m ²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고 70%,(1,601억원) 지방비 30%(686억원)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을 통한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 5,482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일부 면적 제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토지비 감액)에 따라 '13년 대비 76.4% 감액 요구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1호(제척 후 면적 837,502㎡, 당초:1,297,482㎡)
 - 산출내역 : 건축공사 누적공정률 100% 해당 2014년도 국비 분담 건설비 5,482백만원[62,294 × 100% - 56,812 (기배정액 및 지방비 분담액)]
 - * 시설비 4,750백만원, 감리비 639백만원, 부대비 9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조성사업('09~'14년)의 연차별 공사 추진을 위해 잔여 공사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62,680	23,236	5,482	△17,754	△ 76.4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62,680	23,236	5,482	△17,754	△ 76.4
□ 비목(합계)	62,680	23,236	5,482	△17,754	△ 76.4
○ 토지매입비(410)	61,100	-	-	-	-
○ 시설비(420-03)	1,539	22,600	4,750	△17,850	△ 78.9
○ 감리비(420-04)	-	590	639	49	8.3
○ 시설부대비(420-05)	41	46	93	47	102.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종별 적정예산 투입으로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32	시설비 226, 감리비 6 (공정률 58.6%)
'14	55	시설비 48, 감리비 6, 시설부대비 1 (공정률 1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추진경위
 - 2007. 11. (구)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007. 12~2008. 9. 예비타당성조사(KDI) 완료
 - 2008. 12. 울산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 2009. 12. 울산 자유무역지역 설계발주(설계사 삼우건축)
 - 2011. 12. 울산 자유무역지역 설계완료
 - 2012. 04~06.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감리 계약완료
 - 2012. 06. 울산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지경부 고시 제2012-121호)
 - 2012. 07. 건축공사 착공
 - 2013. 07. 부지조성 준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울산자유무역 지역조성	185	270	810	232	5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불용액(75백만원) :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5백만원 불용
- '12년 부지조성공사 지연 및 청사부지 이전 등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시설비·감리비 이월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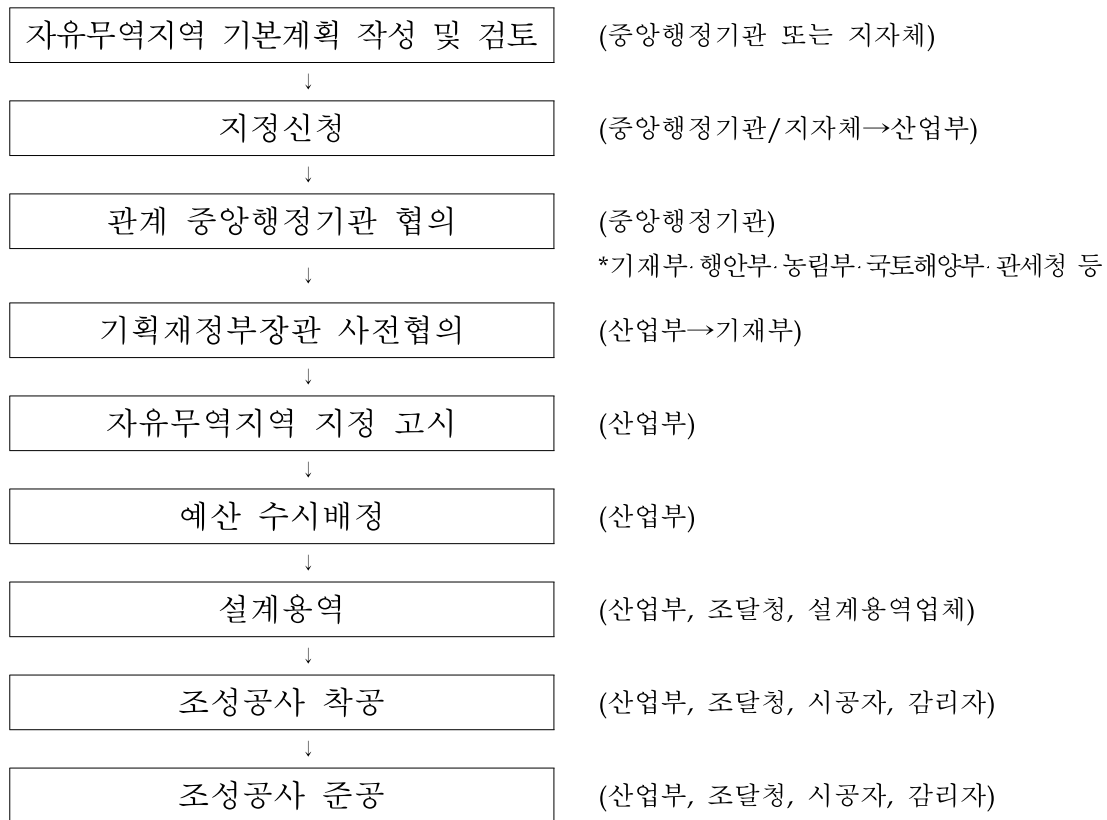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85 ()	20 ()	()	205 ()	204 ()	()	1 ()
'11년	270 ()	()	()	270 ()	270 ()	()	()
'12년	810 ()	()	()	810 ()	627 ()	18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결산 예결위에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나 집행부진으로 주의를 지적받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기간 : '08.1월 ~ '08.6월
- 조사결과(B/C) : 1.5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13,663	31,828	11,814	△20,014	△62.9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10

* 담 당 자 : 관리원장(최영학, 063-545-4811), 주무관(유근상, 063-545-48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9~'15 - 부지조성 : '09~'14, 표준공장 : '13~'15
총사업비	○ 1,160억원 (국비 830억, 지방비 330억) - 부지조성 : 766억원(국비 574억원, 지방비 192억원) - 표준공장 : 394억원(국비 256억원, 지방비 138억원)
사업규모	○ 부지조성 : 991,740㎡ (김제 지평선 일반산단 내) ○ 관리청사 1동(2,130㎡), 식당동(316㎡), 경비초소 2동(64㎡), 울타리(5.2km), 세관검사장, CCTV, 외부보안등 등 ○ 표준공장 5층 3개동 : 35,150㎡
지원조건	○ 국비 : 지방비 매칭방식 - 부지조성 766억원 : 국비 75%, 지방비 25% - 표준공장 394억원 : 국비 65%, 지방비 35%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 진흥, 조세감면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3. '14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부지조성) 잔여 토지매입비 : 6,920백만원
 - [전체 토지매입비 65,869백만원 × 75%(국비) = 49,401백만원] - 既투입액 42,481백만원] = 6,920백만원
- (표준공장) 공정을 70%에 해당하는 14년 소요 공사비 : 4,894백만원
 - [전체 공사비 37,195백만원 × 65%(국비)] = 24,176백만원
 - [24,176백만원 × 공정을 70% = 16,836백만원] - 既투입액 11,942백만원 = 4,894백만원

구 분	'13예산(추경포함)	'14예산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31,828백만원	11,814백만원
▪ 부지조성	토지매입비 15,570백만원 시설비 4,023백만원	토지매입비 6,920백만원
▪ 표준공장 건립	건축비 11,942백만원 감리비 237백만원 시설부대비 56백만원	건축비 4,89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14년도 김제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완료를 위한 잔여사업비 및 표준공장 신축공사 기성율에 따른 공사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13,663	31,828	11,814	△20,014	△62.9
▪ 부지조성	12,452	15,570	6,920	△8,650	△55.6
▪ 표준공장 신축	115	11,942	4,894	△7,048	△59.0
▪ 청사신축	1,068	4,023	-	△4,023	순감
▪ 표준공장 신축 감리비	28	237	-	△237	순감
▪ 표준공장 신축 시설부대비		56	-	△56	순감
☐ 비목(합계)	13,663	31,828	11,814	△20,014	△62.9
○ 토지매입비(410-00)	12,452	15,570	6,920	△8,650	△55.6
○ 실시설계비(420-03)	115	-	-	-	-
○ 시설비(420-03)	1,068	15,965	4,894	△11,071	△69.3
○ 감리비(420-04)	28	237	-	△237	순감
○ 시설부대비(420-05)	-	56	-	△56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종별 적정예산 투입으로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 표준공장 신축공사 '14년 공정을 70%달성

* '15년상반기 준공(예정)후 기업입주 시작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도	금액	산 출 근 거
'13	318	○토지매입비: 156억 ○청사건축비 : 40억 ○표준공장건축 : 122억
'14	118	○토지매입비 : 69억 ○표준공장건축 : 49억
'15	115	○표준공장 건축비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추진경위

- 2007.07. :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수요조사 공고
- 2007.08. : 전라북도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후보지 신청
- 2007.09. : 김제자유무역지역 예비후보지 선정
- 2008.01. ~ 김제자유무역지역 사전연구용역
2008.04. *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전발연
- 2008.03.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8.09. : * 기획재정부, KDI
- 2008.11. : 관계부처 협의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 2008.12.08. : 김제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 고시
* 지식경제부

- 2009.01.06. : 김제자유무역지역 본지역 지정 고시
* 지식경제부
- 2009.09.29. : 조성원가 매입방식으로 조성방식 변경
* 김제시 조성, 지경부 매입
- 2009.12.24. : 김제자유무역지역 토지매매계약 체결
* 지경부-전북도, 김제시
- 2010.01.20. : 김제자유무역지역 기공식 개최
- 2010.08. : 부지조성 공사 착공
- 2011.10.28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2012.03.30 : 기재부 협의 조정 결과 사업기간 연장
* '09 ~ '11 → '09 ~ '13
총사업비 자율조정 70,532백만원 → 76,569백만원
- 2012.05.25 : * 감정평가결과 반영한 직접보상비 및 부대경비 등
간접보상비 6,066백만원 증
- 2014상반기 : 부지조성 완료 예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김제자유무역 지역조성	30	97	174	318	1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30 ()	()	()	30 ()	30 ()	- ()	- ()
'11년	97 ()	()	()	97 ()	95 ()	1.4 ()	0.2 ()
'12년	174.4 ()	1.4 ()	()	175.8 ()	136.6 ()	39.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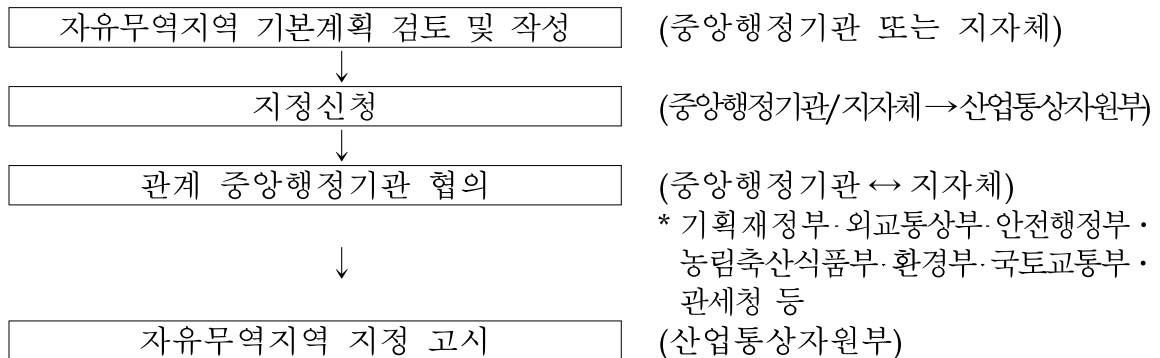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부지조성

- 자유무역지역지정 수요조사, 전문기관 평가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 후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추진

- 지정절차



- 부지조성 시행 : 김제시

- 관리청사 및 부대시설 등 건축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될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를 시공업체 선투자방식으로 김제시에서 우선 조성한 후, 대상부지를 조성원가방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입하고, 그 외 부대시설(관리청사, 울타리, 경비초소 등) 건축

- 표준공장 신축공사

- 설계용역 → 공사착공 → 공사시공 → 표준공장 준공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08. 3. KDI,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조사기관 : 기획재정부(KDI)

- 조사기간 : '08.03. ~ '08.09.

- 조사결과 : B/C 1.62, AHP 0.728, 총사업비 70,532백만원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21,038	47,264	16,871	△30,393	△64.3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11

* 담 당 자 : 관리원장(류금렬), 관리과장(여취구, 055-294-2771), 주무관(강호민, 055-294-274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16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2~'16 - 생산인프라 개선 : '14년 - 확대조성 : '09~'14
총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459억원(408억원) ▪ 생산인프라 개선 : 6.4억원 ▪ 확대조성 : 930억원(720억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부지면적 46,341㎡, 연면적 121,364㎡ ▪ 생산인프라 개선 - 표준공장 옥상데크(5,880㎡), 식목비 ▪ 확대조성 - 1공구 표준공장 4개동 81,007㎡, 주차빌딩 4,116㎡, 삼호천변 도로확장 16,160㎡, 간선도로 확장 9,807㎡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직접수행(국비 65%, 지방비 35%) ▪ 생산인프라 개선 : 직접수행(국비 100%) ▪ 확대조성 : 직접수행(국비 65%, 지방비 35%)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노후된 표준공장 9개동을 재건축(건령 40년)하고, 표준공장 옥상데크 설치, 역내 식목 추가 등을 통한 생산인프라 개선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시설비 등 16,231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정률 55% 이행 소요 시설비(15,881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사 감리비 소요(300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시설부대비 소요(50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생산인프라 개선사업 시설비 6,400백만원
 - 표준공장 옥상데크 건축(360백만원) : 시설비 360백만원
 - 식목비(280백만원) : 시설비 2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정률 55% 달성을 위한 표준공장 건축 시설비(159억) 및 표준감리비(3억) 등 지원 필요
 -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입주업체 생산 차질 및 기존업체 이탈 방지를 위해 신속한 생산시설의 재정비가 필요
 - ※ 사업내용 : 현대식 아파트형 표준공장 5개동 재건축(연면적 121,364㎡)
- '12년말에 1공구 및 3공구에 표준공장 3개동 81,000㎡가 완공 되었으나, 근로지원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옥상 일부에 데크를 설치하여 근로자(1,350명)의 휴식공간 마련 필요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중 “간선도로 정비” 사업(9,807m²)에서 도로변(4,338m) 식목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동 지역에 부응하는 식목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21,038	47,264	16,871	△30,393	△64.3
▪ 노후표준공장재건축	-	38,754	16,231	△22,523	△58.1
▪ 생산인프라개선	-	-	640	640	-
▪ 마산자유무역지역확대조성	14,407	8,510	-	△8,510	-
▪ 마산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6,631	-	-	-	-
☐ 비목(합계)	21,038	47,264	16,871	△30,393	△64.3
○ 설계비(420-02)	182	4,888	-	△4,888	-
○ 시설비(420-03)	20,545	41,390	16,521	△24,869	△60.1
○ 감리비(420-04)	271	915	300	△615	△67.2
○ 시설부대비(420-05)	40	71	50	△21	△29.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차별 소요예산 적기 투입으로 표준공장 재건축사업의 실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73	설계비 49, 시설비 330, 감리비 8, 시설부대비 1
'14	169	시설비 165, 감리비 3, 시설부대비 0.5
'15	344	시설비 405, 감리비 11.4, 시설부대비 0.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
- 추진경위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0. 12 : '11년 상반기 예타 대상과제로 신청(지경부→기재부)
- '11. 3 : '11년 상반기 예타 대상과제로 선정(기재부)
- '11. 4~9월 : KDI, 예타 용역수행
- '11. 10. 7 : 예타 최종결과 통보(기재부→지경부)
- '12. 12 : 설계용역 업체 선정 및 착수
- '13. 6 : 설계용역 중간설계 완료

<마산자유무역지역 생산인프라 개선>

- 2005. 12.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연구수행 : 산업연구원)
에서 노후화 된 기존 생산인프라의 개선 필요성 제기
- 2008. 1~12. 입주기업체의 주차난 해소 건의에 따라 추진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 2007. 07 :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확대 지정 추진
- 2008. 09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기획재정부, KDI)
- 2008. 12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지식경제부)

- 2009. 12 : 설계용역 착수
- 2010. 10 : 총사업비 조정 완료(기획재정부) 및 설계용역 완료
- 2011. 01 : 조성공사 착수
- 2012. 04 : 1공구 주차빌딩 1개동 완공
- 2012. 09 : 1공구 표준공장 1개동 완공
- 2012. 12 : 3공구 표준공장 2개동 완공
- 2012. 12 : 총사업 공정률 85% 달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94	400	158	473	1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2년 예산 수시배정 지연(10월 배정)으로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가 늦어서 관련예산(설계비 1,600백만원, 감리비 385백만원) 이월
- 시설부대비(15백만원)는 미배정으로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	()	()	()	()	()	()
'12년	(20)	()	()	(20)	()	(19.9)	(0.1)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 '10년 : 공사발주의 선행절차인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간 소요로 공사 계약이 지연(당초 '10.7월 계약 예정, 실제 계약은 '10.12월 완료)되어 연내 미착공됨에 따라 시설비 90억원 이월
- '11년 : 표준공장, 주차빌딩 공사는 정상 추진 되었으나, 삼호천변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안 개선을 관계기관(경남도 등) 협의 진행에 따른 시설비 일부(46억원) 미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93 (-)	21 (-)	- (-)	114 (-)	24 (-)	90 (-)	- (-)
'11년	300 (-)	90 (-)	- (-)	390 (-)	344 (-)	46 (-)	- (-)
'12년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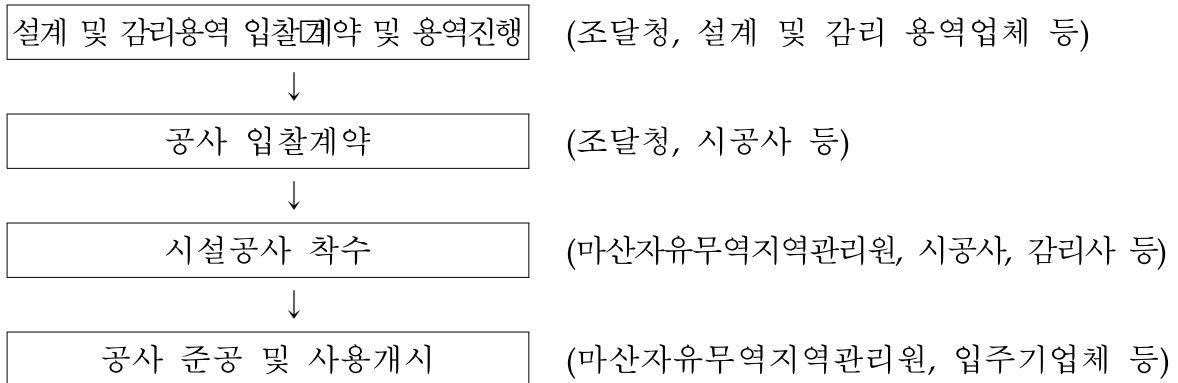
구 분	사업명	평가시기	평가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	자유무역지역조성	'12년	미흡

○ 국회(지경위, 예정처) 지적 및 조치

- (사업명)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 (지적)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해소 및 합리적 예산편성 필요
 - * '09년 예산 21억원 이월, '10년 예산 90억원 이월 등
- (조치) 연도별 공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 편성
 - * '12예산 98억원(전년도 300억원 대비 67% 감액), '13년 예산 85억원(전년도 98억원 대비 13% 감액) 편성
 - * '12년 예산(98억원)은 공정률에 따라 '12년말까지 전액 집행 완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조사기관: 기획재정부(KDI)
- 조사기간: 2011.3.~2011.10.
- 조사결과: B/C 1.02, AHP 0.539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B/C 1.15, AHP 0.604
- 조사기관 : 기획재정부(KDI)
- 조사기간 : 2008.3~2008.9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	469	1,071	969	△102	△9.5%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5-301

* 담 당 자 : 관리원장(류금렬), 관리과장(여취구, 055-294-2778), 주무관(나경선, 055-294-277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71~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국유건물(34동, 151,887㎡), 기반시설물(공용면적 250,045㎡) 유지보수, 조경수 300그루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국유건물(표준공장, 청·관사 등) 및 국유시설물(가로등, 도로·보도 등)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국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고 단지 생산 환경을 개선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사업 지원 (969백만원)

▪ 국유건물 유지보수 : 569백만원

- * 청사(1층 옥상) 방수공사 182백만원, 관사 외벽공사 112백만원, 보일러실 굴뚝철거공사 100백만원, 구내식당 LED등 교체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40백만원, 보일러실 외부 도장공사 37백만원, 기타 기반시설 보수공사 98백만원

▪ 국유시설물 유지보수 : 356백만원

- *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00백만원, 3공구 보행문 설치공사 256백만원

▪ 청사관리 및 조경관리 : 44백만원

- * 청사 시설관리 : 1명×2백만원×12개월 = 24백만원
- * 역내 조경관리 : 4명×2백만원×2.5개월 = 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마산자유무역지역내 국유건물(표준공장, 청사, 지원시설 등) 및 시설물(내곽도로, 보도, 가로등 등)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물로서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 '12년도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00개사(고용 7천명), 수출 23억불

○ 마산자유무역지역 시설관리(전산, 전기, 통신설비, 방화관리 등) 및 조경관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	469	1,071	969	△102	△9.5
○ 국유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432	427	925	498	116.6
○ 외부위탁 용역	37	44	44	-	-
○ 홍보관 리모델링 내역사업	-	600	-	△600	순감
☐ 비목(합계)	469	1,071	969	△102	△9.5
○ 위탁사업비(210-15)	37	44	44	-	-
○ 실시설계비(420-02)	-	32	27	△5	△15.6
○ 시설비(420-03)	432	983	898	△85	△8.6
○ 감리비(420-04)	-	8	-	△8	순감
○ 시설부대비(420-05)	-	4	-	△4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유건물 및 시설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가치 유지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청사관리, 조경관리 등 업무를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0.71	청사 방수공사 2, 기타 기반시설 보수 2.27, 외부위탁 용역 0.44 홍보관 리모델링 6
'14	9.69	국유건물 유지보수 5.69, 국유시설물 유지보수 3.56, 외부위탁 용역 0.44
'15	3.55	국유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외부위탁 용역 3.55
'16	3.25	국유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외부위탁 용역 3.25
'17	2.68	국유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외부위탁 용역 2.6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 유지보수 사업은 개원('70.4.3) 이래 매년 국유재산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마산자유무역 지역관리	7.6	5.2	5.0	10.7	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 전용사유 : 동해·울촌관리원 신설('10.4월)에 따른 운영예산 전용(△)

* '10년 예산편성 시 동해·울촌관리원 조직 미신설로 해당 예산(1.96 억원)을 마산관리원에 편성하였다가 신설 후 분리해 감

○ '11년 : 경상경비 절감으로 4백만원 불용

○ '12년

- 전용사유 : 본부 기본경비 부족에 따른 0.09억원 전용(△)

- 불용사유 : 시설 유지보수공사 낙찰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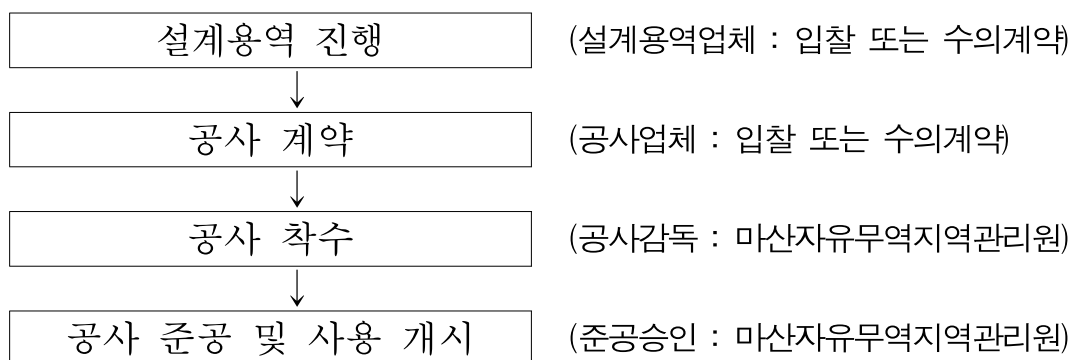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7.59 ()	- ()	-1.96 ()	5.63 ()	5.63 ()	- ()	- ()
'11년	5.21 ()	- ()	- ()	5.21 ()	5.17 ()	- ()	0.04 ()
'12년	4.95 ()	- ()	-0.09 ()	4.86 ()	4.71 ()	- ()	0.15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372	406	372	△34	△8.4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5-303

* 담 당 자 : 관리원장(조상룡), 관리과장(윤윤남, 063-464-0701), 주무관(이금용, 063-464-07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6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계속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사업 아님)
사업규모	건물(13동 : 87,883㎡), 조경식재(조경수 : 68,780주, 조경면적 : 31,571㎡)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국유건물(청사동, 표준공장동 등) 및 국유시설물(내곽도로·가로등 등)의 유지보수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유건물 및 국유시설물 유지·보수 : 82백만원

- 옥상방수공사비 30백만원, 건물외벽방수공사비 30백만원, 기타 국유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22백만원 등 82백만원

- * 노무비(25백만원), 경비(10백만원), 일반관리비, 이윤 및 폐기물처리비(10백만원), 운영비(22백만원) 등 67백만원

- * 관급자재(나라장터 이용 보도블록 구입 등) 및 시설관리 소요 자재 15백만원

○ 국유건물 및 국유시설물 관리 위탁비 : 290백만원

- 시설관리용역(4명/12,990만원)

- 용역원가: 4명 * 213만원(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10,224만원

- 일반관리비: 10,224 * 0.05 = 511만원

- 이윤: (10,224+511) * 0.1 = 1,074만원, 부가세: (10,224+511+1,074) * 0.1 = 1,181만원

- 조경관리용역(2명/6,098만원)

- 용역원가: 2명 * 200만원(직접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4,800만원

- 일반관리비: 4,800 * 0.05 = 240만원

- 이윤: (4,800+240) * 0.1 = 504만원, 부가세: (4,800+240+504) * 0.1 = 554만원

- 청소용역(3명/9,912만원)

- 용역원가: 3명 * 191만원(직접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6,876만원

- 일반관리비: 6,876 * 0.05 = 344만원

- 이윤: (6,876+344) * 0.1 = 722만원, 부가세: (6,876+344+722) * 0.1 = 791만원

- 승강기 보수료: 24 * 12개월 = 288만원, 외부 유리창 닦기(연1회): 511만원

- 방제용역(분기1회): 95 * 4 = 380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유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국유물의 수명연장과 쾌적한 사업환경 조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B-A)	%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372	406	372	△34	△8.4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372	406	372	△34	△8.4
☐ 비목(합계)	372	406	372	△34	△8.4
○ 일반수용비(210-01)	18	23	15	△8	△34.8
○ 위탁사업비(210-15)	271	298	290	△8	△2.7
○ 시설비(420-03)	83	85	67	△18	△21.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유건물 및 시설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민간위탁 용역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로 국유재산의 효용가치 유지 및 자유 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06	○표준공장(7개동) 등 유지보수 0.7 ○역내 보도·차도 및 휴게시설 정비 0.38 ○시설관리: 1.32 / 조경관리: 0.66 / 청소용역: 1
'14	3.72	○표준공장(7개동) 등 유지보수 0.82 ○시설관리: 1.30 / 조경관리: 0.61 / 청소용역: 0.99
'15	3.07	○표준공장(7개동) 등 유지보수 0.82 ○시설관리: 0.83 / 조경관리: 0.61 / 청소용역: 0.81
'16	2.81	○표준공장(7개동) 등 유지보수 0.56 ○시설관리: 0.83 / 조경관리: 0.61 / 청소용역: 0.81
'17	2.32	○표준공장(7개동) 등 유지보수 0.56 ○시설관리: 0.83 / 조경관리: 0.41 / 청소용역: 0.5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추진경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자원부 고시
 - '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 안내 간판, 도로 및 보도 등 유지보수를 통한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군산자유무역 지역관리	4.79	4.50	4.28	4.06	3.7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시설공사 및 민간위탁 조달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 전용사유 : 울산무역원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40백만원 본부에서 자체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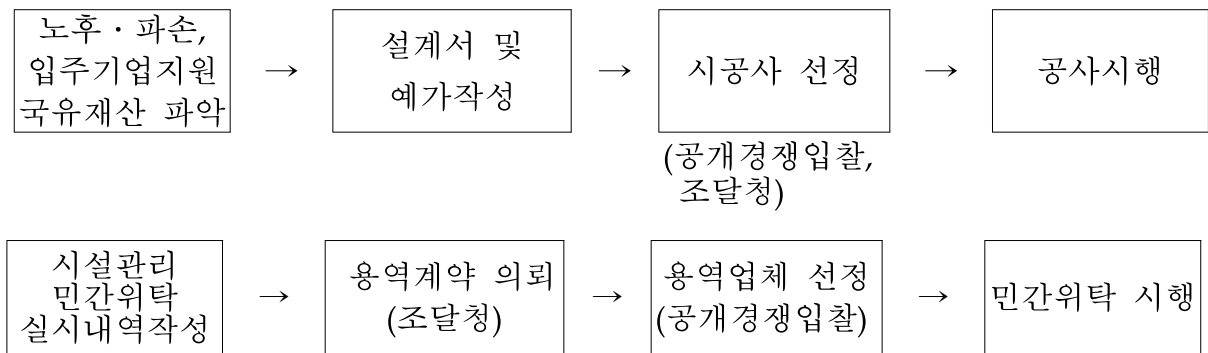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79 ()	()	()	4.79 ()	4.1 ()	()	0.69 ()
'11년	4.5 ()	()	()	4.5 ()	4.02 ()	()	0.48 ()
'12년	4.28 ()	()	△0.4 ()	3.88 ()	3.72 ()	()	0.16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	467	479	467	△12	△2.5%

* 사업코드 : 21-11-0-110-116-7110-7135-309

* 담 당 자: 관리원장(김성수), 관리과장(홍태화, 061-464-0741), 주무관(정현재, 061-464-074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국유건물(12동 : 68,366㎡), 내부도로(98,619㎡), 조경수(68,780주) 가로등(239기), 보도블럭(27,414㎡), 표준공장(56,856㎡), 임차관사(6채)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대불자유무역지역 민간위탁, 관리, 관사취득

- 대불자유무역지역 국유건물 및 국유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 전문용역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국유건물(표준공장, 청사동, 업무동) 및 국유시설물(내곽도로·가로등 등)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 지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 완료('08.5월) 및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직제신설('08.8월)에 따른 지방인사 발령 직원의 주거안정 대책 필요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대불자유무역지역 민간위탁 운영비 407백만원
 - 청소관리 용역 : 121백만원
 - 인건비 : $1,500\text{천원} \times 4\text{명} \times 12\text{월} = 71,850\text{천원}$
 - 경비 및 재료비 : 18,637천원
 -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23,394천원
 - 저수조 청소, 방제용역, 외부유리창 등 특별청소 : 7,532천원
 - 시설관리 용역 : 253백만원
 - 인건비(주·야간 교대) : $3,000\text{천원} \times 5\text{명} \times 12\text{월} = 180,117\text{천원}$
 - 경비 및 재료비 : 19,374천원
 -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53,962천원
 - 조경관리 용역 : 85백만원
 - 인건비 : $2,200\text{천원} \times 2\text{명} \times 12\text{월} = 52,553\text{천원}$
 - 경비 및 재료비 : 12,556천원
 - 용역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20,697천원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 시설비 50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내 구도로 일부 포장공사 및 석면조사 용역비
 - 관급자재대(아스콘) 300ton x 7만원 = 22백만원
 - 공사 도급액(연장 100m, 폭 13m 포장) : 8백만원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 용역비(견적 의뢰) : 20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관사 취득비 10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관사 취득비
 - 2014년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4채의 전세금 상승분
 - * 전세금 인상분 1채당 250만원 x 4채 = 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	467	479	467	△12	△2.5
▪ 민간위탁	394	407	407	-	-
▪ 국유시설물 유지보수	73	72	50	△22	△31
▪ 관사취득	-	-	10	10	순증
□ 비목(합계)	467	479	467	△12	△2.5
○ 위탁사업비(210-15)	394	407	407	-	-
○ 시설비(420-03)	73	72	50	△22	△31
○ 무형자산(440-00)	-	-	10	1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 ~ '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 완료('08.5월) 이후, 국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관리 실시
- 대불자유무역지역 내 국유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 실시로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5	위탁사업비 : 428백만원 시설비 : 76백만원
'13	4.8	위탁사업비 : 407백만원 시설비 : 72백만원
'14	4.7	위탁사업비 : 407백만원 시설비 : 50백만원 무형자산 : 10백만원
'15	3.6	위탁사업비 : 341백만원 시설비 : 20백만원 무형자산 : 10백만원
'16	3.3	위탁사업비 : 312백만원 시설비 : 20백만원 무형자산 : 10백만원
'17	2.7	위탁사업비 : 263백만원 시설비 : 10백만원 무형자산 : 1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 및 제49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추진경위

- '02.11월 :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0)
- '05.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시설공사 착공
시설공사 착공(청사, 표준형 공장, 물류 창고 등)
- '08. 5월 : 대불자유무역지역 준공
- '08. 8월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개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대불자유무역지역 관리	5.8	5.3	5	4.8	4.7

(2) 최근 3년간 이월예산, 이월예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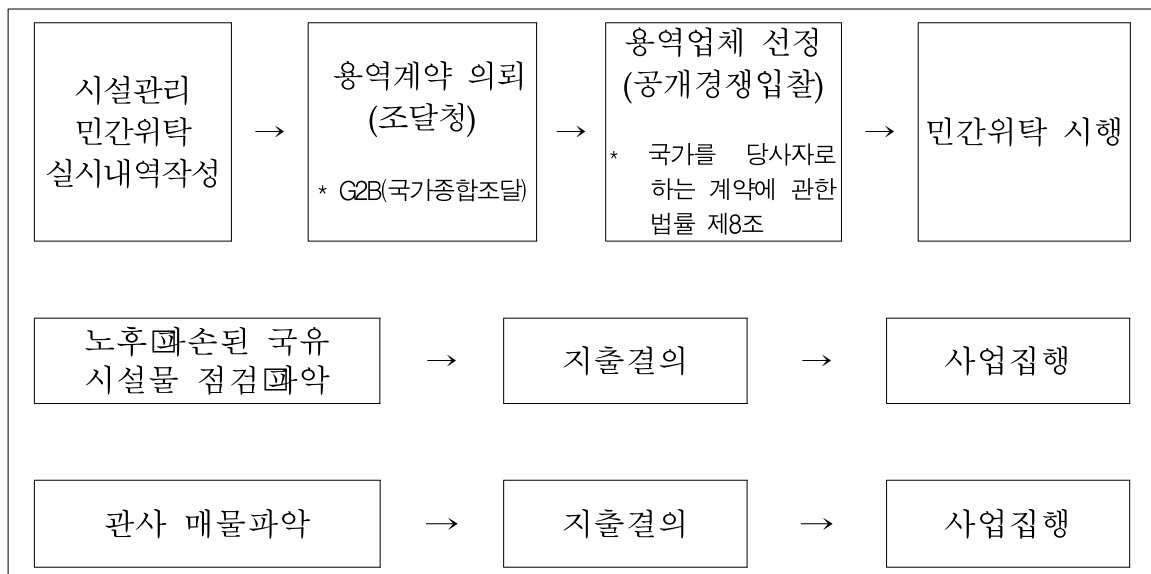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5.8 ()	()	△3.2 ()	2.6 ()	2.6 ()	()	0 ()
'11년	5.3 ()	()	()	5.3 ()	4.5 ()	()	0.8 ()
'12년	5 ()	()	△0.3 ()	4.7 ()	4.7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152	278	198	△80	△28.8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5-313

* 담 당 자 : 관리원장(김형우, 033-522-6111), 주무관(이용욱, 033-522-618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국유건물 4동(연면적 27,036㎡) 및 도로, 조경 등 국유시설물 유지 관리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내 국유건물(청사, 초소, 표준공장 등) 및 국유시설물(내곽도로, 보도, 울타리, 조경시설물 등)을 유지보수하고, 외부 위탁 운영하여 외투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동해자유무역지역 외부위탁 운영비 198백만원

○ 산출근거

- 시설관리용역 : 89백만원

- 용역원가: 3명 * 195만원* 12개월 = 7,020만원
- 일반관리비: 7,020 * 0.05 = 351만원
- 이윤 및 부가세: 1,529만원

- 조경관리용역 : 30백만원

- 용역원가: 1명 * 196만원 * 12개월 = 2,352만원
- 일반관리비: 2,352 * 0.05 = 118만원
- 이윤 및 부가세: 530만원

- 청소용역 : 55백만원

- 용역원가: 2명 * 182만원 * 12개월 = 4,368만원
- 일반관리비: 4,368 * 0.05 = 218만원
- 이윤 및 부가세: 914만원

- 기타 장비및소모품구입 : 13백만원, 저수조청소(2회) : 2백만원,
방제용역(4회) : 4백만원, 제설용역 :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유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국유물의 수명연장과 쾌적한 사업환경 조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152	278	198	△ 80	△ 28.8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152	278	198	△ 80	△ 28.8
☐ 비목(합계)	152	278	198	△ 80	△ 28.8
○ 외부사업비(210-15)	152	198	198	-	-
○ 자산취득비(430-01)	-	80	-	△ 80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원활한 자유무역지역 운영을 위한 기본적 유지활동 수행 및 입주업체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78	
'14	1.98	시설관리용역 0.89 청소용역 0.55 조경관리 0.3 제설, 방제, 저수조 청소 용역 0.11 장비 및 소모품 구입 0.13
'15	1.98	전년과 동일
'16	1.98	전년과 동일
'17	1.98	전년과 동일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추진경위

- 2005. 12 :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7호)
- 2010. 6 : 동해자유무역지역 준공, 개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	2.80	1.52	2.78	1.9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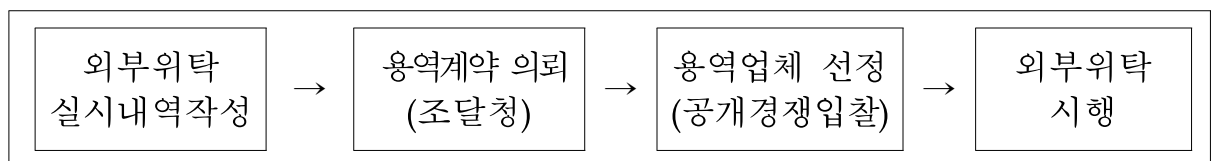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2.80)	(-)	(-0.16)	(2.64)	(2.64)	(-)	(-)
'12년	(1.52)	(-)	(-)	(1.52)	(1.52)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	139	144	423	279	193.8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5-314

* 담 당 자 : 관리원장(윤우열, 061-727-9790), 주무관(서도원, 061-727-97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11 ~ 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343천㎡ 규모의 자유무역내 국유재산(청사,초소,도로, 조경시설 등) 유지관리
지원조건	○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자유무역지역내 국유건물(청사, 초소, 표준공장 등) 및 국유시설물(내곽도로, 보도, 울타리, 조경시설 등)을 유지보수하고, 외부위탁 운영하여 외투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위탁사업비 : 123백만원

- 시설관리용역(2명/6,829백만원)

- 용역원가: 2명 * 224만원(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5,376만원
- 일반관리비: 5,376 * 0.05 = 268만원
- 이윤: (5,376+268) * 0.1 = 564만원, 부가세: (5,376+268+564) * 0.1 = 621만원

- 조경관리용역(1명/32백만원)

- 용역원가: 1명 * 205만원(직접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2,460만원
- 일반관리비: 2,460 * 0.05 = 123만원
- 이윤: (2,460+123) * 0.1 = 258만원, 부가세: (2,460+123+258) * 0.1 = 284만원

- 청소용역(1명/22백만원)

- 용역원가: 1명 * 150만원(직접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1,800만원
- 일반관리비: 1,800 * 0.05 = 90만원
- 이윤: (1,800+90) * 0.1 = 189만원, 부가세: (1,800+90+189) * 0.1 = 155만원

○ 국유시설물 유지보수 : 300백만원

- 청사보수공사 : 300백만원

- 시설비 : 290백만원, 실시설계비 : 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유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국유물의 수명(물리적·경제적·기능적 내용연수)연장과 쾌적한 사업환경 조성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및 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	139	144	423	279	193.7
▪ 위탁사업비	139	144	123	△21	△14.6
▪ 국유시설물 유지보수	-	-	300	300	순증
☐ 비목(합계)	139	144	423	279	193.7
○ 위탁사업비(210-15)	139	144	123	△21	△14.6
○ 실시설계비(420-02)	-	-	10	10	순증
○ 시설비(420-03)	-	-	290	29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청사동, 경비초소, 표준공장 등 시설공사 준공과 더불어 외투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관리조직 신설로 국유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44	○ 시설,조경,청소용역 인건비 : 85백만원 ○ 장비구매 및 소모품비 : 9백만원 ○ 저수조 청소, 방제용역, 특별청소등 : 50백만원
'14	4.23	○ 시설,조경,청소용역 인건비 : 123백만원 ○ 국유시설물유지보수 : 300백만원
'15	1.09	○ 시설,조경,청소용역 인건비 : 85백만원 ○ 저수조 청소, 방제용역, 특별청소등 : 24백만원
'16	1.00	○ 시설,조경,청소용역 인건비 : 86백만원 ○ 저수조 청소, 방제용역, 특별청소등 : 14백만원
'17	0.82	○ 시설,조경,청소용역 인건비 : 72백만원 ○ 저수조 청소, 방제용역, 특별청소등 : 1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추진경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5-108호(2005.12.12.)에 의거 지정 고시된 울춘자유무역지역의 국유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울춘자유무역 지역관리	-	1.60	1.52	1.44	4.2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 '12년 불용사유 : 낙찰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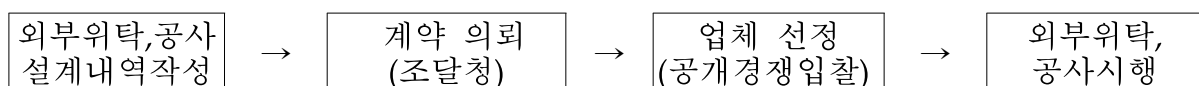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1.60)	()	()	(1.60)	(1.44)	()	(0.16)
'12년	(1.52)	()	()	(1.52)	(1.39)	()	(0.1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	-	179	329	150	83.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5 - 320

* 담 당 자 : 관리원장(최영학, 063-545-4811), 주무관(유근상, 063-545-48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관리청사 1동(2,130㎡), 식당동(316㎡), 경비초소 2동(64㎡) 울타리(5.2km), 세관검사장, CCTV, 외부보안등, 관사 1동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내 국유건물, 시설물 유지보수 외부위탁 및 관사취득

3. '14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시설관리용역(3명/8,981만원)

· 용역원가: 3명 * 200만원(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7,200만원

- 일반관리비: $7,200 * 0.05 = 360$ 만원
- 이윤: $(7,200+432) * 0.08 = 605$ 만원, 부가세: $(7,200+360+60) * 0.1 = 8,981$ 만원
- 청소용역(3명/8,983만원)
 - 용역원가: 3명 * 180만원(직접노무비+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6,480만원
 - 일반관리비: $6,480 * 0.05 = 324$ 만원
 - 이윤: $(6,480+389) * 0.08 = 544$ 만원, 부가세: $(6,480+324+544) * 0.1 = 735$ 만원
 - 승강기 보수료: $25 * 12$ 개월 = 300만원, 외부 유리창 닦기(연1회): 500만원
 - 방제용역(연4회): 100만원
- 관사취득(1동/15,000만원)
 - 김제관리원 조직 정원 : 8명 (4급 1, 5급 2, 6급 2, 7급 2, 기능 1)
 - 관사 소요면적 : 166m²
 - 66m² : 청사시설기준표 4급기관장 1명 기준
 - 소요예산
 - 아파트 1채 × 150백만원 = 150백만원(4급 1명 기준)

□ 지원 필요성

- 김제자유무역지역 국유건물(청사, 표준공장, 업무지원동 등) 및 시설물(도로, 조경수, 가로등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동시설물의 체계적·효율적인 유지 관리 추진
- 인사이동으로 본 관리원에 배치된 직원의 주거지(자녀교육, 배우자 직업 등)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본부와의 순환보직등 어려운 사안 등으로 주거지 지방이전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직원전용 관사 제공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	-	179	329	150	83.7
▪ 외부위탁	-	179	179	-	-
▪ 관사취득	-	-	150	150	순증
☐ 비목(합계)	-	179	329	150	83.7
○ 위탁사업비(210-15)	-	179	179	-	-
○ 임차료(210-07)	-	-	150	15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김제자유무역지역 국유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국유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자유무역지역 관사취득하여 타지역 직원들의 전입 유도 및 소속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원 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도	금액	산 출 근 거
'13	1.79	- 시설관리용역 9,212만원 - 청소용역 8,786만원
'14	3.29	- 시설관리용역 8,981만원, 청소용역 8,983786만원 - 관사취득 15,000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2008.1월 김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2013년 관리청사, 부대시설등이 준공되고, 국유건물의 유지 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김제자유무역지관리	-	-	-	1.79	3.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외부위탁 : 실시내역작성 → 용역입찰공고 → 용역업체선정 → 위탁시행
- 관사취득 : 부동산 시장 조사 → 임대차계약체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	-	-	450	450	순증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5-321

* 담 당 자 : 관리원장(오재순, 052-269-7290), 주무관(박상욱, 052-269-729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4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국유시설물(44,476㎡), 부지(434,150㎡) 유지관리 - 소속직원관사 전용면적(60㎡×1채) 임대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울산자유무역지역 외부위탁 운영비

- 자유무역지역내 국유건물 및 국유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외부위탁 운영하여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 지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관사취득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직제 신설에 따라 소속직원의 주거안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울산자유무역지역 외부위탁 운영비 : 250백만원

- 시설관리용역(4명/134백만원)

▪ 용역원가 : $4명 \times 224만원^{**}(\text{노무비} + \text{각종 보험료 등}) \times 12\text{개월} = 10,752\text{만원}$

* 소요인원은 군산 및 대불관리원 인원을 준용

** 산출금액은 울촌관리원 금액을 준용

▪ 일반관리비 : $10,752\text{만원} \times 3\% = 323\text{만원}$

▪ 이윤 $(10,752 + 323) \times 0.1 = 1,108\text{만원}$, 부가세: $0,752 + 323 + 1,108 \times 0.1 = 1,218\text{만원}$

- 청소용역(4명/116백만원)

▪ 용역원가 : $4명 \times 191만원^{**}(\text{노무비} + \text{각종 보험료 등}) \times 12\text{개월} = 9,168\text{만원}$

* 소요인원은 군산 및 대불관리원 인원을 준용

** 산출금액은 울촌관리원 금액을 준용

▪ 일반관리비 : $9,168\text{만원} \times 3\% = 275\text{만원}$

▪ 이윤 : $(9,168 + 275) \times 0.1 = 944\text{만원}$, 부가세 : $(9,168 + 275 + 944) \times 0.1 = 1,039\text{만원}$

▪ 방제용역 : $25\text{만원} \times \text{매분기} = 100\text{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관사취득 : 200백만원

- 시설규모

▪ 관사 소요면적 : 66m^2

※ 입주기준 면적 내역 (166m^2) = 66m^2 (청사시설기준표 4급기관장 1명 기준)

- 소요예산

▪ 공급면적 79(전용면적 60) m^2 기준 : 2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울산자유무역지역 외부위탁

- 울산자유무역지역 국유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동시설물의 체계적·효율적인 유지관리 추진

○ 울산자유무역지역 관사취득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직제 신설('12.8월)에 따라 소속직원의 주거안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	-	-	450	450	순증
▪ 외부위탁사업 운영비	-	-	250	250	순증
▪ 관사취득	-	-	200	200	순증
□ 비목(합계)	-	-	450	450	순증
○ 위탁사업비(210-15)	-	-	250	250	순증
○ 임차료(210-07)	-	-	200	2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울산자유무역지역 국유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지방 소속기관의 관사취득으로 타지역 직원들의 전입유도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원 운영 기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	-
'14	4.5	- 위탁사업비 250백만원 - 관사취득 2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추진경위

- '08년 12월 :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
- '12년 6월 : 울산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 착공
- '12년 8월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개원
- '14년 2월 : 울산자유무역지역 청사동 준공
- '14년 7월 : 경공업 표준공장동 1개동 준공
- '14년 9월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준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울산자유무역 지역관리	-	-	-	-	4.5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마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399	379	379	-	-

* 사업코드 : 19-11-0-110-116-7100-7135-451

* 담 당 자 : 관리원장(류금렬), 관리과장(여취구, 055-294-2778), 주무관(나경선, 055-294-277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71~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도로 등 면적 250,045㎡) 유지관리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마산자유무역지역내 기반시설물(도로·보도, 가로등 등)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사업 지원 (379백만원)
 - 운영비(210) : 379백만원

- * 일반수용비(210-01, 단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5백만원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가로등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 60백만원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단지내 도로 등 청소용역비 등) : 31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100개사)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도로, 지원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공동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필요
- * 본 예산은 수입대체경비로 세출예산의 삭감시 세입예산도 동일하게 삭감되어야하므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의한 삭감 대상에서 제외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399	379	379	-	-
▪ 마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399	379	379	-	-
□ 세출예산비목(합계)	399	379	379	-	-
○ 일반수용비(210-01)	25	25	5	△20	8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50	60	10	2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0	290	314	24	8.3
○ 위탁사업비(210-15)	30	-	-	-	-
○ 시설비(420-03)	24	14	-	△14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유건물 및 시설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가치 유지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청사관리, 조경관리 등 업무를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79	공동시설(도로 등 면적 250,045㎡) 유지관리 3.79
'14	3.79	공동시설(도로 등 면적 250,045㎡) 유지관리 3.79
'15	2.86	공동시설(도로 등 면적 250,045㎡) 유지관리 2.86
'16	2.62	공동시설(도로 등 면적 250,045㎡) 유지관리 2.62
'17	2.16	공동시설(도로 등 면적 250,045㎡) 유지관리 2.1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마산무역원 공동시설유지관리사업은 개원('70.4.3) 이래 매년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4.20	4.20	3.99	3.79	3.7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불용사유 : 경상경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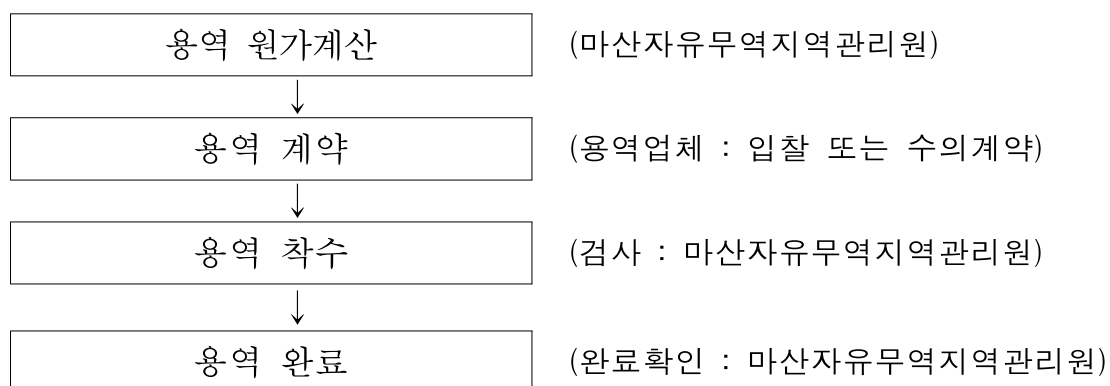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20 ()	- ()	- ()	4.20 ()	3.95 ()	- ()	0.25 ()
'11년	4.20 ()	- ()	- ()	4.20 ()	4.20 ()	- ()	- ()
'12년	3.99 ()	- ()	- ()	3.99 ()	3.99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군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군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61	72	72	-	-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6-452

* 담 당 자 : 관리원장(조상룡), 관리과장(윤윤남, 063-464-0701), 주무관(이금용, 063-464-07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6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계속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사업 아님)
사업규모	내부도로(98,619㎡), 가로등(244기), 보안등(111기), 보도블록, 울타리 등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동부담금(수입대체경비)을 활용하여 공동시설물(가로등, 보·차도, 울타리 등)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활용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군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 72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역내 가로등 등 전기료 = 121 * 12 = 1,452만원

- 도로청소용역(2명/5,701만원)

• 용역원가: 2명 * 187만원(직접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4,488만원

• 일반관리비: 4,488 * 0.05 = 224만원

• 이윤: (4,488+224) * 0.1 = 471만원, 부가세: (4,488+224+471) * 0.1 = 518만원

□ 지원 필요성

○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를 요하는 계속사업으로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 세부 내역 >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백만원)	
				증 감 (B-A)	%
□ 군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1	72	72	-	-
▪ 군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1	72	72	-	-
□ 비목(합계)	61	72	72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1	13	15	2	1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0	57	57	-	-
○ 시설비(420-03)	-	2	-	△2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단지내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울타리 등 각종 기반 시설물 유지 관리로 입주기업의 사업활동 지원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0.72	○ 공공요금: 0.13 / 도로청소: 0.57 / 제설용품: 0.02
'14	0.72	○ 공공요금: 0.15 / 도로청소: 0.57
'15	0.54	○ 공공요금: 0.16 / 도로청소: 0.36 / 제설용품: 0.02
'16	0.50	○ 공공요금: 0.17 / 도로청소: 0.31 / 제설용품: 0.02
'17	0.41	○ 공공요금: 0.18 / 도로청소: 0.21 / 제설용품: 0.0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추진경위

- 장기간 개보수 공사가 없었던 공동화장실, 가로등 등 부속물들의 대수선 등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군 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1.20	0.8	0.76	0.72	0.7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역내 공공요금 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불용
- 전용사유 : 김제무역원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으로 440만원
본부에서 자체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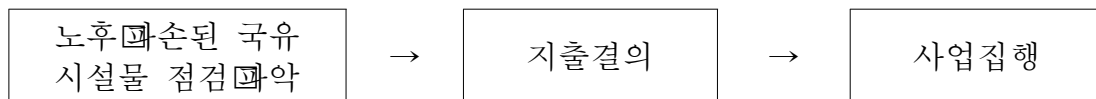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20 ()	()	()	1.20 ()	1.07 ()	()	0.13 ()
'11년	0.8 ()	()	()	0.8 ()	0.72 ()	()	0.08 ()
'12년	0.76 ()	()	△0.04 ()	0.72 ()	0.61 ()	()	0.1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대불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74	70	70	-	-

* 사업코드 : 21-11-0-110-116-7110-7136-453

* 담 당 자: 관리원장(김성수), 관리과장(홍태화, 061-464-0741), 주무관(정현재 , 061-464-074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가로등 239기, 체육시설 4,792㎡, 경계울타리 4,000㎡, 내부도로 98,619㎡, 보도블럭 27,414㎡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공동부담금을 활용(수입대체경비)하여 공동 시설물(가로등, 체육시설, 경계울타리 등) 유지 보수 및 운영비로 활용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70백만원
 - 일반수용비 : 4백만원(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24백만원(가로등 요금 등 = 월 2백만원x12월)
 - 시설장비유지비 : 42백만원
 - 역내 도로, 보도 블록 유지보수 : 7백만원
 - 가로등 유지 보수 : 20백만원
 - 구도로 포장공사 폐기물 처리 10백만원
 - 수목관리, 가로수·경계 울타리 정비 : 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세부 내역 >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대불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4	70	70	-	-
▪ 대불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4	70	70	-	-
□ 비목(합계)	74	70	70	-	-
○ 일용임금(110-03)	3	-	-	-	-
○ 일반수용비(210-01)	5	4	4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	24	24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2	42	42	-	-
○ 시설비(420-03)	2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 ~ '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불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가로등 등 공동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실시로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0.7	인건비 : 3백만원 운영비 : 69백만원 시설비 : 2백만원
'13	0.7	운영비 : 70백만원
'14	0.7	운영비 : 70백만원
'15	0.5	운영비 : 53백만원
'16	0.5	운영비 : 48백만원
'17	0.4	운영비 : 4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추진경위

- '02.11월 :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고시
- '05. 6월 : 시설공사 착공(청사, 표준형 공장, 물류 창고 등)
- '08. 5월 : 대불자유무역지역 준공
- '08. 8월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개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0.8	0.8	0.7	0.7	0.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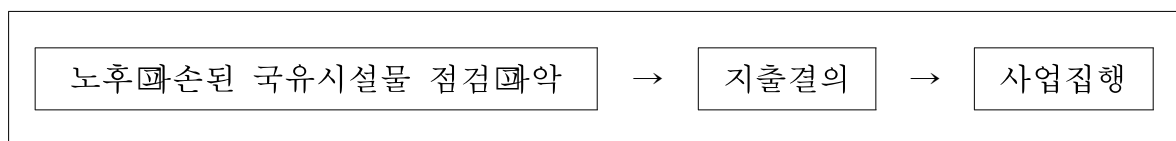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0.8 ()	()	()	0.8 ()	0.8 ()	()	()
'11년	0.8 ()	()	()	0.8 ()	0.8 ()	()	()
'12년	0.7 ()	()	()	0.7 ()	0.7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동해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동해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7	7	7	-	-

* 사업코드 : 21-0-110-116-7100-7136-454

* 담 당 자 : 관리원장(김형우, 033-522-6111), 주무관(이용욱, 033-522-618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표준공장 3개동 시설물, 내곽도로(26,307㎡), 가로등(67기) 관리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가로등, 내부도로 등)을 유지·보수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입주기업 생산 활동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동해무역원 공동시설유지관리 사업비 : 7백만원

○ 산출근거

- 일반수용비 : 2백만원(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5백만원(가로등 요금=월 416천원 × 12월)

□ 지원 필요성

-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를 요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
- 동해자유무역지역내 도로, 가로등 등 기타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동해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	7	7	-	-
▪ 동해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	7	7	-	-
□ 비목(합계)	7	7	7	-	-
○ 일반수용비(201-01)	2	2	2	-	-
○ 공공요금(210-02)	5	5	5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원활한 자유무역관리원 운영을 위한 기본적 유지활동 수행 및 입주업체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0.07	
'14	0.07	○ 일반수용비 : 0.02 ○ 공공요금 : 0.05
'15	0.05	○ 일반수용비 : 0.02 ○ 공공요금 : 0.03
'16	0.05	○ 일반수용비 : 0.02 ○ 공공요금 : 0.03
'17	0.04	○ 일반수용비 : 0.15 ○ 공공요금 : 0.2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동법 시행령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추진경위

- '05. 12 :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산자부고시 제2005-107호)
- '10. 06 : 동해자유무역지역 준공 및 개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동해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	0.07	0.07	0.07	0.0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입주저하로 인한 공동부담금 징수감소(당초 7백만원 징수 예상하였으나, 2백만원 징수로 2백만원만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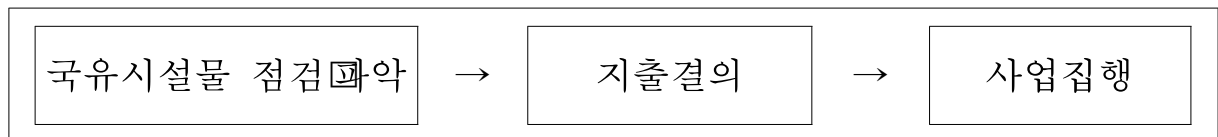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0.07)	(-)	(-)	(0.07)	(0.02)	(-)	(0.05)
'12년	(0.07)	(-)	(-)	(0.07)	(0.0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울촌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울촌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6	6	6	-	-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6-455

* 담 당 자 : 관리원장(윤우열, 061-727-9790), 주무관(서도원, 061-727-97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11 ~ 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내곽도로(45,400㎡), 가로등(129기), 울타리, 조경시설 관리 등
지원조건	○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자유무역지역內 도로, 가로등, 울타리, 운동장, 기숙사 등 입주업체
공동시설 유지관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울촌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6백만원
 - 일반수용비 : 1백만원(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 공공요금 및 제세 : 5백만원(전기, 상하수 요금 = 월 41만원*12월)

□ 지원 필요성

- 울촌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도로, 지원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공동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 편성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울촌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	6	6	-	-
▪ 울촌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	6	6	-	-
□ 비목(합계)	6	6	6	-	-
○ 일반수용비(210-01)	1	1	1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5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울촌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물(도로, 가로등, 울타리,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체 생산활동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0.06	○ 소모품(1백만원), 공공요금(5백만원)
'14	0.06	○ 전년과 동일
'15	0.05	○ 공공요금(5백만원)
'16	0.04	○ 공공요금(4백만원)
'17	0.03	○ 공공요금(3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추진경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유지비)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5-108호(2005.12.12.)에 의거 지정 고시된 울춘자유무역지역의 공동시설 유지·관리업무를 '11부터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울춘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	0.06	0.06	0.06	0.0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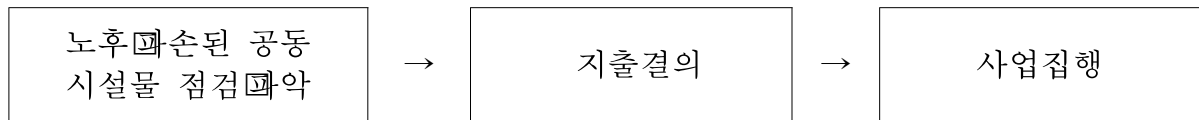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0.06)	()	()	(0.06)	(0.06)	()	()
'12년	(0.06)	()	()	(0.06)	(0.0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김제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김제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	62	24	△38	△61.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6 - 456

* 담 당 자 : 관리원장(최영학, 063-545-4811), 주무관(유근상, 063-545-48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가로등 206기, 울타리 5,200m, 내부도로 82,217㎡, 보도블럭 31,133㎡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내 국유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3. '14년 예산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공공요금및제세 : 역내 가로등 전기 요금 = 900만원

-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청소) 용역(2명/1,500만원)
 - 용역원가: 1명 * 100만원(직접노무비 + 각종 보험료 등 경비) * 12개월 = 1,200만원
 - 일반관리비: 1,200 * 0.04 = 48만원
 - 이윤: (1,200+48) * 0.05 = 62만원, 부가세: (1,200+48+62) * 0.1 = 131만원

□ 지원 필요성

- 김제자유무역지역내 노후, 파손된 공동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 김제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62	24	△38	△61.2
▪ 김제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62	24	△38	△61.2
□ 비목(합계)	-	62	24	△38	△61.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3	9	△4	△30.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9	15	△34	△69.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단지내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울타리 등 각종 공동시설물 유지 관리로 입주기업의 사업활동 지원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도	금액	산 출 근 거
'13	0.62	- 공공요금 13백만원 - 시설유지 49백만원
'14	0.24	- 공공요금 9백만원 - 청소용역 15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2008.1월 김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2014년 부지조성이 준공되므로, 국유건물의 유지 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김 제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	-	-	0.62	0.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공공요금 : 전기료 등 납부
- 유지보수 : 실시내역작성 → 용역입찰공고 → 용역업체선정 → 위탁시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울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울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	-	24	24	순증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6-457

* 담 당 자 : 관리원장(오재순, 052-269-7290), 주무관(박상욱, 052-269-729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4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울산자유무역지역내 공동시설 (도로 등 434천㎡)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공동시설유지관리

- 울산자유무역지역내 공동시설 (도로 등 434천㎡)유지관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공공요금 및 제세 :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15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국유 시설물 유지·보수 9백만원
 - 수목관리, 가로수와 경계 울타리 정비 : 5백만원
 - 관리용품 및 소모품 구매 : 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울산자유무역지역내 공동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울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	24	24	순증
▪ 울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	24	24	순증
☐ 비목(합계)	-	-	24	24	순증
○ 공공요금및제세	-	-	15	15	순증
○ 시설장비유지비	-	-	9	9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단지내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울타리 등 각종 공동시설물 유지 관리로 입주기업의 사업활동 지원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	-
'14	0.24	- 공공요금 15백만원, 시설장비유지 9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추진경위

- '08년 12월 :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
- '12년 6월 : 울산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 착공
- '12년 8월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개원
- '14년 2월 : 울산자유무역지역 청사동 준공
- '14년 7월 : 경공업 표준공장동 1개동 준공
- '14년 9월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준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울산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	-	-	-	0.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16,836	15,425	12,450	△2,975	△19.2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4 - 4900 - 490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성진),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주무관(홍승영, 044-203-46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유치대상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소 초기운영비 지원 등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25~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으로 동북아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9,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기간 : 5년 범위내

- 외국교육기관(7개) : 6,000백만원
 - 개교 및 개교예정 : 뉴욕주립대 스톤브룩(1,200), 겐트대(1,200), 조지메이슨대(600), 유타대(800)
 - 설립협약 체결예정 : 에버딘대(600 / MOU 13.3월), 모스크바 국립무용아카데미(600 / MOU: 13.4월)
 - 추가지원 : 독일 FAU 부산분교 (1,000)
- 외국연구기관(3개) : 3,000백만원
 - 설립협약 체결 : CEWIT Korea 연구소(1,000), 다쏘 R&D 센터(1,000), CISCO연구소(1,000)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건축비 : 2,350백만원(국비 25%, 지방비 25%, 민자 50%)
 - 지원대상 : 창원국제외국인학교('15년 개교 예정)
 -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웅동관광레저단지 내
 - * 정원 : 1,050명(42학급 : 유아 4, 초등 17, 중등 9, 고등 12)
 - * 부지 : 33천㎡, 3층(기숙사시설 포함)
 - * 사업기간 : 2013~2015
 - * 총사업비 : 30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민자 50%)
 - 산출근거 : 공사비 2,350백만원
- 외국교육연구기관 성장기반구축 : 1,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국연구기관평가 : 100백만원(국비 100%)
 - 외국연구기관 유치 타당성 심사 및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의 결과에 대한 재검증 성격이기에 국비 100% 활용 필요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기반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운영·관리 지원(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는 핵심 국정과제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의 주요 요건에 해당
-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소의 특성상 재정적 인센티브가 유치의 필수조건으로 외국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16,836	15,425	12,450	△2,975	△19.2
▪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조성	8,216	-	-	-	-
▪ 창원국제외국인학교 건축비	-	1,000	2,350	1,350	235
▪ 외국교육연구기관 성장기반구축	-	1,000	1,100	100	110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8,620	13,425	9,000	△4,425	△32.9
☐ 비목(합계)	16,836	15,425	12,450	△2,975	△19.2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216	14,425	10,100	△4,325	△29.9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8,620	1,000	2,350	1,350	23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 우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동북아 교육·연구 Hub 달성
- 특히,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국내 최초로 외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으로서 동북아 지식 cluster 및 FDI 촉진의 Ancho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09.5 국경위 대통령 보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3	154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건축비 (10억원, 25%)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134억원, 50%)
'14	125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건축비 (24억원, 25%)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1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90억원, 50%)
'15	90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건축비 (13억원, 25%)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2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75억원, 50%)
'16	90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건축비 (13억원, 25%)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2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75억원, 50%)
'17	90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조성(2단계) (13억원, 25%)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2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75억원, 5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
- 추진경위
 - '02. 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07. 8월 : 제19차 경자위,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결정
 - '08. 5월 : 국가경쟁력강화위 VIP 보고(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관련 예산지원 확대 결정
 - '09.5.20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기공식 개최
 - '09.5.27 : 국가경쟁력강화위 VIP 보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성공적 추진계획 등 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외국교육연구 기관유치지원	672	489	192	154	12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불용
 - 영종미단씨티 외국인학교 건축비 : 협약체결 지연으로 2,500백만원 불용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뉴욕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설립 지연으로 2,200백만원 불용
- 2011년 이월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유치대상기관(텔라웨어대, CISCO연구소 등)의 설립협약 체결 지연으로 1,825백만원 이월
- 2012년 불용 및 이월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로렌스버클리, VTT 연구소 등 외국교육연구기관과 MOU 체결이후
입장 변경 등으로 협약체결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3,205
백만원 불용
 - 조지메이슨대 교육부 설립승인 지연 및 겐트대 설립준비비 일부
집행 지연으로 950백만원이월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672 (625)	(44)	()	672 (669)	625 (628)	(38)	47 (3)
'11년	489 (471)	(38)	()	489 (509)	471 (479)	18 (25)	(5)
'12년	192 (168)	18 (25)	()	210 (193)	168 (152)	10 (33)	32 (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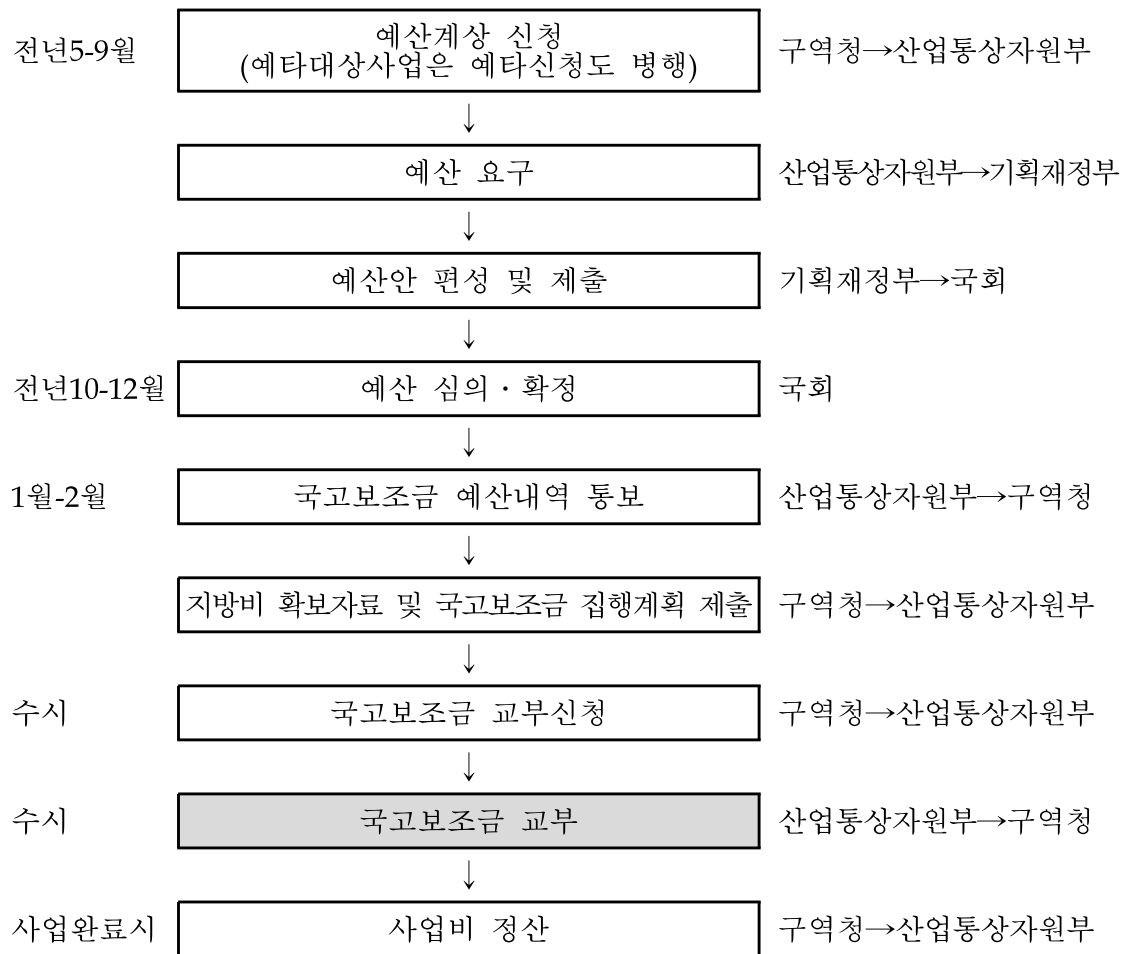
○ 싱가포르 (World-Class University Program)

- 추진배경 : 경제개발위원회 주관으로 10년간('98~'07) 세계 수준의 10개 대학을 유치하여 Education Hub 조성
- 유치대학 및 정부보조금 : MIT(1억불), 듀크대(3억불) 등

○ 카타르 (Education City)

- 추진배경 : 국가적 고급인력 양성
- 유치대학 및 정부보조금 : 코넬의대, 카네기멜론대, 텍사스 A&M대, 조지타운대 유치를 위해 부지, 건물, 학습용 기자재 제공 및 연간 10억불의 대학 운영비 지원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참고 : 해외 외국대학 유치 사례)

참고

해외 외국대학 유치 사례

국 가	지 원 내 용	
싱가포르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간 대학부지 무상 제공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 과실송금 허용 경우 법인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및 행정적 편의 제공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운영비용 및 연구비 50% 지원 (학생 1,200명 시 운영비만 약 650만 달러 상당- 조지메이슨대 재정계획 상 산출시) 대학의 각종 세금면제 및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지원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T와 싱가포르국립대(NUS)에 각각 1억 달러 지원 듀크 의대 유치 시 싱가포르 정부가 3억1천만 달러 기부 예일대 Liberal Arts College 설립(NUS와 공동)시 운영비, 본교 교수 인건비, 건축비 지원
카타르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교지, 건물, 학습용 기자재 등의 교육용 인프라 제공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교수들의 봉급, 보너스, 주택 등 제공 유치된 5개 해외대학 운영비로 연간 10억 달러 지원 * 코넬 의대 유치를 위해 11년간 7.5억달러 지원 재단이 학생의 학비 무이자대출 지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 분교의 교육프로그램은 본교와 동일하게 운영 외국대학 유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과학기술재단 건설
두바이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부지 장기임대 및 50년간 무상 제공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모든 세금의 50년간 100% 감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 업무승인, 통신 등의 서비스 제공 이민지원, 동반가족 취업 알선 등 뉴욕대에 5천만 불을 기부 조건으로 분교설립 계약
중 국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부지 및 건설비용 무상 제공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 및 의료보험제도 등의 도입 해외학생 유치 장려금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닝보시의 영국 노팅엄 대학 유치 시 토지 무상 제공(4,340억 상당) 및 건설비용액(1,650억) 부담 장쑤성 쑤저우 공업원구의 '국제대학촌'의 경우, 건축 및 토지 비용 100% 부담, 초기 임대료는 무상이나 관리비는 입주대학 부담 ※ 중국은 중국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합작 설립형태만 인정 (외국대학 단독 분교 설립 불인정)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20	1,118	1,128	10	0.9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 당 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성진), 정책기획팀장(임기성, 044-203-4610),
주무관(이주영, 044-203-461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통해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수립·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사업비 및 운영경비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및 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128백만원
 - 기획단 운영 인건비 : 101백만원

- 운영비 : 794백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387), 경자구역 성과평가 실시(150), 위원회 개최비용(50), 과운영비 및 기획단운영 기본경비 등(150), 인쇄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57)
- 국내·외 여비 : 133백만원(국내 48, 국외 85)
- 경제자유구역 관계기관과의 업무활성화 추진 : 70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비 : 30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운영	인건비 98백만원, 운영비 767백만원, 여비 144백만원, 업무추진비 79백만원, 연구개발비 30백만원 지원	인건비 101백만원, 운영비 794백만원, 여비 133백만원, 업무추진비 70백만원, 연구개발비 30백만원 지원

□ 지원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을 위해 설치된 기획단의 사업비 및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내실화 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역청의 운영경비 차등지원

< 세부 내역 >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20	1,118	1,128	10	0.9
□ 비목(합계)	1,120	1,118	1,128	10	0.9
○ 기타직보수(110-02)	89	98	101	3	3.1
○ 일반수용비(210-01)	666	668	695	27	4.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6	41	41	-	-
○ 특근매식비(210-05)	42	42	42	-	-
○ 임차료(210-07)	3	3	3	-	-
○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
○ 국내여비(220-01)	51	48	48	-	-
○ 국외여비(220-02)	107	96	85	△11	△11.5
○ 사업추진비(240-01)	83	79	70	△9	△11.4
○ 연구개발비(260-00)	30	30	30	-	-
○ 민간이전비(320-03)	-	0.3	0.3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간 개발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개발성과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본격 추진

* 현재 인천 등 총 8개 구역, 450km²를 경자구역으로 지정·운영 중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투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추진
 -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운영,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해외 우수대학·연구소 중점 유치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협의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작성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보좌
 - 경제자유구역 관련 홍보, 성과평가, 국제협력, 통계 및 자료의 조사 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1.18	인건비 0.98, 운영비 7.67, 여비 1.44, 업무추진비 0.79, 연구개발비 0.3
'14	11.28	인건비 1.01, 운영비 7.94, 여비 1.33, 업무추진비 0.7, 연구개발비 0.3
'15	11.30	인건비 1.01, 운영비 7.94, 여비 1.33, 업무추진비 0.72, 연구개발비 0.3
'16	11.40	인건비 1.01, 운영비 7.94, 여비 1.4, 업무추진비 0.75, 연구개발비 0.3
'17	11.50	인건비 1.01, 운영비 7.96, 여비 1.44, 업무추진비 0.79, 연구개발비 0.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3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자단 지식경제부로 이관
 - '08.4월 : 3개 경자구역 추가 지정(황해 : '08.7.22, 대구·경북 : '08.8.13, 새만금 : '08.8.28)
 - '09.1월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특별법 전환, 외국인 임대주택공급규정 등)
 - '10.9월 :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2.4월 : 경자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위기관리대책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 '12.9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2.9월 : 2개 경자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 후보지역 선정
 - '13.2월 : 2개 경자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13.2.4 경자위 의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경제자유기획단 운영	10.3	10.8	11.1	11.2	1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불용(1.3억원), 2011년 불용(1.9억원) :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 2011년 이월(0.2억원) :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11.12.23~12.2.22) 연구비 지급을 위해 이월
- 2012년 불용(0.1억원) :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0.3 ()	()	()	10.3 ()	9.0 ()	()	1.3 ()
'11년	10.8 ()	()	()	10.8 ()	8.7 ()	0.2 ()	1.9 ()
'12년	11.1 ()	0.2 ()	()	11.3 ()	11.2 ()	()	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200	4,830	4,950	120	2.5

* 사업코드 : 21-39-2-120-126-2700-2733-302

* 담 당 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김성진), 정책기획팀장(임기성, 044-203-4610),
사무관(임경숙, 044-203-4615), 주무관(최승민, 044-203-462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지자체보조(정액, 정률보조)
사업시행주체	구역청(자치단체)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담조직인 구역청 운영과 바이오 앵커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경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7개 구역청에 대해 동 법에 따라 그 운영비를 국고 지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상업화 및 기술협력을 위한 핵심앵커시설 장비 구축 등 지원
- * 인천송도지구내 ‘바이오 분석센터’내 바이오 분석장비, 전처리 장비 등 구축 지원

□ 지원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신설(‘13.4월)된 구역청의 사업 정상화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 등을 반영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기 정착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내 특성에 맞는 업종별 유치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활성화에 기여
- * ‘인천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역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6개 바이오기업이 既 입주

< 세부 내역 >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200	4,830	4,950	120	2.5
▪ 기존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4,200	4,200	3,250	△950	△22.6
▪ 신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	630	1,200	570	90.5
▪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	-	500	500	순증
□ 비목(합계)	4,200	4,830	4,950	120	2.5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200	4,830	4,450	△380	△7.9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00	5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제자유구역 사무를 전담처리하는 구역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투자유치활동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내 업종별 핵심앵커시설 구축지원을 통한 투자유치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 액	산출근거
'13	48.3	- 기존청 운영비 지원 42(평균7억원x6개청) - 신설청 운영비 지원 6.3(3.15억원x2개청)
'14	49.5	- 기존청 운영비 지원 32.5(평균6.5억원x5개청) - 신설청 운영비 지원 12(6억원x2개청) -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5(5억원X1개소)
'15	32	- 구역청 운영비 지원 32(평균4.572억원x7개청)
'16	32	- 구역청 운영비 지원 32(평균4.572억원x7개청)
'17	32	- 구역청 운영비 지원 32(평균4.572억원x7개청)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5조

○ 추진경위

- '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3년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및 구역청 개청
- '08년 3개 경제자유구역(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지정 및 구역청 개청
- '13년 2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 충북) 지정, 구역청 개청 및 새만금·군산청 폐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구역청투자유치지원	44	42	42	48.3	49.5
- 구역청운영경비지원	44	42	42	48.3	44.5
- 바이오네트워크구축지원	-	-	-	-	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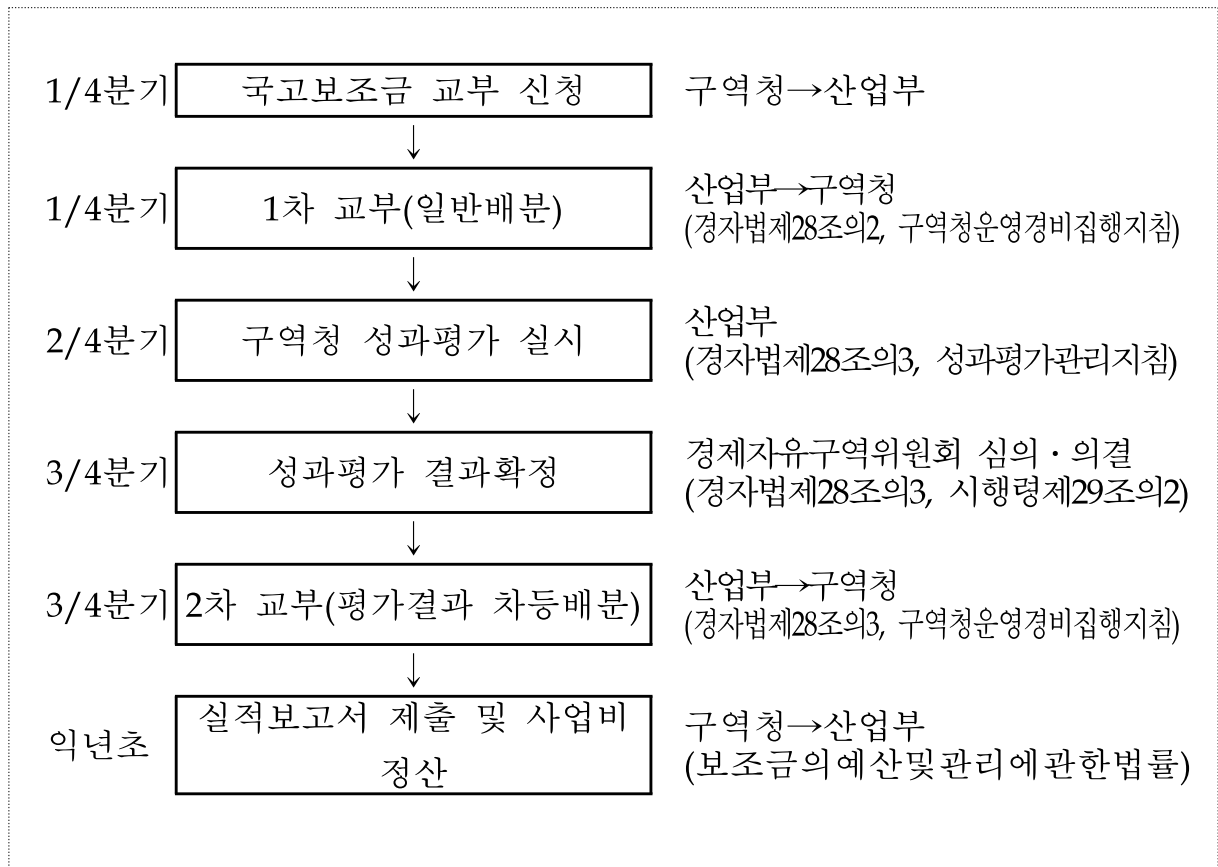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4 (44)	- (-)	- (-)	44 (44)	44 (40)	- (4)	- (-)
'11년	42 (42)	- (4)	- (-)	42 (46)	42 (42)	- (3)	- (1)
'12년	42 (42)	- (3)	- (-)	- (45)	- (43)	- (1)	-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외자유치 실적 반영 요구('10.9월 국회 지경위), 경제자유구역 운영 개선방안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기적 평가 권고('09.11월 총리실)
- (조치)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0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평가 실시
 - 평가지표로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포함하여 구역청의 외자유치 노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경비를 차등지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바이오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미실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및 정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6,000	40,000	3,320	△36,680	△91.7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성진),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14
총사업비	612,949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5,211억원(국비 1,776억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7.49km, B=68~82m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민자 제외)
사업시행주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3연육교 등과 연계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광역 교통망 구축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접근도로 구축

3. '14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3,320백만원 반영(공사비 : 3,320)

□ 지원 필요성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3연륙교 등과 연계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 필요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접근도로로서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처리를 위해 대회 개최전 개통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6,000	40,000	3,320	△36,680	△ 91.7
□ 비목(합계)	6,000	40,000	3,320	△36,680	△ 91.7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000	40,000	3,320	△36,680	△ 91.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투자기업 편익 도모 및 투자유치 활성화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전인 2014년 상반기까지 전체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3	400	공사비: 400
'14	33.2	공사비: 33.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2004. 5월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
- 2005.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7. 5월 : 재원분담 및 사업시행 협약(시↔LH공사)
- 2008. 3월 : 2·4공구 착공
- 2009. 5월 : 3공구 착공
- 2009. 7월 : 사업계획 변경 (본선6~8차로→4차로, 측도 6차로)
- 2011. 4월 : 경인고속도로 연결승인 완료(국토해양부)
- 2011.12월 : 1공구 토목공사 입찰공고(조달청)
- 2012. 2월 : 1공구 토목공사 계약(두산건설) 및 기공식
- 2012. 4월 : 경인고속도로 연결구간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한국도로공사)
- 2012. 6월 : 1공구 부대공사(전기, 통신, 소방) 착공
- 2013. 4월 : 1공구 조경공사 착공
- '13. 11월 현재 공정율 : 7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40	223	60	400	33.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국비 교부금 및 지자체 예산 이월사유 : 보상협의 지연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지연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조치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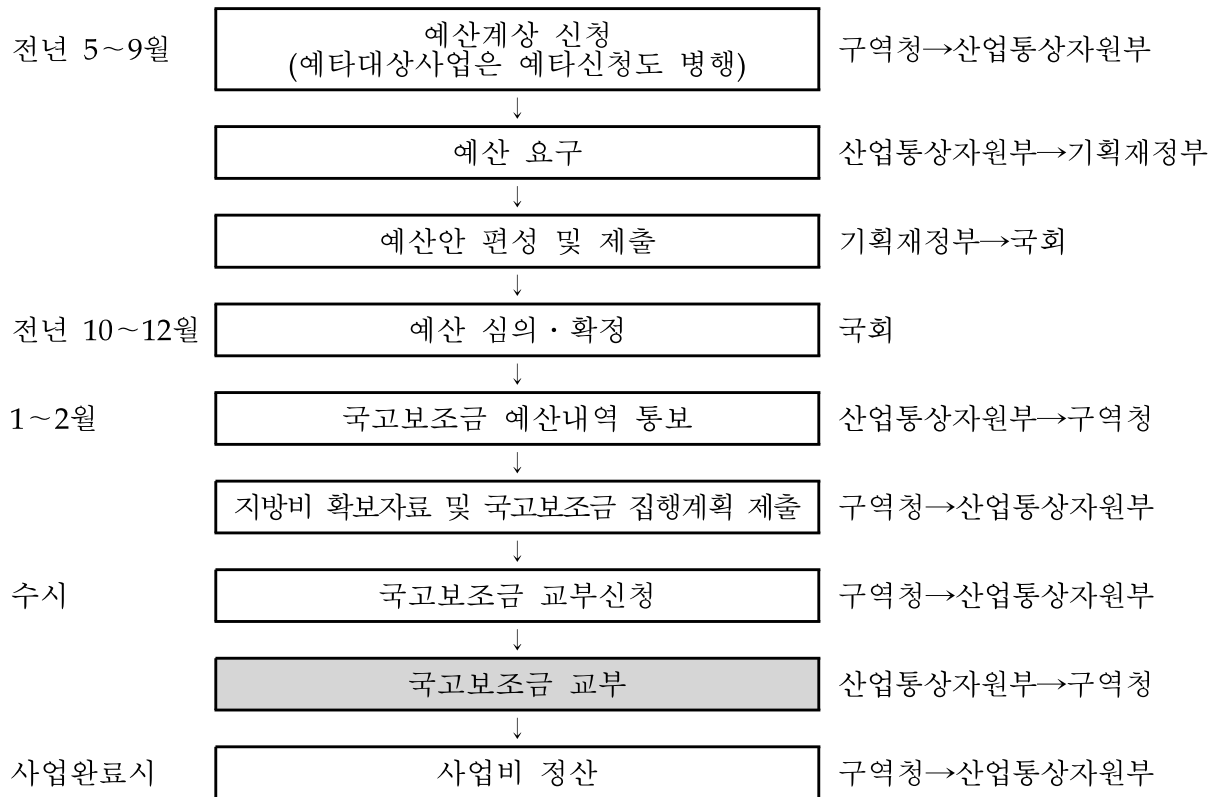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0 (37)	17 (18)	()	57 (55)	25 (22)	32 (33)	()
'11년	223 (146)	32 (33)	()	255 (179)	11 (14)	244 (165)	()
'12년	60 (218)	244 (165)	- ()	304 (383)	304 (127)	- (256)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04. 5 ~ '04. 10
- 조사결과 : B/C 1.32, AHP 0.774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석동-소사간 도로(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석동~소사간 도로	3,000	9,910	11,000	1,090	10.9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성진),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15
총사업비	2,821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733억원(국비 519억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7.13Km, B=20m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두동지구)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4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1,000백만원
 - 공사비(6,400백만원), 보상비(3,000백만원), 시설부대경비(1,6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조성,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석동~소사간 도로	3,000	9,910	11,000	1,090	10.9
☐ 비목(합계)	3,000	9,910	11,000	1,090	10.9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000	9,910	11,000	1,090	10.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3	99.1	공사비: 70, 보상비 : 26, 감리비 등 기타부대비 : 3
'14	110	공사비: 64, 보상비: 30, 시설부대경비: 16
'15	167	공사비 등: 167
'16	234	공사비 등: 234
'17	234	공사비 등: 23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6.10. 9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통보(재경부→경자청)
- '07. 1.17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정(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 '08. 5.29 : 총사업비 협의 완료(지식경제부)
- '08. 8. 1 : 입찰공고(조달청)
- '09.11.20 : 공사착공
- '13.11월 현재 공정을 26.4%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석동-소사간 도로	172	200	30	99	1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이월 및 불용, 2011년 이월 : 지방비 매칭분 미확보
- 지자체 이월 : 진해터널 굴착공사 준공금 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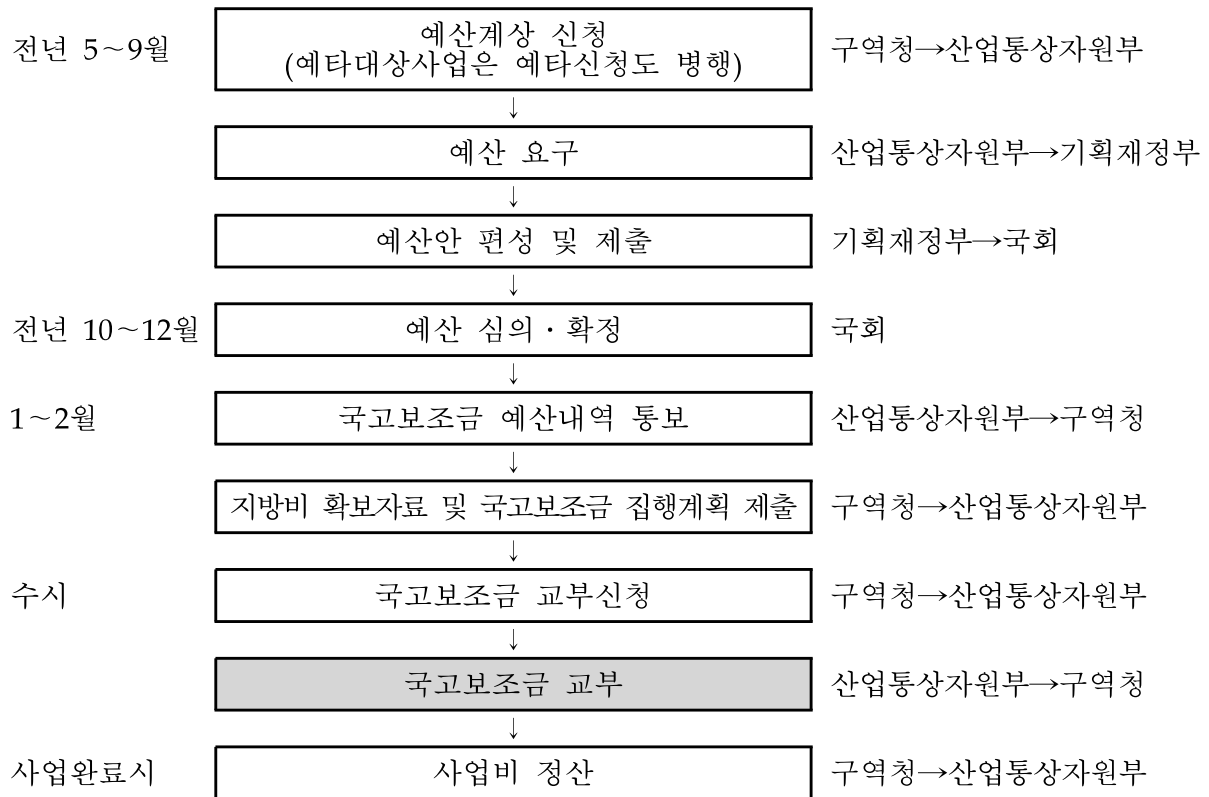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72 (50)	23 (82)	()	172 (51)	100 (45)	47 (5)	25 (23)
'11년	200 (50)	47 (5)	()	247 (55)	91 (55)	156 (10)	()
'12년	30 (71)	156 (10)	()	186 (71)	186 (7)	(64)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05. 12 ~ '06. 8
- 조사결과 : B/C 1.67, AHP 0.653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타 기반시설 지원	70,978	53,671	49,098	△4,573	△8.5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성진),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3개 도로 건설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민자 제외)
사업시행주체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4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13개 진입 및 간선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49,098백만원
 - '14년 종료예정 잔여사업비(3개 사업) : 9,130백만원
 - *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도로(4,144), 갈사만진입도로 1호선(918), 화양지구 간선도로(4,068)
 - 계속사업(9개 사업) : 36,168백만원, 신규사업(1개 사업) : 3,8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기타 기반시설 지원	70,978	53,671	49,098	△4,573	△8.5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	1,500	8,975	-	△8,975	순감
▪ 송도6-8공구 광3-29호 간선	-	1,000	4,120	3,120	312
▪ 미음지구 간선	750	1,245	-	△1,245	순감
▪ 미음지구 진입	750	-	2,018	2,018	순증
▪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도로	3,000	5,262	4,144	△1,118	△21.2
▪ 명지지구 진입	672	7,343	4,974	△2,369	△32.3
▪ 생곡지구 간선	2,000	-	-	-	-
▪ 갈사만 진입 1호선	5,918	-	918	918	순증
▪ 갈사만 진입 2호선	750	2,500	1,023	△1,477	△59.1
▪ 갈사만 진입 4호선	750	-	1,000	1,000	순증
▪ 화양지구 간선	4,900	2,000	4,068	2,068	103.4
▪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	1,500	1,000	4,530	3,530	353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 간선	1,500	2,500	5,000	2,500	100
▪ 신태지구 진입	559	6,812	4,503	△2,309	△33.9
▪ 팔마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	586	7,480	9,000	1,520	20.3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연결	750	2,923	-	△2,923	순감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	9,473	-	-	-	-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	5,600	-	-	-	-
▪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	5,000	-	-	-	-
▪ 대구신서경자구역 간선	20,800	-	-	-	-
▪ 대구신서경자구역 진입 1호선	2,220	1,631	-	△1,631	순감
▪ 대구신서경자구역 진입 2호선	2,000	3,000	-	△3,000	순감
▪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신규)	-	-	3,800	3,800	순증
□ 비목(합계)	70,978	53,671	49,098	△4,573	△8.5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0,978	53,671	49,098	△4,573	△8.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세부사업별 사업기간내 사업 준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3	537	14개 도로사업 공사비 등: 537
'14	491	13개 도로사업 공사비 등: 491
'15	635	14개 도로사업 공사비 등: 635
'16	568	9개 도로사업 공사비 등: 568
'17	546	5개 도로사업 공사비 등: 54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4.5월 : 기반시설 국고지원기준 마련(제4차 경자위)
 - '08.4월 :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추가선정
 - '08.7~8월 : 3개 구역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개청
 - '13.2월~4월 : 2개 경제자유구역(충북, 동해안권) 추가선정 및 개청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기타 기반시설 지원	684	674	710	537	49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이월 : 지자체 지방비 매칭분 미확보
 - 화양지구 간선(29억원), 갈사만1호선(45억원), 갈사만2호선(15억원), 갈사만4호선(15억원), 포항융합기술 진입(62억원), 영천하이테크 파크 진입(28억원)
- 2010년 불용 : 경자구역 지정 해제, 지구 실시계획 수립 중단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수성의료(고모 및 이천) 간선도로(72억원)
 - 지구 실시계획 수립 중단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간선도로(20억원)
- 2011년 불용 : 총사업비 조정, 경자구역 해제 등
 - 총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른 차액 : 서부산유통 진입(17억원)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수성의료(고모 및 이천) 간선도로(10억원)
 -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 포항융합 진입(61억원), 영천하이테크 진입(28억원), 갈사만진입 2호선(16억원), 갈사만진입 4호선(15억원)
- 2012년 이월 : 실시설계 변경 및 토지·건물이전 협의지연
 - 보상비 및 공사비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간선(15억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15억원), 갈사만4호선 연결(7.5억원), 미음지구 진입(7.5억원)
- 2012년 이용 : 구미불산사고('12.9.27) 재해복구비로 이용
 - 지구개발계획 지연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56억원)
 - 사업시행사 선정 지연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50억원)
 - 지구내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 : 생곡지구 간선(2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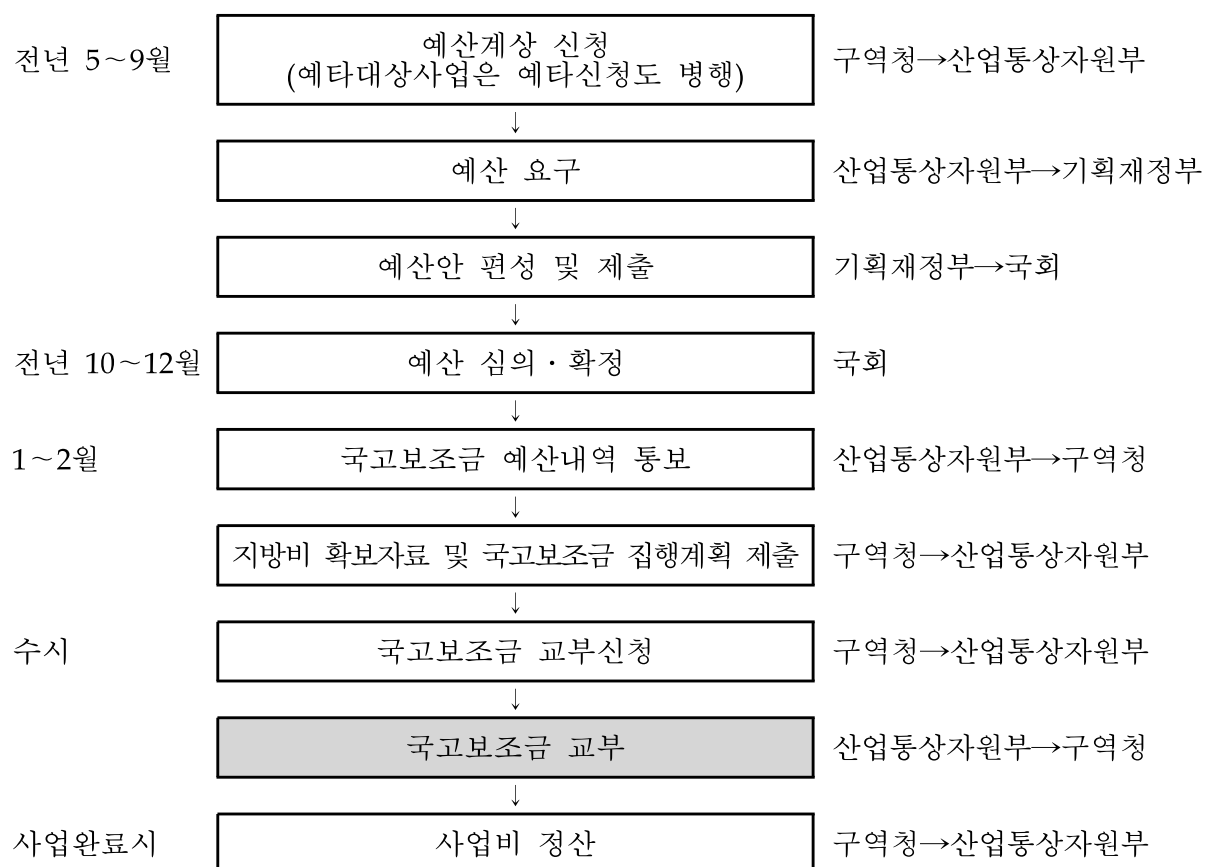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684 (572)	(82)	()	684 (654)	399 (315)	194 (232)	92 (107)
'11년	674 (591)	194 (232)	()	868 (823)	721 (543)	(239)	147 (41)
'12년	710 (581)	(239)	126 ()	584 (800)	539 (474)	45 (266)	(8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명지지구 간선도로(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명지지구 간선도로	14,000	4,000	3,687	△313	△7.8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성진),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15
총사업비	887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813억원(국비 407억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5.449km, B=27~34m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4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명지지구내 간선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3,687백만원
 - 공사비 : 3,68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제업무시설, 외국교육·의료시설 등이 조성되는 부산경자구역의 핵심지구로 조성원가 인하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명지지구 간선도로	14,000	4,000	3,687	△313	△7.8
□ 비목(합계)	14,000	4,000	3,687	△313	△7.8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4,000	4,000	3,687	△313	△7.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투자기업 편익 도모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3	40	공사비: 40
'14	36.87	공사비: 36.87
'15	16.87	공사비: 16.8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3. 1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재경부)
 - '08. 12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09. 03 :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추진(기획재정부)
 - '10. 03 : 손실보상협의 시행(보상율 90%)
 - '10. 05 : 실시설계 완료
 - '13.11월 현재 공정율 91.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명지지구 간선도로	103	124	140	4,000	3,6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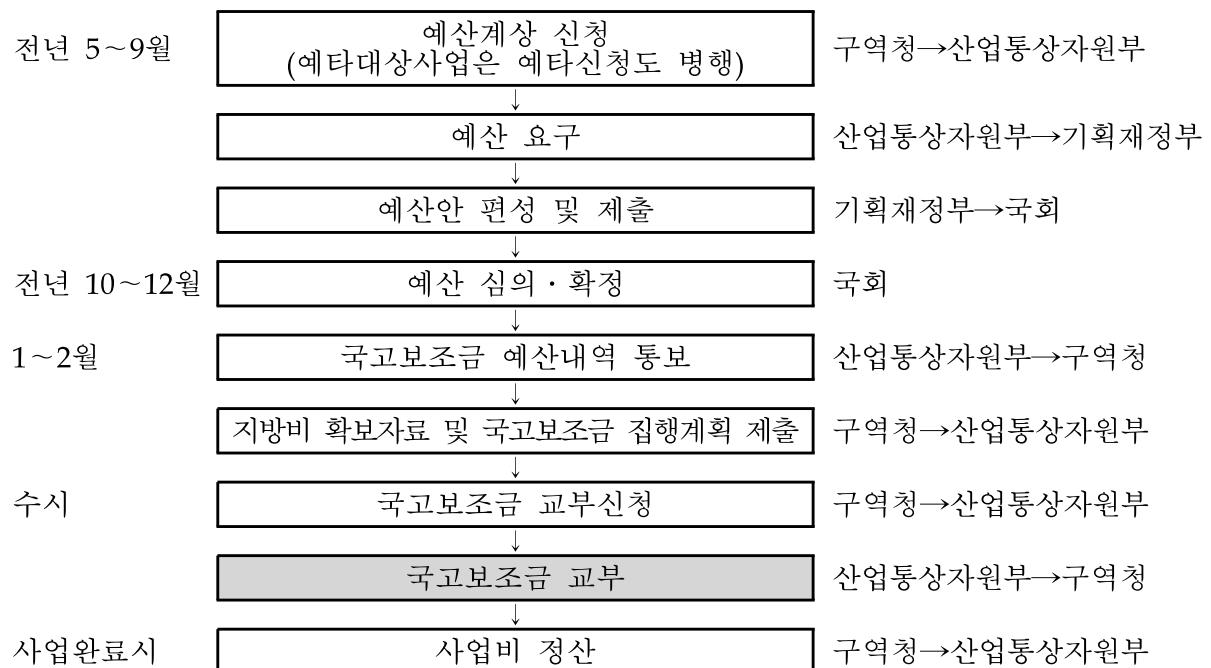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03 (103)	()	()	103 (103)	103 (103)	()	()
'11년	124 (124)	()	()	124 (124)	124 (124)	()	()
'12년	140 (140)	()	()	140 (140)	140 (14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09. 3 ~ '09. 8
- 조사결과 : B/C 0.872, AHP 0.501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계속)

< 광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	18,700	13,900	△4,800	△25.7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성진),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15
총사업비	839억원(‘13년까지 기투자액 : 287억원(국비 187억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3.28km, B=20~26m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4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3,900백만원
 - 공사비 : 7,900백만원, 보상비 : 6,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의료시설 등이 조성되는 대구경북경자구역의 핵심지구로 조성
원가 인하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	18,700	13,900	△4,800	△ 25.7
□ 비목(합계)	-	18,700	13,900	△4,800	△ 25.7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8,700	13,900	△4,800	△ 25.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투자기업 편익 도모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3	187	보상비: 187
'14	139	보상비 및 공사비: 139
'15	60	공사비: 60
'16	52.34	공사비: 52.3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8. 05. 06 :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 '09. 05. 11 : 개발사업시행 협약체결(대구도시공사)
 - '09. 06. 30 : 실시계획 및 설계용역 착수

- '11. 04. 06 : 개발계획(3차) 변경승인
(지구조정→면적축소(1.76km²→1.21km²))
- '11. 10. 31 : 간선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조건부선정
- '12. 02. 20 : 개발계획(4차)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경부고시 제2012-33호)
- '12. 11. 12 : 간선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 1.1, AHP 0.532)
- '12. 12. 7 : 설계경제성 검토(VE) 심의 완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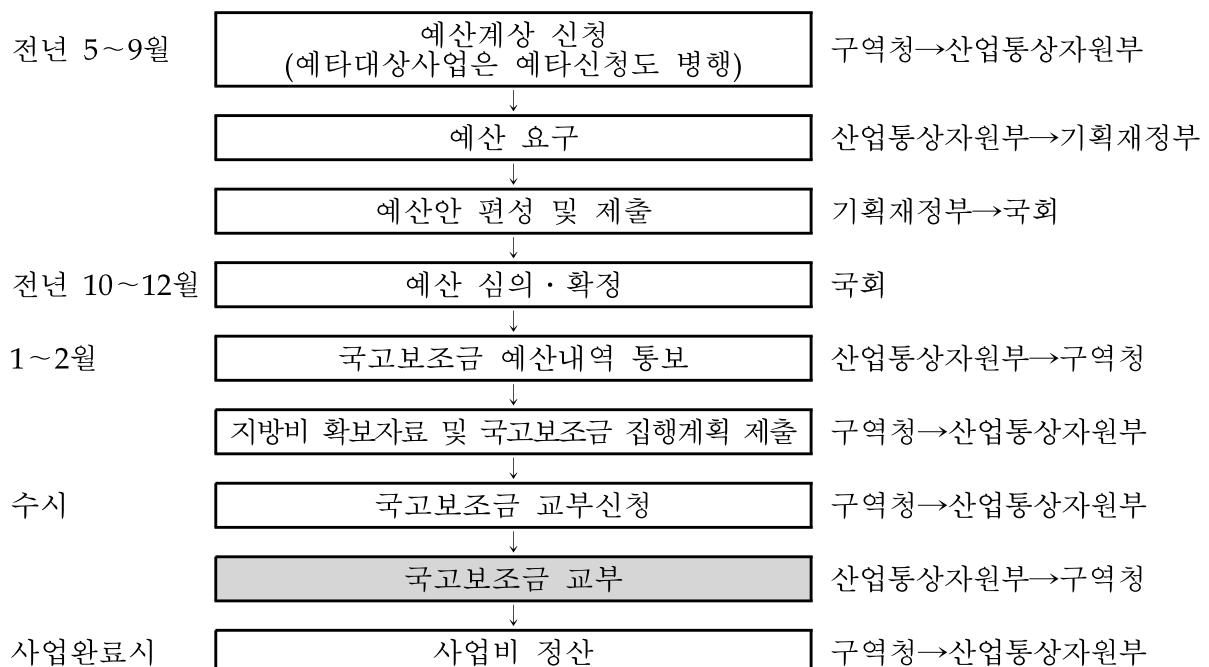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	-	-	187	13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2. 3 ~ '12. 11
- 조사결과 : B/C 1.1, AHP 0.532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 가 기 술 표 준 원

국가기술표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56,628	68,454	74,039	5,585	8.2
○ 국가표준활성화	4,840	4,560	4,740	180	3.9
○ 국제표준활동지원	1,797	2,098	2,148	50	2.4
○ 표준교육및이행확산	-	300	300	-	-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472	950	812	△138	△14.5
○ 안전제도기반조성	2,215	2,662	2,414	△248	△9.3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2,065	3,472	3,495	23	0.7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271	1,672	2,072	400	23.9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500	443	443	-	-
○ 신기술제품인증	1,547	2,043	1,943	△100	△4.9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49	493	1,000	507	102.8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812	1,500	2,000	500	33.3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890	900	900	-	-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정보화)	671	646	595	△51	△7.9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R&D)	36,047	42,620	47,571	4,951	11.6
○ 기술표준원충북혁신도시이전정착	-	989	631	△358	△36.2
○ 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30	1,161	1,122	△39	△3.4
○ 기술표준정책	944	914	866	△48	△5.3
○ 제품안전정책	389	371	387	16	4.3
○ 지식산업표준화	325	314	288	△26	△8.3
○ 적합성정책	364	346	312	△34	△9.8
【 합 계 】	56,628	68,454	74,039	5,585	8.2

일 반 회 계

국가표준활성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국가표준활성화	4,840	4,560	4,740	180	3.9

* 사업코드 : 21-11-0-110-114-3700-3733-309

* 담 당 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표준정책과장(유동주, 02-509-7220), 연구사(기현중, 02-509-72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국가표준 개발·정비를 확대하고, 민간수요중심의 표준화 기반조성

- WTO·FTA체계에 따른 국제표준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간 상호협력 확대 등을 위해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추진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 다변화 등 新산업환경변화에 따른 민간수요중심의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여 KS개발·관리 업무 이양
- 국민편익,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국민행복가치중심의 표준화 확대 및 유망신산업 견인을 위한 융·복합분야 표준인프라 조성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표준화 정책·연구 : 750백만원

- 국가표준관련 제도개선 및 주요 이슈별 정책개발, 국정과제 중점산업분야 표준화 로드맵개발

▪ 산출내역 : 16과제¹ × 46.8백만원² ≒ 750백만원

1. 표준화 정책연구 : 법령·제도 개선 및 전략산업분야 표준화 정책 수립 자료
2. 46.8백만원 = 40백만원(정책과제 평균용역비) + 6.8백만원(회의수당·세미나 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1,840백만원

- 시장수요중심의 국가표준 개발·관리를 위한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운영

▪ 산출내역 : 54개 기관¹ × 34백만원 ≒ 1,840백만원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지정된 54개 표준개발협력기관

○ 표준 부합화·개발·정비 : 2,150백만원

- 국가표준의 국제표준(ISO, IEC)과의 부합화 및 기 제정된 국가표준의 정비(개정, 폐지, 확인) 등 (19개 과제)

- 미래선도 융복합산업, 고부가가치 주력산업, 서비스산업분야 표준인프라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 (18개 과제)

- 국민 불편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행복표준 개발 및 시험·인증체계 구축(20개 과제)

▪ 산출내역 : 57과제 × 37.7백만원¹ = 2,150백만원

1. 37.7백만원=30백만원(표준 개발·정비 평균용역비) + 7.7백만원(심의수당·공청회 등)

□ 지원 필요성

○ 新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국정과제 사업 표준화 지원

- 국정과제(8번, 9번) 관련 세부사업 표준연구개발 추진

* (8번)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기반 조성 (규격연구개발 등)

(9번)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국가보건의료표준화)

- 국가표준 대폭 정비 및 진천이전에 따른 사업예산 수요 증가
 - 최근 국제표준 및 산업환경 변화 추세에 따른 KS의 대폭 정비 ('14, 전체 30%이상)를 위한 사업예산 증액 필요
 - * KS보유현황 : ('01) 12,006종→('06) 22,058종→ ('12) 24,129종
 - KS제·개정시 요구되는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4년 진천이전에 따른 회의수당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11) 518회 개최, 4,456명 참석, ('12) 586회 개최, 5,336명 참석
- 국가표준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정부주도에서 민간수요중심의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지원 확대
 - 산업분야별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신규 지정 확대 및 표준개발·관리 업무 추가 이양에 따른 지원예산 반영 필요
 - * 연도별 COSD지정현황 : ('08) 14개 → ('10) 44개 → ('12) 47개 → ('14) 54개 예정
- 국민행복시대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사회적약자 배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가표준 수요 증가
 - 국민행복 표준과제 발굴 및 표준화 이행확산 관련 정부3.0 과제*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 정부3.0 세부 이행과제 : 국민행복 표준화 국민 참여 확대(5-4, 5-5 과제)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가표준활성화	4,840	4,560	4,740	180	3.9
▪ 표준화 정책연구	890	900	750	△150	△16.6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2,080	1,760	1,840	80	4.5
▪ 표준 부합화개발비용	1,870	1,900	2,150	250	13.2
☐ 비목(합계)	4,840	4,560	4,740	180	3.9
○ 일반수용비(210-01)	38	51	62	11	21.6
○ 시험연구비(210-13)	653	653	659	6	0.9
○ 국내여비(220-01)	16	16	17	1	6.3
○ 국외여비(220-02)	13	13	12	△1	△7.7
○ 사업추진비(240-01)	57	57	50	△7	△12.3
○ 연구개발비(260)	1,982	2,010	2,100	90	4.5
○ 출연금(350-01)	2,080	1,760	1,840	80	4.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WTO체제하의 개방화시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추세를 반영한 국가표준 개발 및 정비 확대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의 다양화 등 新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상향식 표준개발체계 전환을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도입 확대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성장산업·복지·사회적책임 등 시스템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책연구 18과제x50백만 ▪ 표준개발협력기관 47개x37.4백만 ▪ 표준개발▯비 30과제x63.3백만
'14	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책연구 16과제x46.8백만 ▪ 표준개발협력기관 54개x34백만 ▪ 표준개발▯비 57과제x37.7백만
'15	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책연구 18과제x50백만 ▪ 표준개발협력기관 47개x37.4백만 ▪ 표준개발▯비 30과제x63.3백만
'16	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책연구 18과제x50백만 ▪ 표준개발협력기관 47개x37.4백만 ▪ 표준개발▯비 30과제x63.3백만
'17	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책연구 18과제x50백만 ▪ 표준개발협력기관 47개x37.4백만 ▪ 표준개발▯비 30과제x63.3백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인증)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표준화법
 -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등)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약)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확정)
 - * 국가표준제도기반구축(국가표준 종합정비체계의 확립, 국가표준체계 혁신, 국가표준화 활동기반 강화),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전개(성문 표준의 세계화, 전략적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표준 활동강화) 등을 수립
- 2006. 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등 4대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53호)
 -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민간표준활성화(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생산자 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표준전문가인력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2007.5.2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산업표준화법 명문화 규정

- 2007.6.1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 수립
 - * 수출 주력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 강화, 국책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한 표준화 활동 전개,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등을 추진
- 2008.7.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 수립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표준화포럼의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 단체표준개발 심의 및 운영 관리 등을 추진
- 2009.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
 - * 부처별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이원화를 해소하고, 단일번호 체계를 이용한 통합 국가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 * 단일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 문제를 해소하고,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 평가제도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화
- 2010.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
 - * 국제표준 제안 활동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이사회 및 기술위원회 참여 확대, IT 국제사실상표준화 활동 지원, 기술보호무역 선제대응체제 구축, 기술보호무역 대응매뉴얼 개발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수립
 -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등
 -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등
 -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생활 밀착형·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공공·행정표준화 등
 -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민간 표준참여 향상, 표준관련 부처협업 등
- 2011.4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 융합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표준 체계 마련
 - *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 표준코디네이터 사업, 국제표준화 대응 및 협력채널 다각화, 국제표준화 목표전략 수립 및 이행관리
 -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 민간 자발적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로 전환, 국가표준 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가표준 제도 정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개방형 표준 추진체계 구축 등
 - * 민간 표준참여 향상 : KS의 민간 관리 확대 및 KS 제도 개선 추진, 기업의 표준화 참여전략 마련, 사실상국제표준화 대응 등

- 2012.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원천표준 개발 확대, 원천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마련, R&D-표준 연계 지원 등
 -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친기업적 인증제도 내실화로 인증단축·비용부담 완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표준부합화 시스템 개발 추진, 초정밀 측정표준 개발 등
 -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국민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식품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활용, 사회시스템표준, 환경 및 공공표준 개발
 -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포럼/컨소시엄 지원 등 민간 표준활동 참여 기반 구축, 표준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 부처별 인증 중복해소, 인증기간 및 비용단축 그리고 규제 합리화 추진 등
 - * 국가 표준·인증체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검토, 기업수요 중심의 KS인증제도 개선 등
 - * 중장기 글로벌 표준강국 발전 방안 :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국제규범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외교 강화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가표준활성화	50	48	48.8	45.6	47.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집행잔액 등 90백만원 불용
- 2011년 : 집행잔액 등 51백만원 불용
- 2012년 : 집행잔액 등 40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8.0 ()	- ()	()	48.0 ()	47.1 ()	()	0.9 ()
'11년	48.0 ()	- ()	()	48.0 ()	47.49 ()	()	0.51 ()
'12년	48.8 ()	- ()	()	48.8 ()	48.4 ()	()	0.4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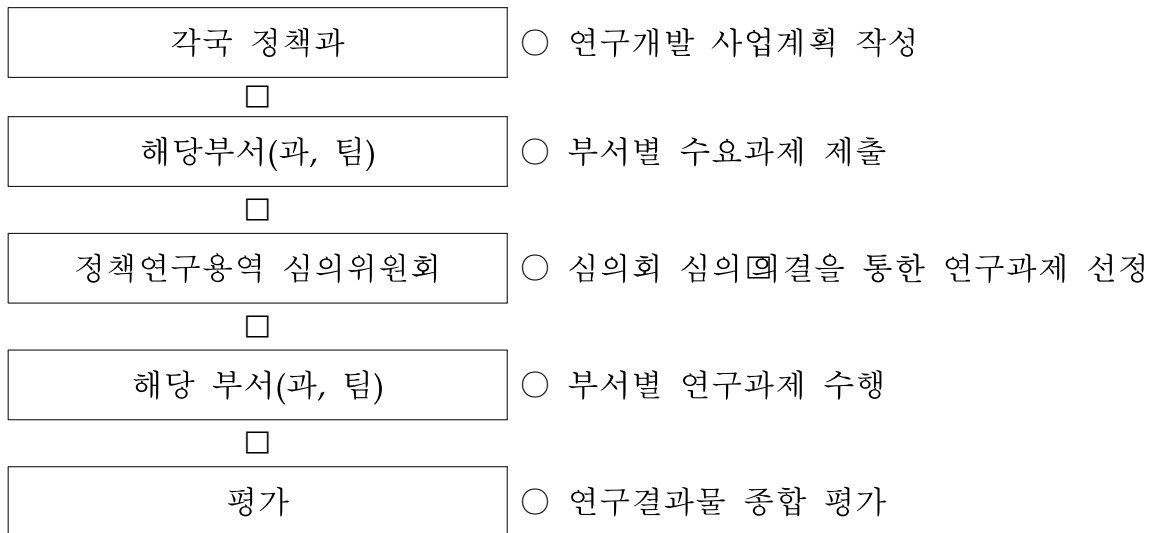
○ 표준개발협력기관

항목	일 본	미 국
제도명	特定標準化機關 (CSB: Competent Standardization Body)	ASD (ANSI-Accredited Standards Developer)
관련법	공업표준화법 제12조	SDOAA: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Advancement Act 등
기관수	일본규격협회 등 3개 기관 지정 (원안작성단체 500여개)	250여개
절차	심의 간소화 추진중	표준심의위원회에서 ASD 개발 표준의 절차적 하자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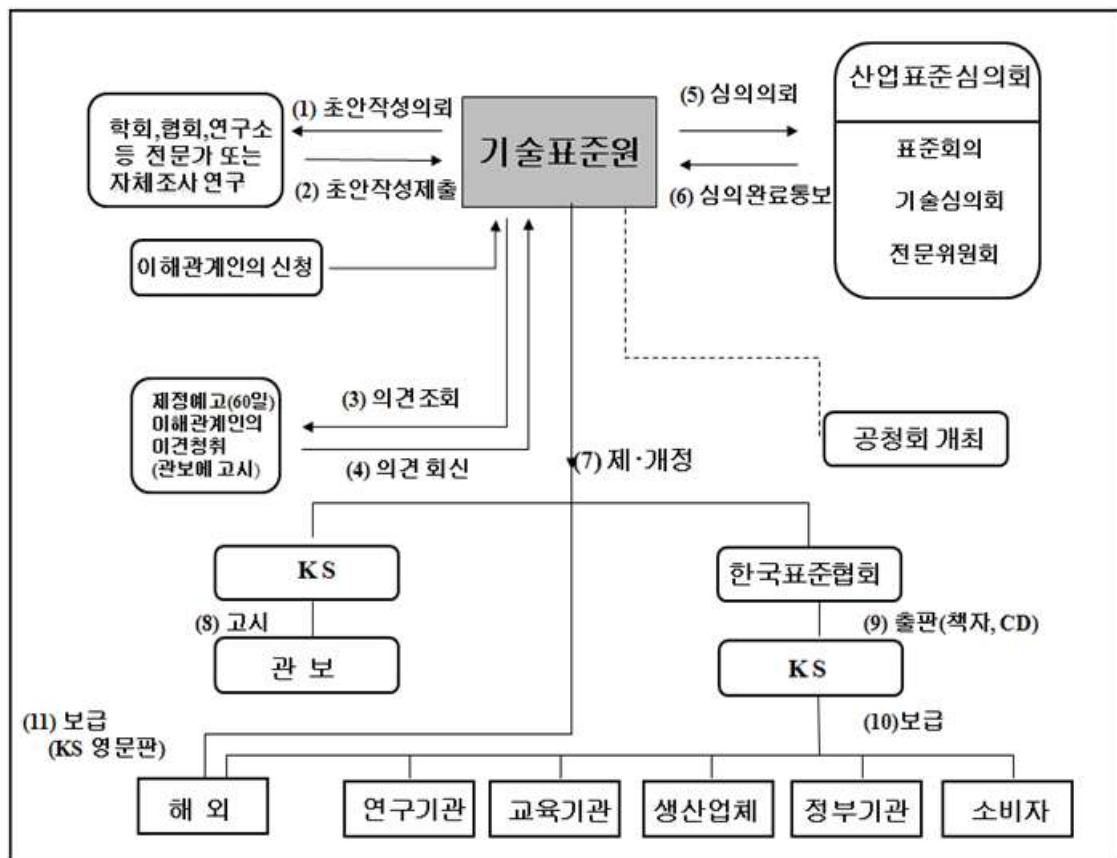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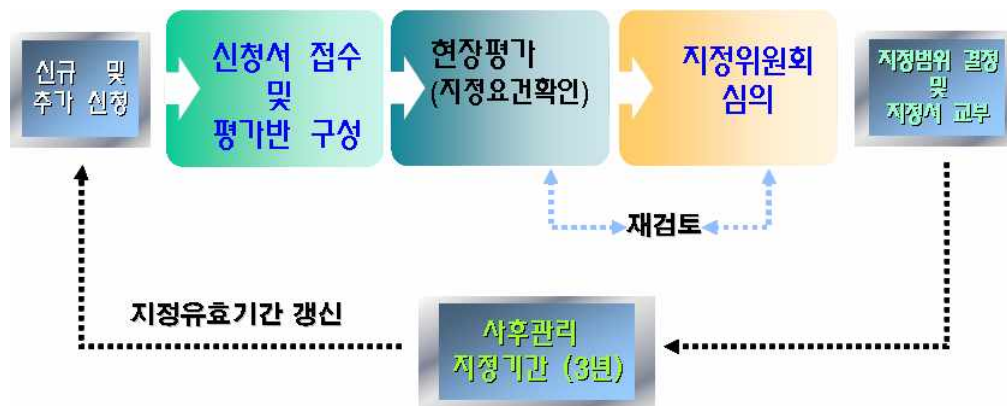
○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 국가표준 제개정절차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6) 예비타당성 조사 성재및 타당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1.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
- 참고 2.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개요

참고 1**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비전**

**다함께 행복한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국민행복 표준화 기반 조성**

전략

**국민행복 ①과제 발굴 → ②표준화 → ③이행·확산
선순환 추진체계 구축**

중점 어젠더**세부 정책과제**

**1. 과제발굴 및
제안 활성화**

- ① 3대 분야 40개 국민행복표준 발굴
- ② 국민제안 접수채널 다양화

**2. 추진체계
효율화**

- ① 민·관 합동 「국민행복표준협의회」 출범
- ② 표준화 추진 프로세스 개편

**3. 표준화
이행·확산 강화**

- ① 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내실화
- ② 계층별 맞춤형 전략 홍보

<관련 보도자료>

東亞日報

2013년 06월 28일 금요일 B02면 경제 금융

노트북마다 다른 충전기 스트레스 사라진다

40개 표준화과제 내년까지 완료계획
식당마다 다른 밥 한 공기 양도 같게

앞으로 노트북 모델이 달라도 같은 충전기를 쓸 수 있고 밥 한 공기의 분량이 통일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40개 분야에서 표준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표원은 40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내년까지 표준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노트북에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충전기를 만들도록 노트북 충전기 호환 기준이 표준화된다. 또 중간

소음을 방지하는 충격매트와 대체 보완품의 품질기준·시험 방법,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승차감 평가기준, 차량 내비게이션 안전 요구 사항, 자동차 블랙박스 품질기준 등 13가지 표준을 제정해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한다.

또 음식점 밥 한 공기 용량과 스키장 서비스 기준,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의복 치수, 영화 상영 서비스 기준, 자동차보험 서비스 기준, 기능성 의류 품질 기준, 자동차 정비 서비스 기준, 폐차 서비스 기준 등도 표준화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호환 기준과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요구 사항, 초보·고령 운전자 차량 표시마크, 노약자·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노인복지관 서비스 기준, 상조회 서비스 기준 등을 표준화한다. 이날 기표원은 소비자와 사회복지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행복표준협의회(위원장 송보경)를 구성해 표준화 정책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내일신문

2013년 06월 27일 목요일 017면 산업

노트북 충전기, 모델 구별 없이 **표준화**

표준화 추진과제 40개 발표 ... 음식점 밥 한 공기 양도 맞춰

노트북 충전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골라 우선 표준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7일 40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내년까지 개선하는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편안한 사회, 함께하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항목을 먼저 **표준화**한다는 것이다.

충간 소음을 방지하는 충격매트와 대체 보완품의 품질기준·시험 방법 **표준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승차감 평가기준, 차량 내비게이션 안전 요구 사항, 자동차 블랙박스 품

질기준 등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표준화** 과제로 선정됐다.

다양한 노트북에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충전기를 만들도록 노트북 충전기 호환 기준도 **표준화** 과제에 포함됐고 진공청소기 소음 최소화 기준, 에너지절감 건축 단열소재 기준 등 13가지 항목의 **표준화**를 제정해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호환기준,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요구 사항, 초보·고령운전자 차량 표시마크, 노약자·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노인복지관 서비스 기준, 어린

이 놀이기구 안전요구사항, 상조회 서비스 등 13개 항목을 **표준화**한다.

음식점 밥 한 공기 용량, 스키장 서비스 기준,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의복 치수, 영화 상영 서비스 기준, 자동차 보험 서비스 기준, 기능성 의류 품질 기준, 자동차 정비 서비스 기준, 폐차 서비스 기준 등 풍요로운 사회 항목에서 14가지를 **표준화**한다.

기표원은 소비자와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행복**표준**협의회(위원장 송보경)를 출범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으로 국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국민행복표준과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편안한 사회(13개)	충간소음방지, 가전제품(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소음평가, 건축단열소재, 차량블랙박스 등 표준화로 편안한 국민생활에 기여
함께하는 사회(13개)	장애인용 전자책,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노인 요양원·복지관 서비스 등 표준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구현
풍요로운 사회(14개)	레저·엔터테인먼트(영화, 스키장, 관광 등) 서비스, 차량 정비·보험서비스, 기능성외류 품질 등 표준화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자료:기술표준원

‘애정남’ 기표원

40개 국민행복표준과제 추진

정부가 충간소음, 선풍기 바람 세기, 노트북 충전기 호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서비스에 KS인증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이른바 ‘착한 표준화’ 작업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표원은 △편안한 사회(13개) △함께하는 사회(13개) △풍요로운 사회(14개) 3대 분야에 걸쳐 총 40개 국민행복표준과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표원은 유관 부처와 협의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40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국민행복표준과제 목표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아 불편을 느꼈던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문화일보

2013년 06월 27일 목요일
018면 경제

블랙박스·노트북 충전기 등

기표원, 국민형 표준화 추진

■ 정부가 차량용 블랙박스, 노트북 충전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표원(기표원)은 27일 40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내년까지 개선하는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간 소음을 방지하는 충격매트와 대체보완품의 품질기준 시험 방법 표준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승차감 평가기준, 자동차 블랙박스 품질기준 등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표준화 과제로 선정됐다.

다양한 노트북에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충전기를 만들도록 노트북 충전기 호환 기준도 표준화 과제에 포함됐고 진공청소기 소음 최소화 기준, 에너지절감 건축 단열소재 기준 등 13가지 항목의 표준을 제정해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한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호환기준,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요구 사항, 초보·고령운전자 차량 표시 마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3개 항목 표준화도 추진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

3대 분야 40개 추진과제 (부처협업 21개)

3대 분야	연 번	표준 과제명 ('13~'14)	완료 예정	부처협업 과제
편안한 사회	1	충간소음방지소재 품질기준	'14	국토교통부
	2	선풍기 단계별 바람세기 성능기준	'14	
	3	진공청소기 소음 최소화 기준	'14	
	4	세탁기 소음 최소화 기준	'14	
	5	엘리베이터 승차감 평가기준	'13	안전행정부
	6	차량용 네비게이션(운전중 DMB차단)	'13	국토교통부
	7	자동차용 블랙박스 품질기준	'13	국토교통부
	8	노트북 충전기 호환	'13	미래창조과학부
	9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14	
	10	레인지후드소음 최소화	'14	
	11	에너지절감 건축단열소재 기준	'14	국토교통부
	12	건물유리 및 창호 내풍압 성능기준	'14	국토교통부
	13	네온사인 적정 조도 기준	'14	
함께하는 사회	14	전동휠체어 배터리호환	'14	보건복지부
	15	시각장애인용 디지털도서	'13	
	16	초보 및 고령자 운전자 차량표시마크	'14	안전행정부
	17	가전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	'14	보건복지부
	18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요구사항	'13	문화체육관광부
	19	식기용 유리 유해물질 기준	'13	보건복지부
	20	공공안내 및 안전그림 표시	'13	
	21	상조회 서비스기준	'13	
	22	공공장소 정보안내	'13	문화체육관광부
	23	노약자·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14	안전행정부
	24	노약자·장애인용 전동휠체어	'14	보건복지부
	25	노인복지관서비스 기준	'13	보건복지부
	26	작업장, 공공구역의 안전색상 및 안전표시	'13	문화체육관광부
풍요로운 사회	27	의료복지 정보서비스	'14	보건복지부
	28	음식점 밥 한 공기 적정용량	'14	보건복지부
	29	한국인 인체치수를 고려한 의류치수 기준	'14	
	30	영화상영서비스 기준	'14	문화체육관광부
	31	자동차보험서비스 기준	'13	
	32	스키장서비스 기준	'14	문화체육관광부
	33	상해보험서비스 기준	'13	
	34	기능성 의류(발열, 땀흡수 등) 품질기준	'14	
	35	관광 안내 서비스 기준	'14	
	36	통역·번역서비스 기준	'13	
	37	겨울철 다운의류 품질기준	'14	
	38	자동차정비서비스 기준	'13	
	39	자동차폐차서비스 기준	'13	
	40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 기준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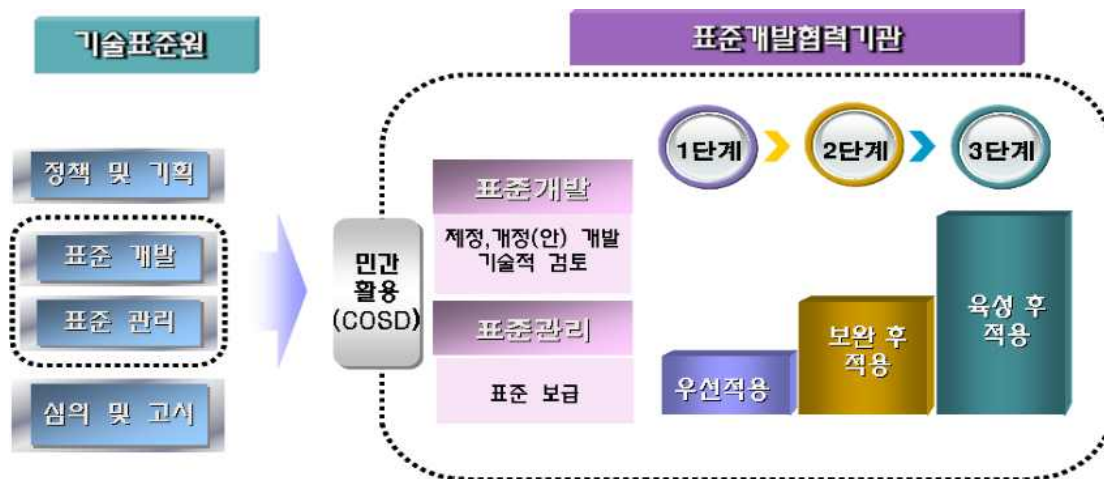
참고 2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개요

□ 표준개발협력기관 역할 및 지정요건

○ 표준개발협력기관

- 국가표준중 민간이 관리 가능한 분야를 민간에 이양하여 국가표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 반영
- * 국가표준 제·개정절차 중 표준개발·보급 등의 집행업무를 전문성 있는 분야별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제도



-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정 등)에서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신설('08.5월 시행)
- * **이양업무** : 표준개발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등을 COSD로 지정하고 국가표준 제·개정안 개발 업무 위탁

○ COSD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지정요건 :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가진 자발적 참여기관
 - 정관 또는 직제규정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를 지정
 -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 운영

□ COSD 운영현황 ('13년말 기준)

-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총 54개 기관
- 지정표준 : 수송용 전기설비(IEC/TC9) 등 18,688종(77.4%)

국제표준활동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국제표준활동지원	1,797	2,098	2,148	50	2.4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2

* 담 당 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정기원 과장(정기원, 02-507-4376), 연구관(김홍준, 02-509-7399),
연구사(조춘강, 02-509-7400)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2. 사업목적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산업의 세계시장 진입과 선점을 촉진하기 위해

○ 국내전문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국제표준화기구 임원진출 확대,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유치, 양자·다자 국제표준협력 지원 사업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로 국제표준을 선도
하고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창상력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8번(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또한, 자국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주요국과의 경쟁우위 확보 지원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우리나라 의장, 간사, 컨비너 등 임원수입활동 지원

→ 세계 7대 국제표준리더국가로의 도약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 지원 : 648백만원

- $24\text{회} \times 17\text{백만원}$ (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407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통역비 등 운영비 : $27\text{회} \times \text{약 } 3\text{백만원}$ = 70백만원
- 주요국 표준(ASTM, ASME) 등 자료구입비 : 20백만원
- 국제간사업무용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20백만원
- 국제표준화활동업무지원 보조인력 활용비 : 14백만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지역표준화기구, 주요국가와의 국제표준 협력 회의체 운영 등을 위한 자료 확보 : 70백만원
- 2015년 ISO총회 한국개최 사전 준비 : 47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 및 주요국 표준협력강화 지원 : 650백만원

- $186\text{명}(\text{지원대상자수}) \times \text{약 } 3.5\text{백만원}(1\text{회 평균 출장여비})$ = 650백만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100백만원

- $3\text{건} \times \text{약 } 33.3\text{백만원}(1\text{회 평균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 활동 지원(민간보조) : 75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49\text{회} \times \text{약 } 4\text{백만원}$ = 596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2.5\text{백만원} \times 2\text{명} \times 12\text{월}$ = 60백만원
-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 $5\text{백만원} \times 3\text{회}$ = 15백만원
- 전략기획 및 사무국운영비 : 7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 필요
 -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대응,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진출, 국제표준회의 국내 유치, 양자·다자 국제표준협력 등 기술외교 지원확대가 절실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의 비전인 “2015년 세계 7위의 국제표준강국(상임이사국) 목표” 달성을 위해,
 - 국제표준화회의 임원(정책위임원, 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수임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폭 강화 필요
 -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 확대 : ('10) 112명 ⇒ ('15) 200명
 - 또한, 우리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지원 확대 필요
 - *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 ('10) 390건 ⇒ ('15) 800건
-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이 ISO/IEC 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중·일 중 우리나라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기술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제기
 - *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더 나아가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 중
 - * 국정과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세부과제 3 (기술과 아이디어, 상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창출)
 - 단위과제 1 (우리 기술의 국가·국제표준화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제표준활동지원	1,797	2,098	2,148	50	4.2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562	622	648	26	4.2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양자협약 및 국제협력	735	726	650	△76	△10.5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	100	100	순증
▪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	500	750	750	-	-
☐ 비목(합계)	1,797	2,098	2,148	50	4.2
○ 일용임금(110-03)	13	14	14	-	-
○ 일반수용비(210-01)	105	120	136	16	13.3
○ 임차료(210-07)	341	387	407	20	5.2
○ 국외여비(220-02)	735	726	650	△76	△10.5
○ 사업추진비(240-01)	83	81	71	△10	△12.3
○ 연구개발비(260-00)	-	-	100	100	순증
○ 민간경상보조(320-01)	500	750	750	-	-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예산의 충분한 확대지원으로 국제표준 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충실한 이행이 요구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한 비전인 “2018년 세계 7대 국제표준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표준화회의 임원(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수임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폭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 수임 확대 : ('13) 140명 ⇒ ('18) 220명
- 국제표준 제안 확대 : ('13) 561건 ⇒ ('18) 840건
- 주요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확정: ('14) W3C(월드와이드웹 국제표준화기구) 총회, ('15) ISO(국제표준화기구) 총회, ('18)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832백만원 ▪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07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10백만원 ▪ 국제규격 검토 및 규격 확충 : 2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629백만원
'14	2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632백만원 ▪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07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59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750백만원
'15	2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582백만원 ▪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07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59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750백만원
'16	2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582백만원 ▪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07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59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750백만원
'17	2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582백만원 ▪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07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59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75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 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
 - 국가차원의 국제표준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0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 중요성의 지속적 증대
 -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실적이 '02년에 24건에서 '12년 561(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
- * 국정과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제표준 활동 지원	19	19	18	21	2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집행잔액(14백만원) 불용
- 2011년 : 집행잔액(2백만원) 불용
- 2012년 : 집행잔액(1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9.18 ()	()	()	19.18 ()	19.04 ()	()	0.14 ()
'11년	24.18 ()	()	()	24.18 ()	24.16 ()	()	0.02 ()
'12년	17.98 ()	()	()	17.98 ()	17.97 ()	()	0.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통상부(DTI)는 자국 표준화기구인 BSI의 표준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02년 6월엔 영국 정부(DTI)와 BSI간의 MoU 체결을 통해 이를 명문화함 (4.3조 4항)

* 국제회의경비지원(AITS, Assisted International Travel Scheme, 1982년 시작)

- 일본은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연구개발 □표준화 전략방안('08.7월 공표)」을 수립하여, 정부예산으로 표준전문가에 대하여 국제표준화활동 참가경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
- 미국은 「표준우산(Standard umbrella)」정책으로 APEC국가의 결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제 의장간사 진출에 총력을 기울임
- EU는 뉴어프로치 정책으로 표준을 경제통합 수단으로 활용, 특히 독일은 실용적인 표준화 정책을 통해 세계 2위 기술수출국으로 도약
- 중국도 표준정책을 10대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추진('07)하고, 후진타오 주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自主创新 보고서'에서 자주적 표준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연계

(5) 사업추진절차

【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 ① 기술표준원내 각 국별 내부수요조사 및 외부기관/개인 수요조사 공고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 수요조사(전년 12월)
- 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지원내역 각과 통보(1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2월-익년 1월)

【 보조금 수행 】

- ① 보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전년 12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법 조문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1. 국제기구 정책위원회 위원 활동

구분	직책	구 성	위 원	임 기	담당과
ISO (163개국)	Council(이사회) 위원	20개국	허경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14~'16	국제표준
	TMB(기술관리이사회) 위원	14개국	정기원 기술표준원 과장	'09~'14	국제표준
IEC (82개국)	CB(이사회) 위원	15개국	최갑홍 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12~'14	국제표준
	SMB(표준화관리이사회)위원	15개국	신명재 한국표준학회 부회장	'09~'14	국제표준
			오광해 기술표준원 IEC파견관	'12~'14	
	CAB(적합성평가이사회)위원	12개국	백수현 동국대 교수	'13~'15	시험인증
			이용로 기술표준원 연구관		
	MSB(시장전략이사회) 위원	-	삼성디스플레이 김학선 전무	'12~'14	국제표준

2. 국제기구 기타위원회 위원 활동

구 분	분 야	구 성	위 원	임기	담당과
IEC	SMB/ACTAD(전기 송배전)	18명	최종웅 前 LS산전 부사장	'05~'15	전자정보
			심응보 한전전력연구원 수석	'11~'15	전자정보
	SMB/ACTEL(통신네트워크 인프라)	9명	이일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12~	전자정보
	SMB/ACEA(환경자문위원회)	11명	정봉진 수원대 교수	'11~	전자정보
	SMB/ACEE(에너지효율자문위원회)	19명	최준영 산업기술시험원 책임	'13~	전자정보
	SMB/SG 2(초고압)	11명	신구용 전력연구원 책임	'12~	전자정보
	SMB/SG 3(스마트그리드)	17명	박지식 표준코디네이터	'13~	전자정보
	SMB/SG 3(스마트그리드) Alt.	17명	고정하 기술표준원 연구사	'12~	전자정보
	SMB/SG 4(저전압 직류배전)	16명	왕용필 전기산업연구원 센터장	'09~	전자정보
	SMB/SG 5(AAL)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13~	문화서비스
	SMB/SG 6(전기차)	20명	김언석 전기연구원 책임	'12~	기계소재
	SMB/SG 7(로봇기술 응용)		임성수 경희대학교 교수	'13~	전자정보
	SMB/AhG 35(시스템레벨)		오광해 기술표준원 IEC파견관	'11~	전자정보
	SMB/AhG 39(Stakeholder influence)		이병남 전자통신연구원 책임	'12~	국제표준
	SMB/AhG 40(TC간 협력증진)		신명재 한국표준학회 부회장	'13~	국제표준
	SMB/AhG 41(신기술)		신명재 한국표준학회 부회장	'12~	국제표준
	SMB/AhG 49(Industry 4.0)		오광해 기술표준원 IEC파견관	'13~	국제표준
	SMB/AhG 50(Meeting Space Bank)		오광해 기술표준원 IEC파견관	'13~	국제표준
	CAB/WT CAC(인증자문그룹)		김만웅 한국선급 단장	'11~	시험인증
	CAB/WG 16(CA의 시스템레벨)	14명	이용로 기술표준원 연구관	'11~	시험인증

* IEC/SEG Smart Grid(박지식, 고정하), SEG Smart city(김종욱) 참여 중

구분	분 야	구 성	위 원	임기	담당과
ISO	TMB/SAG E(에너지효율)	20개국	부경진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08~	에너지
	WG Sustainability Guide Development Group	17명	김연성 기술사인증원 원장	'10~	문화
	COPOLCO/TG 3(위조제품) 컨비너		박현호 용인대 교수	'13~	문화
	Council TF on Water(ITFWA)		심유섭 한국상하수도협회 팀장	'12~	에너지

3. ISO/IEC 기술위원회(TC/SC) 가입 현황

구분	기술위원회 수			우리나라 가입									P 멤버 가입율
				P 멤버			O 멤버			계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ISO	743	236	507	619	199	420	103	30	73	722	229	493	83.3%
IEC*	175	96	79	144	79	65	27	16	11	171	95	76	82.3%
합계	918	332	586	763	278	485	130	46	84	893	324	569	82.80%

* IEC/TC 100소속 13개 TA는 불 포함

4.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진출현황

구 분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계	15명	21명	104명	140명
ISO	14명	17명*	79명	105명
IEC	1명**	4명**	25명	27명

* ISO stand-by 1명 불포함

** IEC TA 매니저 1명, TA간사 2명 불포함.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ISO	의장	12	13	16	16	13	13	14
	간사	11	11	12	14	15	17	17
	컨비너	18	25	37	46	56	59	67
IEC	의장	1	1	2	3	3	3	2
	간사	4	4	4	4	4	5	5
	컨비너	7	9	10	12	16	17	19
합계	의장	13	14	18	19	16	16	16
	간사	15	15	16	18	19	22	22
	부간사					2		3
	컨비너	25	34	47	58	72	76	86
	WG 간사					3		6
	소계	53	63	81	95	112	114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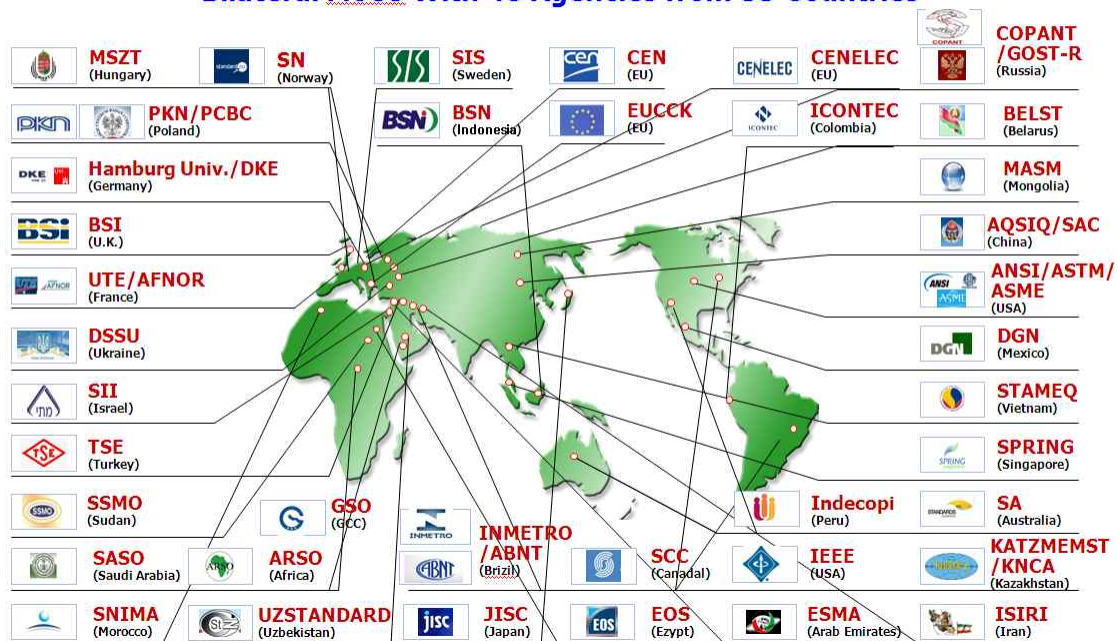
5.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현황(누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SO 제안	19	7	12	22	39	51	51	48	44	42	43	42
IEC 제안	5	2	8	5	6	10	12	30	19	18	15	11
제안실적	24	9	20	27	45	61	63	78	63	60	58	55
누적 합계	24	33	53	80	125	186	249	327	390	450	508	561

6. 표준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현황 (33개국 48개 기관)

◆ Bilateral Cooperation

Bilateral MoUs With 48 Agencies from 33 Countries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	-	300	300	-	-

* 사업코드: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6 - 301

* 담당자: 표준정책국장(안종일), 국제표준과장(정기원, 02-509-7400), 주무관(임미희, 02-509-7400)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2. 사업목적

☐ 표준교육을 통한 표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

- 초·중·고등학생 및 기업인 등 범국민 대상 표준교육 실시 및 표준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중심의 표준화 활성화에 기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표준주간 운영 및 표준확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70백만원

- 산출내역 : 70백만원(세계 표준의 날 운영) × 1회/년 = 70백만원
* '12년 기준 총리 및 표준관계자 500여명 참석

○ 청소년 표준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100백만원

- 산출내역 : 예선·본선대회 운영비 66백만원
과제개발비, 심사위원회 운영, 홍보 등 34백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연구학교 지원을 위한 130백만원

- 산출내역 : 10백만원(연구학교 운영비) × 5개 학교 = 50백만원
5백만원(찾아가는 표준화 교육) × 5개 학교 = 25백만원
교재개발, 교사연수, 운영보고회 등 = 5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표준은 의·식·주는 물론 사회적 약속, 안전, 환경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범국민 대상 표준교육이 필요
- WTO/FTA 체제하에서 표준은 국제무역규범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에 대응할 차세대 전문가양성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	-	300	300	-	-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70	70	-	-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100	100	-	-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	130	130	-	-
□ 비목(합계)		300	300	-	-
○ 일반수용비(210-01)	-	257	70	187	△72.8
○ 임차료(210-07)		43	-	△43	순감
○ 민간경상보조(320-01)	-	-	230	23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현재 국내대회 수준의 청소년 표준올림픽아드를 국제대회로 격상시켜 우리 표준교육 브랜드의 세계화 추진
 - * 표준올림픽아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대회로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참가를 희망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지원을 현재 10개교에서 2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여 표준 및 표준화에 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확대
 - * 전국의 초등학교 수(5,800여개)대비 정부의 표준화교육 지원은 미미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7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픽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4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7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픽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5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7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픽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6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7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픽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7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7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픽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추진경위

- 일상생활 및 국제무역에서 표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표준교육을 통한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및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3년 신규사업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	-	-	-	3.00	3.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	()	()	()	()	()	()
'12년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교육

- (ISO) 표준교육 운영 우수 대학 시상, WSC Academic Week 운영, 표준교육 개도국 대상 지역워크숍 개최, 제네바 표준교육 대학원 과정 지원

* '14년도 발간을 목표로 표준교육 Guide 개발 중임

- (CEN) CEN-CENELEC-ESTI 표준교육 공동 작업반 운영

○ 미국의 표준화 교육

- NIST(국립기술표준원)를 중심으로 표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표준교육 실시

○ 중국의 표준화 교육

- 국제환경 요인에 충족하는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박사후 과정까지 표준교육을 강화

* (초·중·고) 표준과 표준화의 개념, 표준의 종류, 표준개발 절차, 국제표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표준화 활용 장점 등을 교육

○ 일본의 초등생 표준화 교육

- 경제산업성에서는 실생활과 사회에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강의

* (초) 일상생활의 표준사례, 표준의 기능, 그림문자를 사용한 의사소통

* (중) 표준 및 표준화의 개요, 표준화 및 비표준화 사례, 미래의 표준화

* (고) 표준개요, 일본의 표준, 표준화 및 국제표준의 중요성, 각국의 활동

○ 영국의 청소년 표준화 교육

- 초중고 표준화 교육을 국가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으로 운영

*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에서는 7-11세 (Primary), 11-14세/14-19세(Secondary)구분하여 표준화교육 실시

-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제정기관)는 '08년부터 'GetGreenGo'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표준화 체험기회 제공

* 학생이 표준화 주제 선정·계획, 주최측의 심사 후 우수자에게 시상

(5) 사업추진절차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세계 표준의 날)
 -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과제 개발 ☐ 대회 홍보 ☐ 예선대회 개최 ☐ 본선대회 개최 ☐ 결과 시상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 연구학교 지정 ☐ 교사 W/S ☐ 연구학교 운영 ☐ 중간평가 실시
☐ 운영보고회 개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472	950	812	△138	△14.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4

* 담 당 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문화서비스표준과장(김용주, 02-509-7278), 사무관(김운근, 02-509-727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규격 제안 및 인체 정보가 반영된 KS규격의 제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과 기업의 인간공학적 제품설계를 위한 활용 및 기술 개발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친고령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자 인체치수 및 형상 측정 조사 : 친고령산업 활성화 및 고령자 복지 기반 마련을 위한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 및 형상 측정 조사를 위하여 500백만원 소요
 - 산출내역 : 인건비(연구원 등 20명) 150백만원 + 측정경비 300백만원 + 데이터 분석 경비 50백만원
- 인체정보 측정 방법 정비 : 인체정보에 대한 수요와 측정 및 활용 기술을 반영한 측정 방법의 정비를 위하여 122백만원 소요
 - 산출내역 : 인건비(연구원 등 10명) 30백만원 + 개발경비 60백만원 + 측정경비 32백만원
- 청소년 3D표준인체형상 제작 : 인체정보 보급·활용을 위한 인체형상 제작을 위하여 120백만원 소요
 - 산출내역 : 인건비(연구원 등 15명) 45백만원 + 개발경비 75백만원
- 인체표준정보실 운영 : 정보실 운영을 통한 인체정보의 운영·확산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70백만원 소요
 - 산출내역 : 인건비(연구원 등 3명) 50백만원 + 운영경비 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국의 신체 변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인체관련 정보의 업데이트 필요
 - OECD Social Indicators('09년 5월)에 따르면 2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20대의 평균키는 남자는 6cm, 여자는 4cm 커진 것으로 조사됨
 - 식생활 및 생활 습관의 변화로 한국인의 체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에 정밀한 분석을 통한 인체 정보 제공 필요
- 전 산업에 걸쳐 활용 가능한 3차원 인체형상자료의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은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사업이므로 국가의 지원 필요
 -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자료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국민의 산업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인체치수 및 형상을 조사하여 관련 사업에 제공 필요
 -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자 복지 기반 확보를 위한 고령자 인체치수 및 체형조사 시급
 - 고령자 대상 관련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
- 인체치수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체정보 DB를 통하여 인체정보표준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각 산업분야별 수요에 적합한 최신의 인체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472	950	812	△ 138	△ 14.5
▪ 인체치수 및 형상측정사업	387	825	622	△ 203	△ 24.6
▪ 인체정보보급사업	-	115	190	75	65.2
(▪ 인체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66)	-	-	-	-
(▪ 측정사업 홍보 및 정보실 운영)	(19)	-	-	-	-
☐ 비목(합계)	472	950	812	△ 138	△ 14.5
○ 시험연구비(210-13)	14	15	10	△ 5	△ 33.3
○ 사업추진비(240-01)	5	5	4	△ 1	△ 20.0
○ 연구개발비(260-00)	453	930	798	△ 132	△ 14.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인에 대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제품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9.5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8.25 ○ 인체정보보급사업: 1.15
'14	8.12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6.2 ○ 인체정보보급사업: 1.9
'15	9.5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7.5 ○ 인체정보보급사업: 2.0
'16	9.5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7.5 ○ 인체정보보급사업: 2.0
'17	9.5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7.5 ○ 인체정보보급사업: 2.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 통계법
 -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 통계법시행령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 추진경위

- '79년부터 : 의류 치수 제/개정을 위해서 국민체위조사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사업 수행
- '00년부터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 치수 정보와 3차원 인체형상 자료, 동적치수 정보 등 새롭고 다양한 인체치수 자료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 '05년 : 한국인 인체정보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 정보에 대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통계로 지정
- '05년 이후 : 장애인에 대한 인체치수 측정 등 과거 측정사업에서 측정하지 못한 분야를 측정사업 지속 추진 및 한국인 인체정보의 산업계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 지속 추진
- '10년 :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보급 사업을 통하여 7~69세의 남녀 14,016명 대상 136개 항목의 인체치수와 20~39세의 남녀 848명 대상 156개 항목의 3차원 인체형상 측정 및 인체정보DB 구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한국인인체 치수조사보급	10	5.5	5.2	9.5	8.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용역 입찰 낙찰차액(4백만원)
- 2011년 :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2백만원)
- 2012년
 - 불용 : 낙찰 차액 및 경상경비 절감(20백만원)
 - 이월 : 계약체결 지연(28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0 ()	- ()	- ()	10 ()	9.96 ()	- ()	0.04 ()
'11년	5.5 ()	- ()	- ()	5.5 ()	5.48 ()	- ()	0.02 ()
'12년	5.2 ()	- ()	- ()	5.2 ()	4.72 ()	0.28 ()	0.2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 국

- '65년 이후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인체측정을 실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자료 미공개
- '03~'04년 TC²(Textile Clothing Technology Cooperation)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3차원스캐너를 통해 240개 항목에 대해 인체측정

○ 프랑스

- '03~'04년 IFTH(The French Textile and Clothing Habillement)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60개 항목에 대해 인체 측정
- 측정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Raw Data를 보급하고 그 외의 기업에는 가공하여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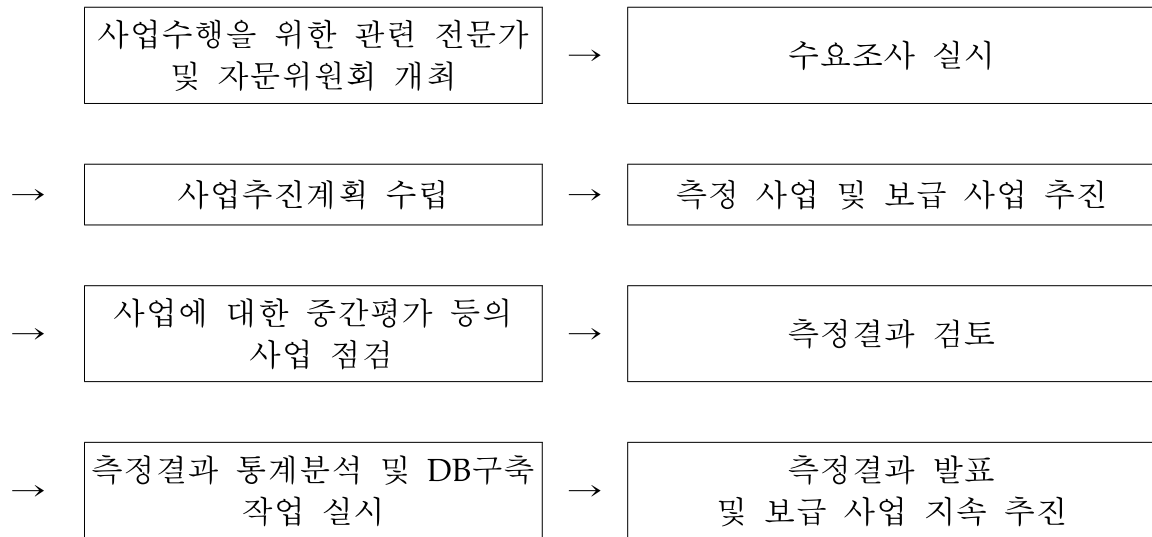
○ 영 국

- '02~'05년 3차원스캐너 업체를 중심으로 영국정부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차원측정과 직접측정을 통해 140개 항목을 측정
- 측정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Raw Data를 보급하고 그 외의 기업에는 가공하여 판매

○ 일 본

- '04~'07년 HQL(Research Institute of Human Engineering of Quality life)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3차원측정, 직접측정 등 215항목 측정
- 측정된 자료는 일본산업규격(JIS)에 반영하고 HQL를 통해 Raw Data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판매
- HQL을 통해 인체치수 외에 감성, 감각, 행동 등 인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여 DB를 구축하려고 함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안전제도기반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안전제도기반조성	2,215	2,662	2,414	△ 248	△ 9.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2 - 304

* 담 당 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환), 제품안전정책과장(전민영, 02-509-7238), 주무관(모덕신, 02-509-724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호서대안전성평가센터

2. 사업목적

☐ 제품 안전기준 정비 및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사회 기반조성

- 현재의 시장상황 변화(제품의 다양화, 융·복합화)에 맞는 신속한 안전기준 제정 및 정책의 개발을 통한 제품안전 기반 구축
- 제도적인 안전기반 구축을 넘어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공산품·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및 제품안전 정책 개발: 600백만원
 - 제품안전기준 제·개정 : 400백만원 (50종×8백만원)
 - 제품안전정책개발 : 200백만원 (4종×50백만원)
-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1,014백만원
 - 제품안전 교육·홍보(민간보조) : 600백만원
 -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의식개선 홍보영상 제작/지상파·지하철 등 홍보 : 414백만원
 - * 리콜기업, 제조·유통업체, 일반 소비자·사업자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86백만원(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 제품안전분야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100백만원(제품안전의 날 포상규모(총46점) : 훈장1, 포장1, 대표1, 국표3, 장표24, 원표16점)
 - 제품안전 국제회의·심포지엄(ICPSC, ICPHSO 등) 참석 및 국제협력 : 414백만원
- 제품안전 관련 對국민 「정책·정보 안내시스템(2종)*」 운영 : 300백만원
 - * 제품안전 정책·정보시스템 : 제품안전관리시스템('12.7), 안전기준전산화시스템('12.10)
 - 안정적 정책·정보제공을 위한 서버 등 장비보강 : 200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정보입력 및 유지보수 : 50백만원
 - * 제품사고 및 불법·불량제품 리콜정보, 인증정보 등 제품안전관련 정보수집·관리
 - '안전기준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 50백만원
 - * 안전기준 제·개정 관련 입안부터 개정완료까지 모든 내용을 이력관리, 정보지원
-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방법 전파 : 500백만원
 - *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 지원 필요성

- (시장현황) 제품 융복합화, 유통시장 다변화로 제품안전사고 지속 증가*

- 특히,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및 사회 빈곤층 안전사고*** 증가

* 제품사고 위해사례(건) : ('10) 15,795 → ('11) 19,219 → ('12) 24,940 ('10년 대비 57.8% ↑)

** 어린이 위해사례 접수(건) : ('09) 11,438 → ('10) 15,006 → ('11) 20,733 (연평균 35% ↑)

*** 전기장판 류 화재사고(건) : ('09) 201 → ('10) 218 → ('11) 234 → ('12) 264 (연평균 8% ↑)

○ (안전기준 정비) 정부정책이 사후시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안전기준 운영을 통한 사전 인증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사항

- 제품시장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안전기준 운영을 위하여 주요국 안전기준 제·개정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융·복합화, 다양화 되는 제품의 특성 파악 및 이를 통한 신속한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 現, 전기용품 778개, 생활용품 110개 등 전체 888개의 안전기준 운영 중

* 13년 실적 : (전기용품) 형광램프 대체용 호환형 LED 램프, 전기오븐 등 10건 제·개정, (공산품) 실내용 바닥재, 생활화학가정용품 독성 정보 및 사용제한물질 추가 지정 등 23건 제·개정

○ (제품안전의식 보급·확산) 소비자·기업의 선제적인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품안전 의식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교육 및 포상 필요

- 제품안전 의식개선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지속적인 홍보·교육 등을 통한 소비자·기업의 안전의식 향상 도모

* 홍보,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개선은 가장 강력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효과

* 13년 지하철 광고 후 불법신고 건수는 2배, 제품안전포털 방문자수는 12% 증가

➡ 제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정비, 안전정책개발 및 제품안전의식 보급·확산을 추진하는 “안전제도 기반조성”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안전제도기반조성	2,215	2,662	2,414	△ 248	△ 9.3
▪ 신중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신속조치제도 운영	1,336	1,200	-	△1,200	순감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429	412	1,014	602	146.1
▪ 공산·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및 제품안전 정책개발	450	350	600	250	71.4
▪ 제품안전 정책정보 관리시스템 (2종) 운영	-	-	300	300	순증
▪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	700	500	△200	△28.6
□ 비목(합계)	2,215	2,662	2,414	△ 248	△ 9.3
○ 일반수용비(210-01)	168	138	247	109	79.0
○ 임차료(210-07)	35	5	20	15	300.0
○ 재료비(210-11)	-	-	50	50	순증
○ 시험연구비(210-13)	1,098	906	-	△ 906	순감
○ 위탁사업비(210-15)	-	-	100	100	순증
○ 국내여비(220-01)	16	16	16	-	-
○ 국외업무여비(220-02)	20	19	57	38	200
○ 사업추진비(240-01)	27	27	24	△3	△11.1
○ 연구개발비(260-00)	551	551	600	49	8.9
○ 민간경상보조(320-01)	300	1,000	1,100	100	10.0
○ 자산취득비(430-01)	-	-	200	2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제품안전 기준 제정 및 제품안전 정책개발을 통한 국민안전 사고 예방 및 소비자·기업 안전관리 능력 제고로 국제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국제안전기준 및 국내환경에 맞는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홍보사업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내재화로 안전사회 기반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 1,200백만원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35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412백만원 ▪ 위해성평가 : 700백만원
'14	2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6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014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3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500백만원
'15	2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6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362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500백만원
'16	2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6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362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500백만원
'17	2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6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362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5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안전제도기반 조성	22.5	22.5	22.2	26.6	24.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홍보 예산 절감(1백만원) 및 용역과제 잔액 반납 (4백만원)
- 2011년 : 홍보예산 절감(10백만원) 및 용역과제 잔액 반납(1백만원)
- 2012년 : 여비(39만원), 일반수용비(34만원) 등 집행잔액 불용(1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2.48 ()	()	()	22.48 ()	22.43 ()	()	0.05 ()
'11년	22.48 ()	()	()	22.48 ()	22.37 ()	()	0.11 ()
'12년	22.16 ()	()	()	22.16 ()	22.15 ()	()	0.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1년 국회 지경위 결산(정지은 입법조사관)
 - 안전제도혁신기반구축사업(3732-304)의 '제품위해성평가 및 신속 조치제도'와 공산품안전망 구축사업(3732-303)의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는 사업목적 및 수행방식 등에서 차이가 없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의 통합운영·내역사업 조정 등 사업개편의 필요성 존재
 - 이에, 본 사업은 제품안전정책국 內 두사업(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간 뚜렷한 사업의 차별성 및 제품안전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14년 예산요청시 사업명 변경 및 두 사업간 내역사업을 조정 추진
- ☞ (사업명 변경) 공산품안전망구축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안전제도혁신기반조성 →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
- ☞ (내역사업 조정)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은 불법·불량제품 조사 단속 업무로, '안전제도기반조성'은 제품안전 정책개발, 기준정비, 국제협력, 제품안전관리시스템운영 등 종합적 제품안전 기반조성 중심으로 개편·유사성 해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 ▶ 취약계층지원(Minority Outreach) 캠페인 및 사고정보의 신속한 전달
- ▶ 웹 환경에 맞는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CPSC 2.0 구축

- 다인종 밀집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환기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후원)하에 전시회와 축제 등을 개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언론사나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정보제공
-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는 CPSC 2.0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정보제공 및 블로그, 유튜브, 위젯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 관련 논의에 참여유도
-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신기술 및 유해성평가는 미국의 기술표준원(NIST)와 성능평가 및 잠재적 위험요소의 분석의뢰

< EU >

▶ The Consumer Scoreboard 및 RAPEX annual report의 발행

- E-News를 통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메일을 받아 볼 수 있으며, Health and Consumer Voice Newsletter를 통해 식품안전·소비자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
- □Your rights a consumer□책자를 발행하여 소비자 권리를 알리며 매년 정기적으로 European Commision을 개최(Open door day) 하여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U가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컨퍼런스를 진행

< 일본 >

- ▶ 제품안전강좌 개설 및 다양한 교육·홍보 책자 발간
- ▶ 제품안전 우수대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 운영
- ▶ 제품안전점검의날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품안전 문화정착 추진

- NITE는 주부연합회, NPO법인 간사이 소비자 연합회 등과 공동 참여하에 제품안전에 관한 무료강좌 개설
- 제품안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을 '제품안전대책 우량기업'으로 표창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 및 기업의 제품안전활동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운영
- 제품안전점검의날 세미나 개최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의 의의,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보급하고 계몽하는 활동을 통해 제품안전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추진

(5) 사업추진절차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정보수집 및 통합DB 개념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2,065	3,472	3,495	23	0.7

* 사업코드 : 21 - 11 - 00 - 110 - 114 - 3700 - 3732 - 303

* 담 당 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환), 제품시장관리과장(장금영, 02-509-7250), 사무관(김석무, 02-509-72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2. 사업목적

☐ 생활제품의 시장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 확보

- 생활제품이 국민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정성조사, 안전모니터링 및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515백만원

-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정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부적합제품에 대하여 리콜 명령·권고의 행정조치를 실시
- 시중 유통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 2,515백만원
 - (산출내역) 시료구입비 $5,121\text{건} \times 10\text{만원} = 512\text{백만원}$
 시험수수료 $5,121\text{건} \times 35\text{만원} = 1,792\text{백만원}$
 일반수용비 = 100백만원
 국내(22백만원) 및 국외(59백만원) 여비 = 81백만원
 업무추진비 = 30백만원

②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380백만원

-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조치 대상 제품의 시장 유통 여부를 감시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80백만원
 - (산출내역) 4개분야* $\times 20\text{백만원} = 80\text{백만원}$
 * 어린이용품, 생활화학제품, 안전품질표시, 전기용품 등 4개 분야
- 사이버쇼핑몰 감시 : 40백만원
 - (산출내역) 1개분야 $\times 40\text{백만원} = 40\text{백만원}$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
 - (산출내역) 제품안전감시원 $186\text{명} \times 28\text{일} \times 50\text{천원} = 260\text{백만원}$

③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 불법·불량제품(KC 미인증제품 등) 조사 및 고발, 리콜이행점검 및 불이행시 고발 실시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고발조치 : 53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 $15\text{명} \times 30\text{백만원} = 450\text{백만원}$
 출장비 $160\text{회} \times 10\text{명} \times 50\text{천원} = 80\text{백만원}$

- 리콜이행점검 실시(회수율, 공표현황 등 점검) : 7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 2명 × 30백만원 = 60백만원

출장비 100회 × 2명 × 50천원 = 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정부의 제품안전 정책방향이 제품출시前 강제인증제도 중심에서 출시後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제품 출시후 안정성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 시장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2,065	3,472	3,495	23	0.7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1,295	2,602	2,515	△87	△3.3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320	320	380	60	19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 제품 이행점검	350	450	600	150	33.3
▪ 제품안전정보망 운영지원	100	100	-	△100	순감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비목(합계)	2,065	3,472	3,495	23	0.7
○ 일반수용비(210-01)	74	104	-	△104	순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	△1	순감
○ 시험연구비(210-13)	1,244	2,527	2,485	△42	△1.7
○ 위탁사업비(210-15)	157	150	380	230	153.3
○ 국내여비(220-01)	19	19	-	△19	순감
○ 국외업무여비(220-02)	44	41	-	△41	순감
○ 사업추진비(240-01)	31	30	30	-	-
○ 연구개발비(260-00)	100	100	-	△100	순감
○ 민간경상보조(320-01)	350	450	600	150	33.3
○ 자산취득비(430-01)	49	50	-	△50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소비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안전취약 중점관리 품목’ 선정 및 안전관리 강화
 - * (품목선정) 인증품목 중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리콜 상위품목, 사회적 이슈·계절별 위해 민감 품목 등을 종합한 관리대상 선정
- 온라인 유통제품 대상 안전성조사 강화
 - 기존 안전성조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샘플수를 확대하고, 그간 온라인을 통해 KC 미표시 비율이 높은 제품*을 중점 조사
 - * KC 미표시 주요 적발품목 : 직류전원장치, 전기매트, 학용품, 예초기날 등
- 철저한 리콜이행 점검
 - 기업의 리콜이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후 리콜 회수율과 공표 방식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4.7	□제품안전정보망 운영지원 : 100백만원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 320백만원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600백만원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450백만원
'14	34.9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 380백만원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510백만원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15	34.7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 370백만원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500백만원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16	34.7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 370백만원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500백만원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17	34.7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 370백만원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500백만원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4조(안전인증 등)
 -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3조(안전인증)
 -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23.9	21.5	20.7	34.7	34.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집행잔액 1백만원
- 2011년 : 집행잔액 3백만원
- 2012년 : 집행잔액 5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3.94 ()	()	()	23.94 ()	23.93 ()	()	0.01 ()
'11년	21.54 ()	()	()	21.54 ()	21.51 ()	()	0.03 ()
'12년	20.70 ()	()	()	20.70 ()	20.65 ()	()	0.05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NEISS*, 웹포털 등으로부터 각종 상해·사고 정보를 취합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 분류 및 리콜조치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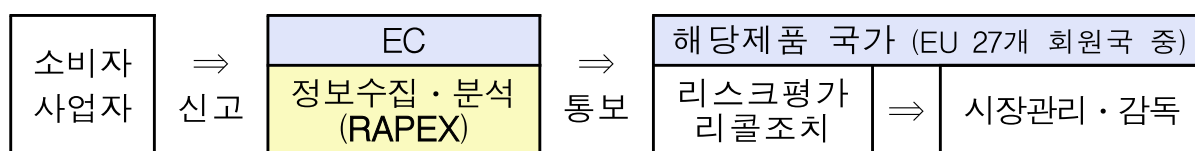
* 병원응급실을 통한 정보수집시스템(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00여개 종합병원으로부터 CPSC 웹을 통해 매년 약 36만건 보고

- (EU) Rapex*를 운영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평가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제품별 상세한 안전기준을 통해 사전 규제강도가 높고 광범위한 사후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리콜 조치 등 시장감시 활동 수행

* (RAPEX) 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dangerous products, 위해 정보수집시스템

<EU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



- (호주) Clearinghouse*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등 사고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 DB를 구축하여 리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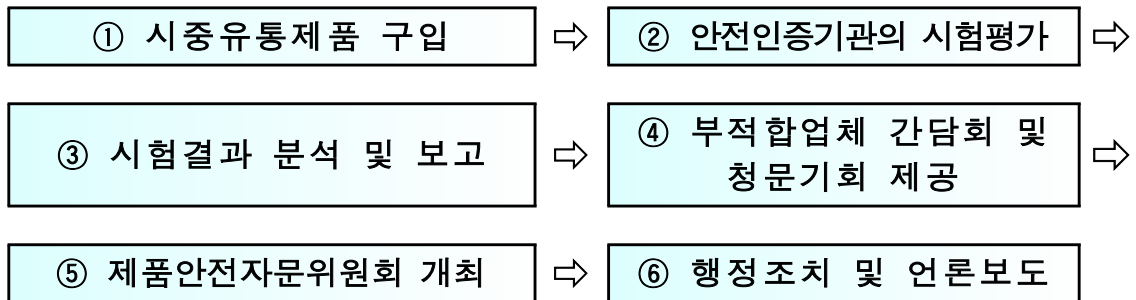
* 사고정보시스템(Clearinghouse)의 업무처리 절차 : 사고정보수집→데이터 입력→초기평가→상세평가→제품안전위원회 행정조치 결정

(5) 사업추진절차

○ 기본절차

위해 안전정보 수집 → 조사분석평가 → 결과 대국민 신속공표 및 조치

- 안전성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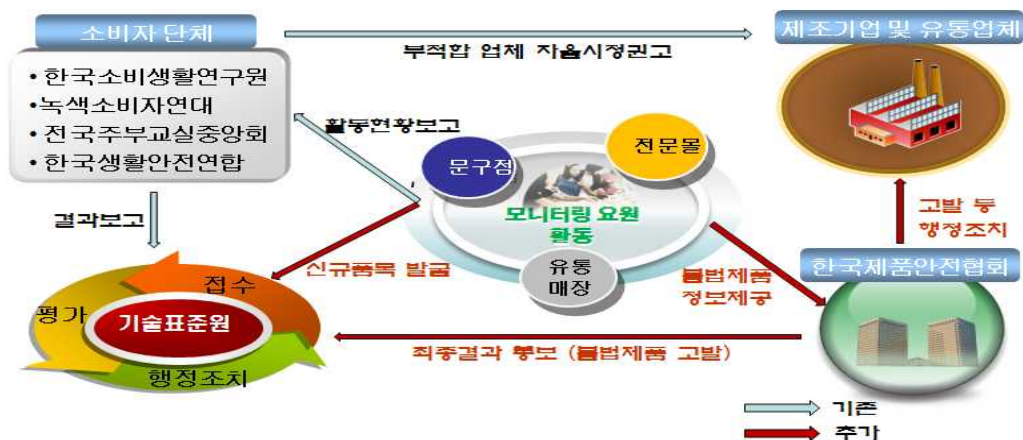


- 제품안전모니터링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 운영체계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시장감시 정책 수립 마련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모니터링 운영	분야별 모니터링 단체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 포함)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180여명)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 운영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공산품 · 전기용품의 연도별 위해 발생 현황 (자료 : 한국소비자원)

[공산품의 연도별 위해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안전인증대상품목	824	927	1,285	964	1,166	1,454	2,132	8,752
자율안전대상품목	1,605	2,013	2,302	3,299	3,469	3,602	4,836	21,126
안전품질표시품목	1,134	1,749	3,351	4,696	6,199	7,031	8,296	32,456
기타 공산품	948	1,561	1,528	1,547	1,599	1,640	2,070	10,893
계	4,511	6,250	8,466	10,506	12,433	13,727	17,334	73,227

[전기용품의 연도별 위해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안전인증대상	1,036	1,225	1,399	1,334	2,204	2,173	2,451	11,822
안전인증대상외	22	21	20	598	701	777	1,005	3,144
계	1,058	1,246	1,419	1,932	2,905	2,950	3,456	14,966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계속)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271	1,672	2,072	400	23.9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1 - 306

* 담 당 자 : 적합성정책국장(이상진, 02-509-7206), 적합성평가과장(정민화, 02-509-7973),
사무관(이정남, 02-509-7284), 연구관(박광호, 02-509-729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금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국제공인기관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국내시험·검사·교정·인증기관들의 능력을 향상으로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기업 등 지원
- 국내 시험·인증의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체결·유지를 통한 국제 동등성 확보 및 국제적 시험·인증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한 ISO 경영시스템 등 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 시험·검사, 제품인증, 시스템 인정기구의 국가단일인정체계 운영

- 정부 규제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던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은 FTA,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
- 제도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험인증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공인기관(시험·교정·검사 등) 시험능력 평가 및 향상을 위한 숙련도 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798백만원
 - 750백만원=30백만원×25건(전기전자제품 유해성, 환경성 등 수출 주력 및 신수요 분야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30백만원=2.5백만원×6건(상용표준물질구입비) + 2.5백만원×6건(해외숙련도프로그램 개발 연구)
 - 6백만원=0.2백만원×30회(숙련도시험 평가관련 여비)
 - 12백만원=1백만원(10명기준×0.1백만원(수당))×12회(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 ※ 884백만원 = 20건개발×25백만원 +16건운영×24백만원 ('13년)
 - 798백만원 = 25건개발·운영×30백만원+30백만원(표준물질구입등)+6백만원(국내여비)+12백만원(숙련도위원회운영) ('14년)
- 주요 수출대상국(66개국)과의 시험성적서·인증서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상호인정(MRA) 확보 기반구축 : 174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정기구 운영기준(매뉴얼·절차서, 운영요령 등) 정비 및 인정위원회 운영 : 104백만원
 - 89백만원=4건(인정기구 운영매뉴얼/절차서, 지침 개발(국·영문))×22.25백만원
 - 10백만원=10회(시험·교정인정위원회 운영)×1백만원(10명참석×0.1백만원(수당))
 - 5백만원=5백만원(공인인정서 전용용지 등 인쇄비)
 - 국제기구(ILAC, IAF)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대응 : 18백만원
 - 13백만원=13백만원(평가회의사무기기임차,통역비,운영비 등)
 - 5백만원=5백만원(평가수검 회의장 임차, 7일)

-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총회 및 협정의 참석 등 국제협력 : 52백만원
 - 42백만원=7건(IAF/ILAC 총회, APLAC 총회/이사회, PAC 총회, 숙련도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국제회의)×2명×3백만원
 - 경영시스템분야 4자회의(한국, 중국, 일본, 대만) 개최 : 10백만원
- ※ 148백만원=142백만원(국제평가수검, 운영기준개발 등)+6백만원(국제협력) ('13년)
 → 174백만원=122백만원(국제평가수검, 운영기준개발 등)+52백만원(국제협력 강화 등) ('14년)

○ 공인시험·인증제도의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기반구축 : 548백만원

- ISO인증의 국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 1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80백만원 = 2명×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전산망·서버 유지보수 : 20백만원
 - 인증현황 실태조사 실시 : 35백만원 = 70건×2명×0.25백만원 (*조사 인원은 심사원 풀 이용)
 - 부실인증처분을 위한 법률자문 : 5백만원 = 5건×1백만원
-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3개 인정기관의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 및 운영 : 300백만원
 - 단일인정체계구축·운영 : 300백만원 = 3개분야×2명×50백만원
- 신수요 시험·인증 기법 등 개발 : 80백만원
 - 사회안전분야 사업연속경영시스템 등 : 40백만원×2건
- 국제적합성평가제도 기반구축 협의 : 18백만원 (시험·인증발전협의, 단일인정구축협의, 부정성적서·인증서방지 협의 등, 시험인증기관 등 대상)
- 국제인정동향 세미나 개최 : 10백만원
- ※ 640백만원=195백만원(부실인증신고센터운영 등)+315백만원(국가단일 인정체계구축운영)+145백만원(신수요시험인증기법개발 등) ('13년)
 → 548백만원=140백만원(부실인증신고센터운영 등)+300백만원(국가단일 인정체계구축운영)+80백만원(신수요시험인증기법개발)+28백만원(세미나, 발전방안협의등) ('14년)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552백만원

- 신수요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조업체·소비자 컨소시엄 등 시험인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산업화 지원 : 420백만원
 - 420백만원 = 210백만원×2개컨소시엄(업체, 시험기관, 소비자 단체 등 구성)
- * 예시 ① 업체 중심 시범사업(Wi-Fi 인증, 무선충전 시험 등)
 - ② 소비자 중심 시범사업(컨슈머리포트 등)
 - ③ 신산업 분야 시범사업(신재생인증, 서비스산업인증 등)
 - ④ 국제표준화 병행 시범사업(나노입자 유해성 평가, 히트펌프 인증 등)
 - ⑤ 전문서비스 시범사업(비파괴 자격인증, 분석컨설팅 등)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태조사 : 132백만원
 - 숨겨진 일자리 창출산업인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 10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를 위한 조사여비 : 4백만원(0.2백만원×20회)
 - 신흥국·개도국 시험인증 패키지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 20백만원(3.3백만원×2명×3회)
- 예) 사우디 표준청과 협의하여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제인증 도입을 위한 시험소 구축('13년)

□ 지원 필요성

- 국내 시험성적서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해소
 - 기업 시험비용의 이중부담을 제거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확보 여부 평가기준인 국제수준의 숙련도 시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입증 필요
- 국내 시험·검사 교정 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
 - 국내 시험 및 교정기관들의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서 기업 경쟁력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선진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업체의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국제 기준과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운영요령·추가 기술요건·지침 등의 개발과, 시험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숙련도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169개 기술분야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1/5 수준인 연간 10~14개의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음

- 글로벌무역 등 경제활동에서 ISO인증이 필수조건이나, ISO 인증의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ISO 인증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10년)

- 신 분야 시험·인증의 수요에 적기 서비스 제공 등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국제 시험·인증 제도 기반구축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271	1,672	2,072	400	23.9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72	884	798	△86	△9.7
▪ 국제동등성 유지, 국제협력 등 기반구축	100	148	174	26	17.6
▪ 국제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599	640	548	△92	△14.4
▪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화 지원	-	-	552	552	순증
☐ 비목(합계)	1,272	1,672	2,072	400	23.9
○ 일반수용비(210-01)	21	40	40	-	-
○ 임차료(210-07)	20	40	25	△15	△37.5
○ 시험연구비(210-13)	20	40	30	△10	△25
○ 국내여비(220-01)	1	1	10	9	900
○ 국외여비(220-02)	42	11	62	51	463.6
○ 업무추진비(240-01)	20	20	18	△2	△10
○ 연구개발비(260-00)	702	1,025	1,027	2	0.2
○ 민간경상보조(320-02)	445	495	440	△55	△11.1
○ 출연금(350-00)	-	-	420	42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존에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상용표준물질 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효과적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지원 추진
- 기업 및 공인기관의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 ISO 인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확보하여 인증의 신뢰성 제고
- 국제적인 시험·인증제도의 국내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신수요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제도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적기에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6.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884백만원 ▪ 국내시험인증기관의 국제상호인정 확보: 193백만원 ▪ 공인시험인증제도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595백만원
'14	2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803백만원 ▪ 국내시험인증기관의 국제상호인정 확보: 177백만원 ▪ 공인시험인증제도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54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544백만원
'15	16.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93백만원 ▪ 국내시험인증기관의 국제상호인정 확보: 177백만원 ▪ 공인시험인증제도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54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354백만원
'16	16.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93백만원 ▪ 국내시험인증기관의 국제상호인정 확보: 177백만원 ▪ 공인시험인증제도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54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354백만원
'17	16.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93백만원 ▪ 국내시험인증기관의 국제상호인정 확보: 177백만원 ▪ 공인시험인증제도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54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354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 사업의 추진),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5조(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 제7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녹색환경경영 체제의 인증 등), 제16조의2(녹색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제16조의3(관리대행자지정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94이전: 국내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을 획득
- '94이후: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를 수행
- '97. 5: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KAB)에 위탁
- '00. 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1. 1: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에 완전 이양(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 권한만 법에 준치)
- '02. 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 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 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 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 제도를 도입('06.12월 시행)
- '07.12: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정고시
- '10. 4: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대한 권고
- '12.5: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 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7: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관련 추진 경위

- '13.5: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6: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7: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제적합성 평가기반구축	7.80	8.86	12.72	16.72	20.7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 집행잔액 4백만원
- '11년 : 집행잔액 7백만원
- '12년 : 집행잔액 1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7.80 ()	()	()	()	7.72 ()	()	0.04 ()
'11년	8.86 ()	()	()	()	8.79 ()	()	0.07 ()
'12년	12.72 ()	()	()	()	12.71 ()	()	0.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해외의 경우(호주 NATA, 영국 UKAS 등), 연평균 50여개 정도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10~14개 정도에 불과하여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국제상호인정분야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숙련도 시험운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0~3.1배의 관련 예산 증액이 요구됨

○ 선도산업표준화 선행대응 관련 일본 정부의 지원 사례

- 일본 경산성의 기술인증연구개발 : 4대 전략분야에 대해 ISO 및 IEC의 국제표준(안) 개발에 매년 약 100억원 지원
- 일본 총무성의 국제기술획득형 연구개발 : 통신분야에 대해 ITU 등의 국제표준(안)개발에 매년 약 20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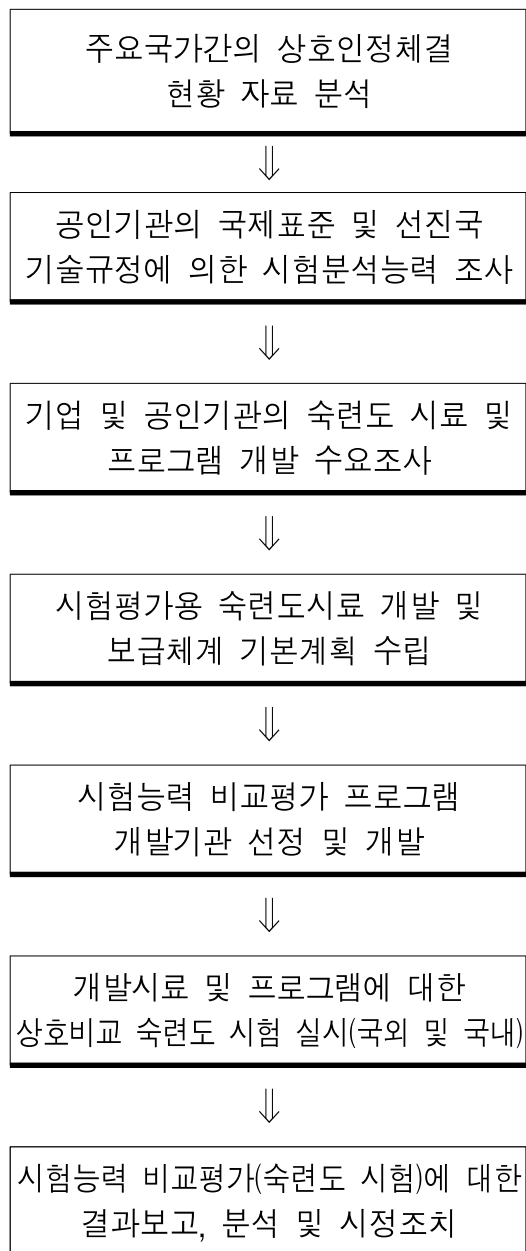
○ 국제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사례

- (EU) 개별 회원국의 통합노력과 병행하여 역내 시험인증제도 통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08)
 - * (영국) '95년 NACCP와 NAMAS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UKAS로 통합
 - * (이탈리아) '09년 2개의 인증제도를 ACCREDIA으로 통합
 - * (독일) '09년 4개의 인증제도를 DAkkS로 통합
- (중국) '07년 CNLA와 NCAB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CNAS로 통합
- (일본) 3개의 인증제도 간 MoU 체결('08), 인증제도 통합 추진중
- (미국) 민간중심의 다원화된 시험인증제도를 운영중이나, 국제기준 제정 등 대외활동 시에는 상무부 소속 NVLAP가 주도
 - * 국제기구(ILAC 등) 가입 59개국 중 미국(11), 캐나다(2), 일본(3), 태국(3), 인도(2) 및 한국(3) 등 6개국만이 복수 인정기구를 운영
- (한국) 시험·검사(KOLAS), 제품인증(KAS) 및 경영시스템(KAB) 분야로 구분되어 시험·인증제도가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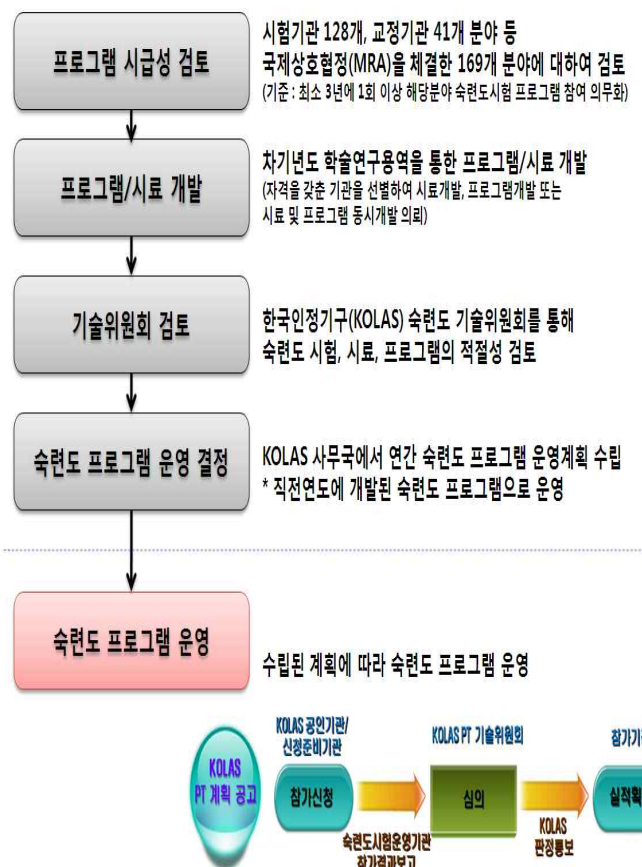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 적합성평가기반구축(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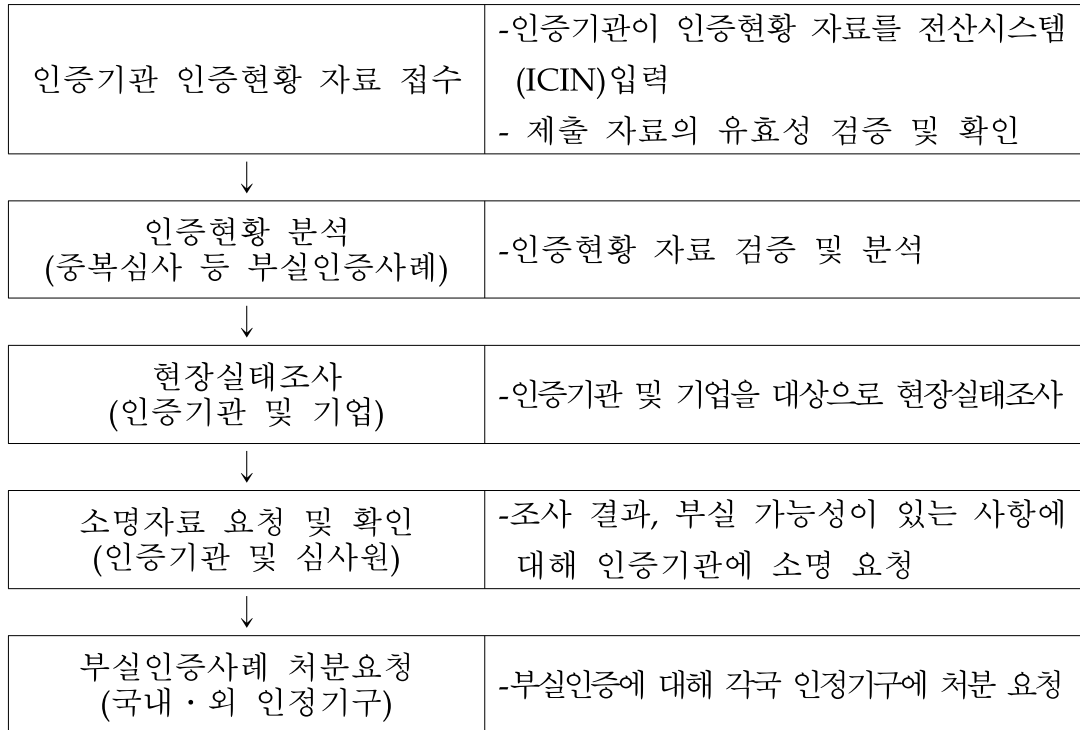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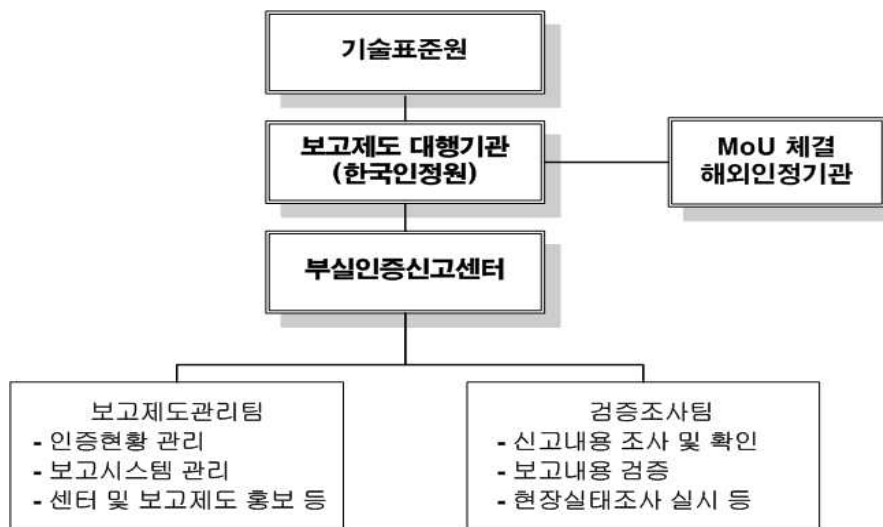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 ISO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 절차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500	443	443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7

* 담 당 자 : 적합성정책국장(이상진), 인증산업진흥과장(김영찬, 02-509-7288), 주무관(전호인, 02-509-728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인증제도 효율화를 통해 인증난립에 따른 소비자 혼란방지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제품 인증마크를 통합하고 인증기준과 절차를 국제규범에 부합화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인증제도 선진화 포럼 운영 : 50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30백만원×1회 = 30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0백만원×1회 = 20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13백만원
 - KC마크 활성화 등 국가인증제도 운영 : 213백만원
 - * 지하철·KTX를 활용한 KC마크 홍보 및 인증제도 홍보자료 제작·배포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조사(여비)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개최 등)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150백만원
 -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실태조사 및 통합방안 연구 : 100백만원
 - 인증제도간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50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443백만원	443백만원
▪ 국가인증제도 선진화 포럼 운영	-	‘국가인증제도 선진화 포럼’ 운영 (50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210백만원)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유지 (213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인증제도 현황 실태조사 (9백만원)	인증제도 현황 실태조사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인증제도 관련 업무추진 (24백만원)	인증제도 관련 업무추진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신규과제 3개 과제 (200백만원)	신규과제 2개 과제로 축소 (1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인증제도는 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중으로 다수·중복인증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범 부처 협의체(포럼) 운영 필요
- 5개부처 13개의 법정 의무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를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 다수·중복인증 문제해결을 위해 인증별 현황조사 및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500	443	443	-	-
▪ 국가인증제도 선진화 포럼 운영	-	-	50	50	순증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215	210	213	3	1.4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10	9	9	-	-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25	24	21	△3	△12.5
▪ 인증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50	200	150	△50	△25
☐ 비목	500	443	443	-	-
○ 일반수용비(210-01)	215	210	233	23	11.0
○ 임차료(210-07)	-	-	30	30	순증
○ 국내여비(220-01)	5	5	5	-	-
○ 국외여비(220-02)	5	4	4	-	-
○ 업무추진비(240-01)	25	24	21	△3	△12.5
○ 연구개발비(260-00)	250	200	150	△50	△2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 인증제도간의 상호인정 및 통합 등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법정 의무인증분야에서 하나로 통합된 KC마크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인증 브랜드로의 육성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 국가인증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업 인증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30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0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33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150백만원
'14	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30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0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33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150백만원
'15	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30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0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33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150백만원

'16	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30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0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33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150백만원
'17	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30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0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33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15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제품인증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표준인증심사제의 운영 등)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 추진경위
 -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은 16대 인수위,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 4 : 국가품질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대통령 보고시 국가 차원의 체계화된 인증제도와 인증마크를 산업자원부가 종합하여 발전시킬 것을 지시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National Mark)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6.5.18 :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대한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시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작업반을 운영토록 의결
- '06.7.6 : 국무조정실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실무위원회(위원장 : 경제조정관) 구성
 - * 실무위원회는 과기부·정통부 등 관련 11개부처 국장 및 한국식품연구원 등 12개 민관기관으로 구성
- '06.8.18 : 산자부·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 9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 실무작업반 상설 운영(비상근 19개부처 담당공무원)
- '07.7 : '07년 표준·인증제도 혁신시행계획 확정(혁신실무위 의결)
 - * 국가통합인증마크(산업부 우선도입, 전부처 확대시행), 모듈심사 절차 간소화(전부처 도입),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07.1.~'08.5 :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관련 조정회의 및 부처·전문가 의견수렴(관련부처조정회의 13회, 전문가 자문회의 44회)
 - *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안)에 대한 18개 부처 의견수렴 확정
- '08.8 : 「국가표준통합인증마크」의 글로벌브랜드화를 100대 국정과제(39번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08.8.29 : 국가표준·인증제도개선 세부이행계획 확정
 - *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도입, 기술기준코드등록 등 4대 과제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공포
 - *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도입, 종합조정시스템 구축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2.6.29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개정
 - * 복수의무인증제품 추가(33개→46개) 및 상호인정 시험항목 확대(9개→11개)
- '12.8.30 : 산업부內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추진완료
 - * 전기용품·공산품·에너지소비효율·가스용품검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KS간 134개 품목
- '13.8.16 :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의결
 - *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유사NET인증제도 통합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9.99	5	5	4.43	4.4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전용 : 국가통합인증마크 전면시행('11.1)에 따라 홍보 필요성이 시급하여 여비에서 운영비로 43백만원 자체전용
- 2011년
 - 전용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집중 홍보가 필요하여 여비에서 운영비로 2백만원 자체전용
- 2012년
 - 전용 : KC마크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내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1백만원 자체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9.99 ()	- ()	()	9.99 ()	9.99 ()	- ()	- ()
'11년	5 ()	- ()	()	5 ()	5 ()	- ()	- ()
'12년	5 ()	- ()	()	5 ()	5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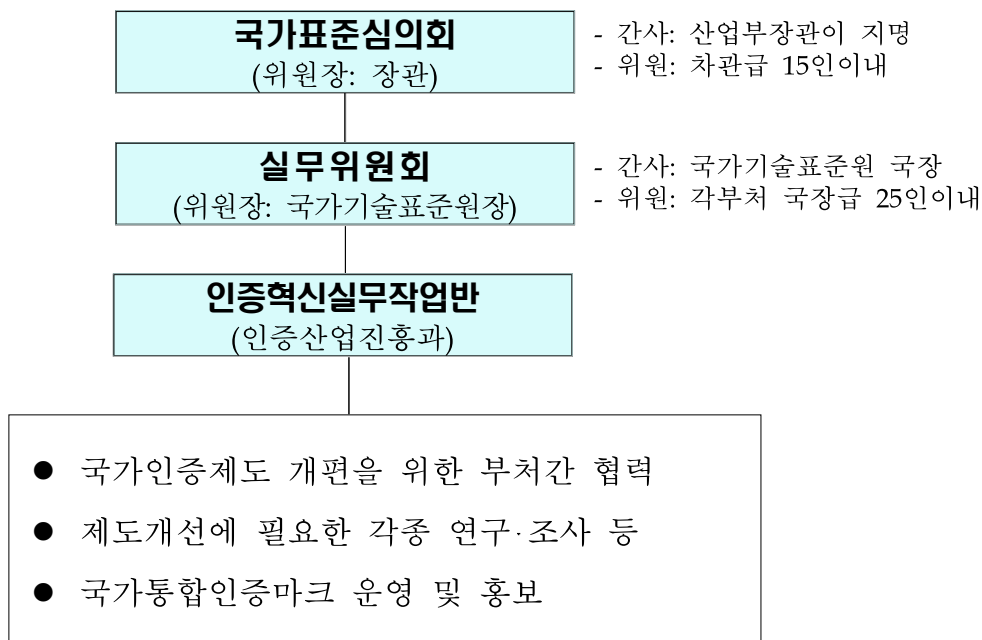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EU) 유럽통합과 함께 안전·위생·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 관련 의무규제 대상을 CE마크로 통합 운영 ('93.7)
 - * 소비자의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전기 및 공산품 중심의 22개 품목군 22천여 제품 (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 8년)
- (중국) 국내제품(CCEE)과 수입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의무 인증 제도를 CCC마크로 통합 ('02.5)
 - * 전기제품, 통신기기, 완구류, 압력용품 등 19개 유형, 325개 제품을 CCC마크로 통합 (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 3년)
- (일본) 의무인증제도를 PS(Product Safety) 마크로 통합·표시
 - * PSE(전기제품), PSC(공산품), PSTG(가스용품), PSLPG(가스)

(5) 사업추진절차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부처의 협력 절차

< 인증 추진 체계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국정과제(137-□번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해당사업)

※ (과제개요)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 억제 등을 통해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품질을 향상

○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시스템적으로 억제

○ 핵심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국내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로 합리적으로 개선필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전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 범 부처 협의체(포럼 및 실무자협의회)를 구성)

□ 인증과 관련한 ‘손톱 밑 가시’ 과제 해결 요구(인수위·총리실 등)

관련 인증	건의 내용
인증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 유사·중복성 있는 인증제도를 통폐합하고, 인증 소요기간 및 비용 단축 국가인증기관 통합(인증기관과 구매기관 이원화)
중복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인증에 의한 중복시험을 면제 요청
전기용품안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접기 및 관련부품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강제기준 개정
시험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시험기관 시험수수료를 중소기업에게는 대폭인하하고, 수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공산품안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인증 자격요건 완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열재 제품관련 KS분류코드 일원화 대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친환경 신제품 관련 KS제정 중단 아스콘 제품 KS의 단체표준 전환

한국경제

2013년 01월 14일

‘인증 마크’는 사실상 준조세 ... 작년 5조9000억 달해

중소 “이런 ‘가시’ 뽑아주세요” ③ 신제품 인증 부담

경기도에 있는 블랙박스 제조업체 C사의 D사장은 올해 개발한 신제품 2종에 대한 국내 인증인 KS를 받지 않았다. D사장은 “컨설팅업체에 인증 절차를 맡기려 했지만 제품당 1500만원까지 달라고 요구해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경상북도에서 수도관을 제조하는 S사는 지난해 10개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비와 공장심사비, 출장비 등 각

이 넘는 유지·심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유지 포기했다. A업체 대표는 “그 돈을 제품 개발이나 직원복지에 쓰는 게 생산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증 사업이 비대해지면서 중소기업에 ‘가시’가 되고 있다. 인증은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품질과 안전성을 제3자가 보증해주는 절차다. 하지만

인증 종류만 185개

각종 비용, 연평균 20% 상승

검사항목도 중복

KS마크 따는데만 8개월

로 KS나 다른 인증까지 따라 해 사실상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년 15개였던 인증 종류가 2012년 17개나 늘어났고, 각종 비용은 20%씩 뛰었다. 중소기업 중 매출의 3% 이상을 인증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업이 1~3%를 쓰는 기업도 4%~5%였다.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줄여 인건비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템프 사 관계자는 “KS 인증을 따

이투데이

2013년 01월 22일

검사·인증비만 ‘억소리’ 안내면 불이익 ‘속앓이’



‘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

유사항목·중복검사 많아 인력·비용 낭비 심각
개발·마케팅비 줄여가며 ‘울며 겨자먹기’ 부담
준조세 표준지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신기술제품인증(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신기술제품인증	1,547	2,043	1,943	△100	△4.9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4 - 301

* 담 당 자 : 적합성정책국장(이상진), 인증산업진흥과장(김영찬, 02-509-7288), 연구관(이원식, 02-509-728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인증평가)
사업시행주체	기술표준원, 한국신제품인증협회(NEP),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G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NET)

2.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기술(NET), 신제품(NEP)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을 발굴·평가·인증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초기 판로지원 등을 통한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친환경 및 녹색기술 등 미래산업 선도 신기술 실용화 촉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 NEP(New Excellent Product)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하여 NEP마크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국내 최초 신기술 또는 대체 기술을 평가하여 NET마크 부여하고 실용화를 지원
- * GR(Good Recycled) :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우수품질의 친환경 재활용 제조제품을 평가하여 GR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신기술 인증(NEP, NET, GR) 평가위원회 등 : 1,406백만원

- 신제품(NEP) : 170건×0.66(참석율)×5.85(단가) = 656백만원
- 신기술(NET) : 259건×0.25(참석율)×4.35(단가) = 282백만원
- 우수재활용(GR) : 98건×0.66(참석율)×5.85(단가) = 378백만원
-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품인증 활성화 전략마련 용역 = 30백만원
- 진천 이전에 따른 서울지역 출장 평가 수행비용(임차료, 여비 등) = 60백만원
- * 임차료 : 2실×30만원×100일 ⇒ 60백만원

<신기술 정부인증 법정단가 산출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심사위원수(명)			합계 (A, a+b+c)	비용	
	1차(a) (대면평가)	2차(b) (현장심사)	3차(c) (종합심사)		단가(d)	총 금액 (d×A)
▪ 신제품인증(NEP)	15	4	20	39	150	5,850
▪ 신기술인증(NET)	10	4	15	29	150	4,350
▪ 재활용인증(GR)	15	4	20	39	150	5,850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11.10.6)에 따른 융합신제품 인증 활성화 : 70백만원

- 융합제품 인증 기준마련 : 40백만원
- 산업융합지원센터, 인증기관들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30백만원

○ 인증제품 판로지원 : 331백만원

-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포상심사 및 촉진대회 : 150백만원
 - 포상심사 수당 : 15백만원
 - * 1차 심사 : 15만원×40명(4개분야 각 10명) = 6백만원
 - * 2차 심사 : 15만원×2명×20건(현장) = 6백만원
 - * 3차 심사 : 15만원×20명 = 3백만원
 - 신문광고 : 15백만원, 포상요령인쇄 등 : 10백만원,
 -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행사장소 임차 : 20백만원
 - 홍보동영상 제작 : 20백만원, 행사기획 및 대행비 : 70백만원
 - * 행사진행, 스텝, 사회자, 제작물, 무대(바닥, 인테리어), 명찰 등 소모품, 음향, 영상, 조명, 촬영, 행사 물품 대여 등

- 공공구매 활성화 : 175백만원
 - 전국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구매 담당자 대상 NEP제품 의무구매 제도 순회 설명회(3회)
 - * 30백만원 * [5백만원(임차료)×3회 + 3백만원(인쇄료)×3회 + 2백만원(여비)×3회]
 - 정부 및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판로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워크숍(3회) : 60백만원
 - * 15백만원(임차료)×3 + 3백만원(인쇄료)×3 + 2백만원(여비)×3
 - 구매력이 큰 16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NEP기업 간 공공구매 상담회(2회)
 - * 55백만원 * [10백만원(임차료)×2 + 15백만원(상담부스 60개)×2 + 2백만원(인쇄, 여비 등)×2]
 - 공공구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공공구매 상담회 운영 방안 의견 수렴 간담회(2회) : 10백만원
 - * [3백만원(임차료)×2 + 2백만원(인쇄 등)×2]
 -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 현장실무 상담(50개 기업) : 20백만원
 - * 15만원(수당)×2명×50 + 5만원(여비)×2명×50
- 나라장터 구매사이트내에 NEP, GR 인증제품관 정비 : 6백만원

○ 인증제품 사후관리 : 136백만원

- 신제품(NEP) : 54품목 × 0.127(단가) = 68백만원
- 우수재활용(GR) : 54품목 × 0.127(단가) = 68백만원

<품목당 사후관리 단가 산출 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액
심사위원수당	3명 × 15만원	45만원
여비	3명 × 9만원	27만원
시험검사 수수료	제품당 평균 55만원	55만원
합 계		127만원

□ 지원 필요성

- 신기술(NEP, NET) 인증사업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미래 선도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동 신기술의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필요
- 국내에서 개발된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 인증제품(GR)은 미래 산업 선도 신기술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
 - * NEP, NET, GR 인증제품이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됨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품 발굴 인증제 신규 시행 필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산업발전 전략(안)」 장관결재 참조)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11.10.6)에 따라 기존 인증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제품 판매에 애로가 있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 기반구축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신기술제품인증	1,547	2,043	1,943	△100	△4.9
▪ 신기술인증지원	1,047	1,597	1,406	△191	△12.0
- NEP 인증평가	497	668	656	△12	△1.8
- NET 인증평가	420	534	282	△252	△47.2
- GR 인증평가	130	395	378	△17	△4.3
- 비즈니스 아이디어제품인증(신규)	-		30	30	순증
- 근무지외 평가수행비용(신규)	-		60	60	순증
▪ 융합신제품 인증활성화	-	70	70	-	-
- 인증기준 개발	-	40	40	-	-
- 네트워크 구축	-	30	30	-	-
▪ 인증제품 판로지원	300	166	331	165	99.4
-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150	150	150	-	-
- 공공구매 활성화	100	10	175	165	1,650.0
- 인증제품관 보완 및 정비	50	6	6	-	-
▪ 인증제품 사후관리	200	210	136	△74	△35.2
- 수당	66	68	49	△19	△27.9
- 여비	39	47	29	△18	△38.3
- 시험·분석	95	95	58	△37	△38.9
□ 비목(합계)	1,547	2,043	1,943	△100	△4.9
○ 일반수용비(210-01)	294	500	415	△85	△17.0
○ 임차료(210-07)	30	50	50	-	-
○ 시험연구비(210-13)	211	235	222	△13	△5.5
○ 사업추진비(240-01)	15	14	12	△2	△14.3
○ 연구개발비(260-00)	147	150	150	-	-
○ 민간경상보조(320-01)	850	1,094	1,094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강소기업이 개발한 NET, NEP, GR, 비즈니스 아이디어 인증제품 등 우수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친환경 녹색성장 구현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인증 지원제도 미활용 초기중소기업을 추가 발굴·인증하여 우수 기술제품 사장화 방지
- 국내·외 신기술 트렌드 분석 및 신기술 인증제도의 정책 다변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인증 연계 방안 마련
- 산업융합신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 산업융합신제품 인증의 조기 안착을 통해 융합신제품 개발 기업 및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 인증제도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0.43	○신기술 인증지원 : 1,597백만원 ○융합신제품 인증 활성화 : 70백만원 ○인증제품 판로지원 : 166백만원 ○인증제품 사후관리 : 210백만원
'14	19.43	○신기술 인증지원 : 1,406백만원 ○융합신제품 인증 활성화 : 70백만원 ○인증제품 판로지원 : 331백만원 ○인증제품 사후관리 : 136백만원
'15	20.43	○신기술 인증지원 : 1,563백만원 ○융합신제품 인증 활성화 : 70백만원 ○인증제품 판로지원 : 200백만원 ○인증제품 사후관리 : 210백만원
'16	20.43	○신기술 인증지원 : 1,513백만원 ○융합신제품 인증 활성화 : 70백만원 ○인증제품 판로지원 : 250백만원 ○인증제품 사후관리 : 210백만원
'17	20.43	○신기술 인증지원 : 1,513백만원 ○융합신제품 인증 활성화 : 70백만원 ○인증제품 판로지원 : 250백만원 ○인증제품 사후관리 : 21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추진경위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신기술제품인증	18	18	15.5	20.43	19.4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 집행잔액 불용(3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8.00 ()	()	()	18.00 ()	18.00 ()	()	()
'11년	18.00 ()	()	()	18.00 ()	18.00 ()	()	()
'12년	15.50 ()	()	()	15.50 ()	15.47 ()	()	0.0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1년 예산 재정사업자율평가 시 보통등급(75.0점)으로 평가(기획재정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NEP인증제도와 중기청 성능인증제도와 중복('10년 예결위 지적)

▶ NEP인증은 국내 최초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 후 3년 이내의 제품이 인증대상이나, 성능인증은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요건을 확인·인증하는 것으로 제도 목적이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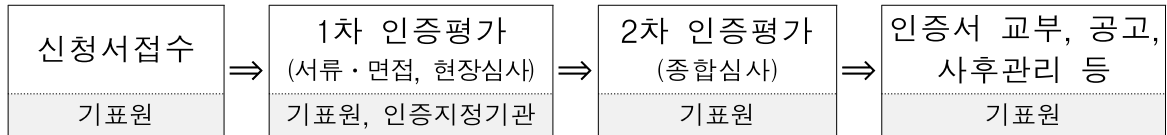
○ 중기청의 공공구매제도와 중복('10년 예결위 지적)

▶ NEP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350개 업체)에 대해 초기 판로를 일정기간(3년) 지원하는 제도이나,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는 모든 중소기업 제품(33만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간 및 대상기업이 차별화 된 공공 구매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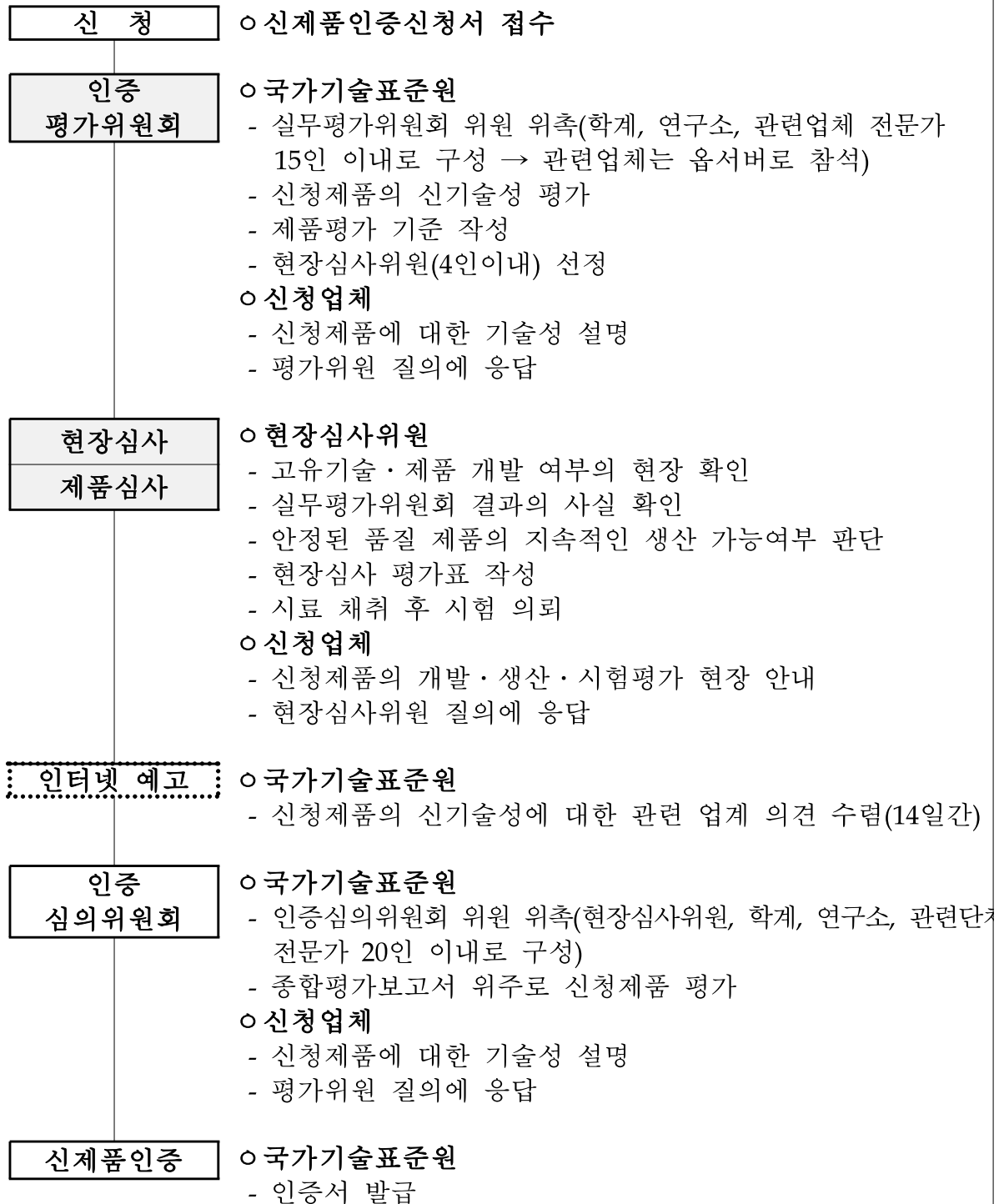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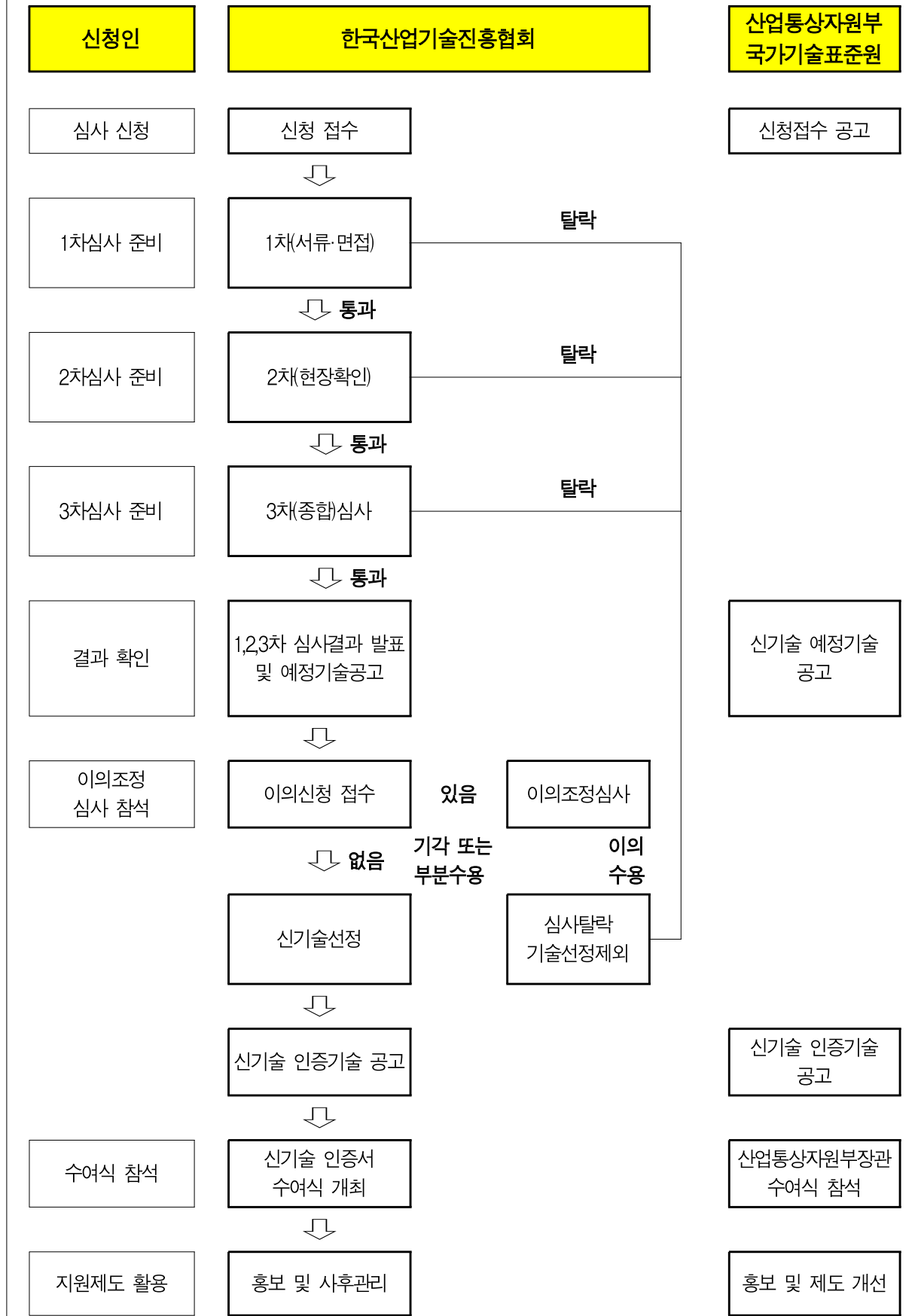
①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②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③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 인증제품 판로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8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1)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

□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

- ①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6 생략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 (신제품의 인증)

-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제품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①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위한 자금지원과 인증 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

①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6 생략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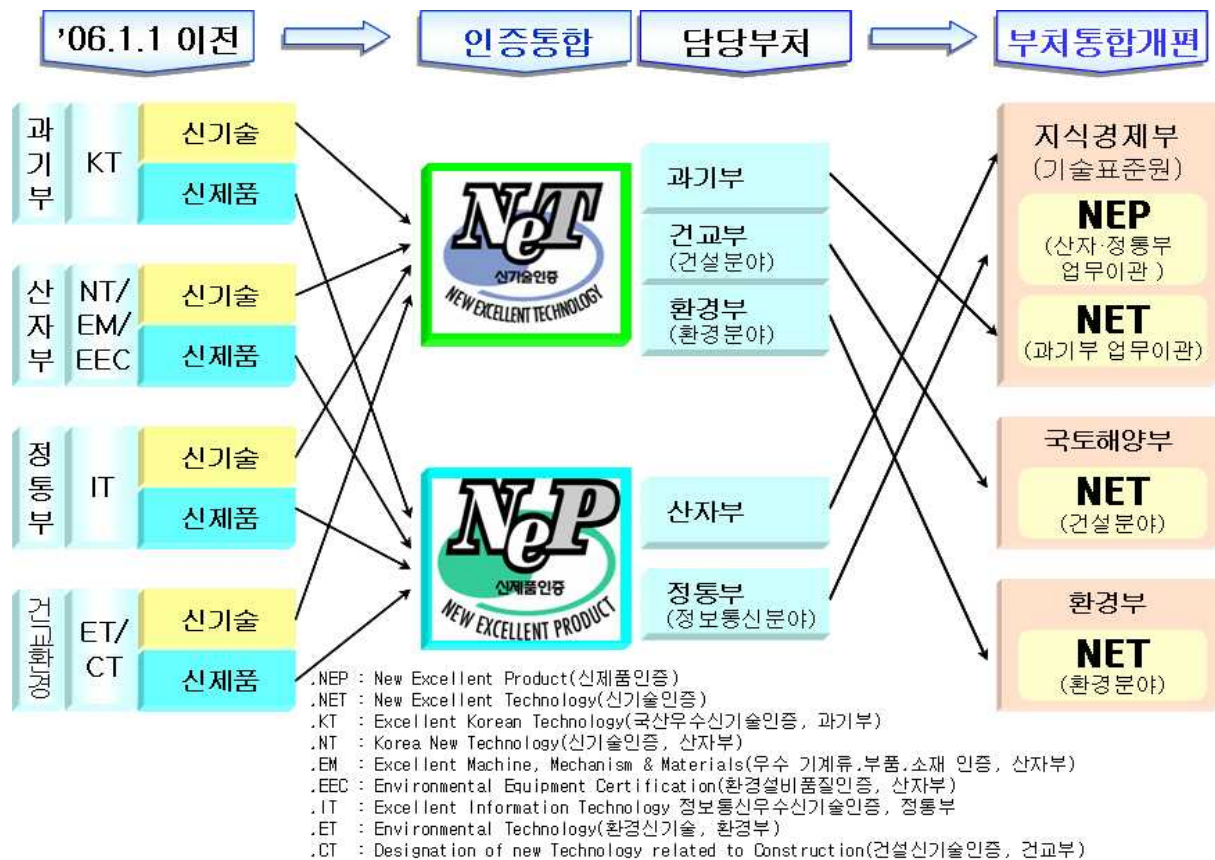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시행 ('08. 2. 28부터 시행)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49	493	1,000	507	102.8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8

* 담 당 자 : 적합성정책국장(이상진), 계량측정제도과장(최미애), 연구관(임완빈)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위탁 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 선진화된 법정계량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통한 공정상거래 질서 확립
- 지능화되는 불법계량기 위조 등의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법적규제대상의 엄정한 관리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215백만원

- '평(坪)', '돈(匁)'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²',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 ('13년) 80 → ('14년) 98백만원

- * 부동산 중개업소, 귀금속업소 등 홍보 (리플렛3종 24백만원, 홍보물3종 23백만원, 기타 6백만원)

- * 대중홍보(지하철 5개지역×1개월×9백만원=45백만원)

- 일간지, 공중파 15개 분야에 대한 'm²', 'g' 등의 법정단위 모니터링 : ('13년) 130 → ('14년) 75백만원

- * 일간지, 공중파 등 15분야 × 전년도 용역단가(3.3백만원) : 45백만원
(일간지 5社, 경제지 5社, 공중파 3社 · YTN · MBN 등 15개 분야)

- * 부동산, 현수막 등 3분야 모니터링 : 30백만원

- 계량 유물 관리 및 운영 예산 : ('14년) 42백만원

- * 계량 유물(문화재: 154종 331점, 비문화재: 83종 219점)

- 유지 · 관리비용(3.5백만원×12개월) : 42백만원

○ 법정계량 기준 · 지침 개발 및 국제기구 대응 : 185 백만원

- 스마트 미터 등의 신수요 기술기준 개발과 검사 · 단속을 위한 지침서 및 해설서 개발 : ('13년) 100 → ('14년) 145 백만원

- * 형식승인 · 검정기준(2종)×계량분야 '13년 평균용역 단가(33백만원, 회의비 절감) × 75% (25백만원) : 50백만원

- * 지침서 · 해설서(3종)×계량분야 '13년 평균용역 단가(33백만원)×60% (15백만원, 전문가 검토 비용 및 회의비 절감) : 45백만원

- * 계량기 유효성평가 연구(1건) : 50백만원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APLMF 등)의 대응 및 상호인정추진 : ('13년) 38 → ('14년) 40백만원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및 OIML 실량표시기술위원회, BIPM 국제도량형기구 총회 참가 : 40백만원

- * OIML에는 총 18개의 기술위원회(TC)와 46개의 분과위원회(SC)에서 연간 30 ~40건 정도의 투표를 진행 함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방안 마련 : 175백만원

- 계량기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예산 : 60백만원

* 계량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용(5백만원×12개월) : 60백만원

- 계량·측정 데이터의 DB화 비용 : 85백만원

* 데이터 입력을 위한 인건비(4명×9.2월×2.3백만) : 85백만원

- 시스템 애로·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형식승인·검정 계량기 현황, 검정·검사, 위반수법 현황 등 모니터링 비용 : 30백만원

○ 생활계량기 및 불법·불량계량기 조사·사후관리 : 144백만원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 90백만원

* 시료구입비(계량기 구입 30종×시료3개×25만원) : 21백만원

* 시험수수료 (시험 수수료 30종×시료1개× 230만원) : 69백만원

- 검 정 계량기 오차검사 : 54백만원

* 수당(150천원×4명×10일×5종=30백만원), 출장비(120천원×4명×10일×5회=24백만원)

○ 계량 교육·제도·홍보 : 201백만원

- 계량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 60백만원

* 계량공무원 정기검사 및 재검정을 위한 실무교육(15백만원×4회=60백만원)

- 계량기사업자 대상 교육 : 35백만원

* 교육대상 2,270명중 700명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 임차료 등 (5백만원×7회=35백만원)

- 계량 사후관리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홍보 : 106백만원

* 사후관리 계획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46백만원×1회) 및 제도용 인쇄물 3종(20백만원×3종)

○ 법정계량전담기관 지정·지원 : 80백만원

- 시판품조사 및 교육, 제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인건비 지원 (2명×4.6백만×12월×72%=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계량 관련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 증대의 견인적 역할을 위해 스마트 미터 등 IT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계량기에 대해 신뢰성 있는 글로벌적 검·교정 및 관련 기술기준 등 선도적 기술표준 지원이 필요
-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공공 상거래 질서 훼손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의 철저한 관리(사후관리)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349	493	1,000	507	102.8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모니터링	239	210	215	5	2.4
▪ 기준 □지침 개발 및 국제기구 대응	110	138	185	47	34.1
▪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DB화	-	145	175	30	20.7
▪ 생활계량기 및 불법·불량 계량기 조사·사후관리	-	-	144	144	순증
▪ 계량 교육·제도·홍보	-	-	201	201	순증
▪ 법정계량전담기관 지정·지원	-	-	80	80	순증
□ 비목(합계)	349	493	1,000	507	102.8
○ 일반수용비(210-01)	142	75	98	23	30.7
○ 시험연구비(210-13)	42	38	126	88	231.6
○ 위탁사업비(210-15)	-	-	442	442	순증
○ 사업추진비(240-01)	5	5	4	△1	△20
○ 연구개발비(260-00)	160	375	250	△125	△33.3
○ 민간경상보조(320-01)	-	-	80	8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성과목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및 법정계량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추진방향)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년~'15년) 및 법정계량선진화 추진계획('12.2)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계량측정 체계 기반 마련 및 계량법 전부개정에 따른 신규 법정계량·측정 업무 수행
- (제도개선사항) 계량관리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고 관련 계량측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추진('15.1월 시행예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93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10백만원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38백만원 · 종합관리시스템 운영·DB화 : 145백만원
'14	10.00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15백만원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85백만원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 175백만원 · 생활계량기 및 불법·불량계량기 조사·관리 : 144백만원 · 계량 교육·제도·홍보 : 2.1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80백만원
'15	10.00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15백만원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85백만원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 175백만원 · 생활계량기 및 불법·불량계량기 조사·관리 : 144백만원 · 계량 교육·제도·홍보 : 2.1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80백만원
'16	10.00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15백만원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85백만원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 175백만원 · 생활계량기 및 불법·불량계량기 조사·관리 : 144백만원 · 계량 교육·제도·홍보 : 2.1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80백만원
'17	10.00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15백만원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85백만원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 175백만원 · 생활계량기 및 불법·불량계량기 조사·관리 : 144백만원 · 계량 교육·제도·홍보 : 2.1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8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비법정단위 사용금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9조(형식승인 사후관리), 제34조(보고 및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 * 계량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원 가능
- 추진경위
 -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추진방안”(국무회의, ‘06.10.17)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국가표준심의회, ‘10.11월)의 “법정계량 단위 정립으로 생활 속 상거래 질서 확립”과제 추진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12.2월)
 - 계량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추진(‘12.5월 입법예고)
 - 사업명 변경(내역사업 추가) : 법정단위정착지원(‘09년) → 법정계량 선진화기반구축(‘12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2.00	1.92	3.49	4.93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00 ()	()	()	2.00 ()	2.00 ()	()	()
‘11년	1.92 ()	()	()	1.92 ()	1.92 ()	()	()
‘12년	3.49 ()	()	()	3.49 ()	3.49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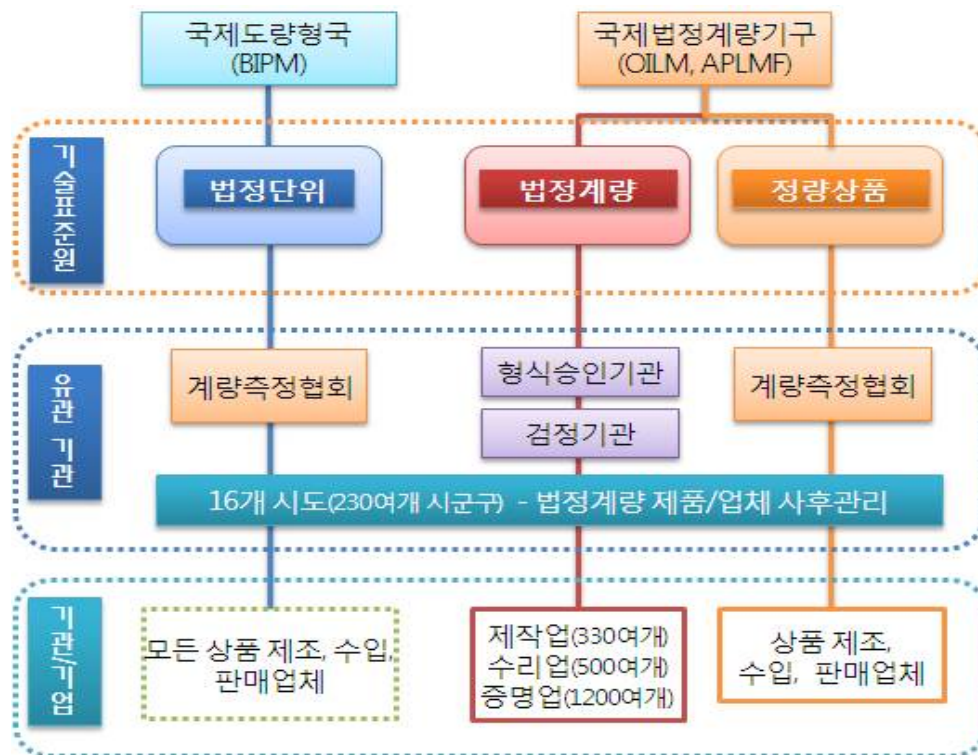
- '13년도 재정자율평가(단위사업명 : 신산업표준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80.0)
 - 기획재정부 : 보통(77.5)
- '09년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 계량단위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언론홍보비를 '08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언론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8년도 법정계량단위 정착 관련 예산 : 기술료사업, 10억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법정단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95%)에서 국제단위계를 공식 채택
 -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미터법 사용을 의무화
 - 중국의 경우 1985년 미터법 도입하여 정착에 성공, 일본은 계량법('51 제정) 개정하여 국제단위계 사용이 성공적 정착
 - 미국은 1866년 미터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아드·파운드법 병기 사용 등 전환이 매우 느리나 최근 미터법으로 단일화 추진
- (기술기준개발) 미, 러, 독 등 3국은 국제기구 기술분과위원회(총 64개)의 64%를 간사국으로 수임하여 Rule Maker 역할 수행
 - * 간사국 : 미국(15), 러시아(15), 독일(11), 영국(5), 프랑스(4), 중국(3), 호주(3)
 - * 18개 기술위(TC)와 46개 분과위(SC)에서 총 118개의 기술기준 개발 중
 - * ISO/IEC의 경우 국내 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10년 만에 순위 14위로 급성장
- (종합관리시스템) 승강기 등의 경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위반자, 위반 대상 승강기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력·예산 한계 극복
 - * 외국 사례 : 미국(CPSC), 일본(NITE) 등의 경우는 주요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 분석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 국내 사례 : 승강기, 자동차 등의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법정계량선진화 기본계획

계량 〔측정분야 공정거래 기반구축 및 산업육성 지원〕

< Before >

< After >

이용자 불편초래 및 땀질식 제도운영	⇒	이용자 편의증진 및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내수시장 위주 산업	⇒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체계로 전환
정부주도형 관리	⇒	기업 자율과 책임강화 및 이용자 참여확대
관행적 계량관리	⇒	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 및 친서민정책 확대

1.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 | |
|--|---|
| ☐ 체계적 계량관리를 위한 법령정비 | ☐ 지능형 계량관리 체계 구축 |
| ☐ 계량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 형식승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
| ☐ 공동주택 계량기 관리체계 개선 | ☐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기술기준 개발 |

2.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체계로 전환

- | | |
|--|---|
| ☐ 측정용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 | ☐ 계량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 ☐ 기업지원형 국제협력체계 구축 | ☐ 표준물질 등 관리체계 구축 |

3. 기업의 자율과 책임강화 및 이용자 참여확대

- | | |
|---|---|
| ☐ 강제 및 자발적 리콜제도 도입 | ☐ 계량기 특성별 맞춤검사체계 |
| ☐ 불법업소 이력관리 및 명단공개 | ☐ 소비자 참여 시장감시 강화 |

4. 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 및 친서민 정책확대

- | | |
|---------------------------------------|---|
| ☐ 형식승인 대상품목 조정 | ☐ 현실성 있는 처벌규정으로 정비 |
| ⑰ 정량표시상품 관리강화 | |

참고 2

생활계량기 사용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 자원재생산, 철강재가공업체 등 계량증명업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2톤 이상의 대형저울은 전국에 약6천대로 추정

- 지자체에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검사설비**(분동, 차량, 운반구), **예산**, **전문인력 부족**으로 약 90%가 **형식적으로 검사**(최대 용량의 10%~20% 범위까지만 검사)

지역	강원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대전	대구	합계
수량	232	1,510	168	263	370	526	79	62	
지역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5,920
수량	389	681	255	223	462	476	145	79	

-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계량기는 검정대상품목이 아니며, 주계량기로 요금을 징수함에 **에너지 낭비와 부당요금 징수**의 원인이 됨

- '70년대 말 오일파동시 에너지 절약의 방안으로 적산열량계 운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운영주체 미지정 및 관리부실로 실효성 상실

*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약200만세대가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사용 ('12.3.19 한국에너지 신문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제도개선 시급”)

* 약100만 세대는 계량값을 무시한 비용분배로 에너지 낭비 초래('12.11.15 SBS 뉴스 “옆집보다 덜 쓰는데... 동일한 난방비, 왜?”)

- '11년 국정감사에서 불법 난방 계량기 부착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와 조작을 지적하고, 실태조사 및 조작방지 방안을 요구(이종혁 의원)

- 우유 유량계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측정용 계량기는 형식승인 대상으로 추가 지정 필요

- 대부분의 OECD국가가 우유 유량계 법정관리(원유단가 : 약833원/L)

- 다만, 시장에서 자율적인 관리환경이 조성된 자동차 타이어 압력계, 음주 측정기, 윤활 오일미터, 배기가스 측정기 등은 의무 교정주기를 지정하여 자율교정관리가 필요하지만,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음

○ 생활계량기에 대한 검정 동향 및 정기검사, 재검정 현황

[2012년 기준]

생활 계량기 종류	유효 기간	검정현황			사후관리 현황			
		신규	수입	소계 [A]	재 검정	정기 검사	소계 [B]	비율 [B/A]
비자동 저울	2년	299,190	229,094	299,192	406*	296,553	299,598	56%
이동식 측중기	2년	215	77	292	-	293	292	100%
수도 미터	6년 8년	2,050,015	186	2,050,021	24,515	-	2,074,536	1%
온수 미터		238,358	-	238,358	3,458	-	241,816	1%
적산 열량계	5년	168,851	55	168,856	2,530	-	171,386	1%
전력량계	7~ 15년	2,556,033	-	2,556,040	4,866	-	2,560,906	0.2%
가스미터	5년 8년	2,250,236	17,397	2,250,241	17,836	-	2,268,077	1%

* 비자동저울 중 계량증명업소 대형저울은 재검정 대상임, 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 열량계, 전력량계는 유효기간 이후 폐기, 가스미터는 수리검정 후 사용 또는 폐기

○ 생활계량기 설치 및 검정 현황

[2010년 기준]

구 분	현황
계량기 설치 수량 (58백만대)	전력량계(31 %), 수도미터(25 %), 가스미터(13 %), 비자동저울 등 기타(31 %)
지역별 설치 비율	경기도(26 %), 서울(20 %), 부산(7 %), 그 외 (47 %)
용도별 설치 비율	주택용(76 %), 의료용(14 %), 차량용(1 %), 저울 등 기타(9 %)
연도별 검정 현황	'10(9백만대), '11(10백만대), '12(9백만대)
종류별 검정 현황	전력량계(29 %), 가스미터(21 %), 수도미터(20 %), 기타(30%)

□ 형식승인 계량기 사후관리 부재

- 형식승인은 제품 출하전 1회 평가 후, 재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생활계량기의 성능보장에 한계가 있어, 시판품조사를 통한 주기적 점검 필요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19조(형식승인의 사후관리)에서는 유통 중인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실적이 전무함

* 2012년 신규 294건, 수입 609건이 발급

* '13년 계량법 전부개정에 따라 “계량기 리콜제도” 신설

번호	계량기 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소계	신규	수입	변경
1	관수동저울	-	-	-	-	-	-
2	접시지시저울/판지시저울	9	1	1	-	1	-
3	전기식지시저울	31	38	42	41	1	24
4	분동	7	2	-	-	-	-
5	이동식측중기	8	2	-	-	-	-
6	가스미터	87	268	139	25	114	7
7-1	수도미터	275	754	360	89	271	49
7-2	온수미터	23	116	29	11	18	11
8	오일미터	-	12	6	6	-	1
9	주유기	34	84	25	1	24	-
10	LPG미터	4	11	-	-	-	-
11	눈새김탱크	-	-	-	-	-	-
12	눈새김탱크로리	-	2	4	-	4	-
13	적산열량계	41	135	154	20	134	-
14	전력량계	264	330	78	42	36	45
15	곡물수분측정기	3	1	2	-	2	-
16	속도측정기	1	2	-	-	-	-
17	체온계	38	37	11	10	1	31
18	혈압계	62	40	52	49	3	56
합 계		887	1,835	903	294	609	224

참고 4

‘정량 부족’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

□ ‘양 부족’ 관련 소비자 불만현황 (소비자보호원 상담사례)

(단위: 건)

구분	품목	2010년	2011년	합계
물품	식료품&기호품	140	184	324
	식생활기기	1	2	3
	주방용품·설비	1	2	3
	가구	3	-	3
물품	가사용품	13	14	27
	광열.수도	117	93	210
	의류,섬유, 신변용품	47	55	102
	보건.위생용품	23	29	52
물품	차량 및 승용물	74	73	147
	문화용품	4	-	4
	정보통신기기	5	3	8
	도서.음반	2	2	4
	스포츠.레저.취미용품	1	2	3
	토지.건물 및 설비	18	16	34
물품	농.수.축산용품	3	3	6
	기계류 기타물품	9	3	12
물품관련 서비스	세탁업 서비스	1	-	1
	운수.보관.관리서비스	6	9	15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2	2	4
	문화.오락서비스	1	2	3
	의료서비스	1	-	1
	보건.위생서비스	2	1	3
	법률.행정서비스	1	-	1
	교육서비스	-	1	1
서비스	기타서비스	13	18	31
	금융	5	1	6
	보험	2	-	2
합계		495	515	1,010

참고 5

정량상품 및 계량기 경제적 기대효과 추정

정량표시상품 생산현황 (주요 업종별 생산액)

(단위 : 업체, 10억원)

구 분	직 접 관 련 업 종					소 계 ^{*2}	간접관련 업종	합 계
	음식료 제조업	식 유 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섬유,가죽,모 피,종이 제품	화장품, 의약품 ^{*1}		비금속, 광물, 가공원료 등	
업체수 ^{*3}	11,597	128	2,271	8,231	1,022	23,249	2,757	26,006
생산액	55,647	117,827	99,081	52,864	18,613	344,032	28,449	372,481
생산비율	15 %	32 %	26 %	14 %	5 %	-	8 %	100 %

* '08 광업·제조업통계조사(2009.12 통계청)

* 1. 2009년도 통계연보통계표(2009.11 식품의약품안전청)

* 2. 직접관련업종(음식료제조업, 식유정제품, 화학물 및 화학제조, 섬유·종이제품, 화장품, 의약품)합계

* 3.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

* '08년 정량상품의 직·간접적인 거래량은 약 372조원('09.11월 통계청)

⇒ 계량측정 오차를 1%를 줄일 경우 약 3조7천억원(전체 거래량의 1%)의 소비자 피해 예방, 물가안정기여 등의 경제적 효과 기대

휘발유, 경유 및 LPG

(단위 : 백만B, %)

총소비량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납 사	LPG
794.5	68.9	29.4	134.7	62.2	331.7	105.2

※ 자료 : '11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주요통계

휘발유 : '10년 소비량 68.9백만B = 10,954백만L ⇒ 21,907,995백만원(단가 : L당 2,000원 기준)

경 유 : '10년 소비량 134.7백만B = 21,415백만L ⇒ 38,547,261백만원(단가 : L당 1,800원 기준)

등 유 : '10년 소비량 68.9백만B = 4,674백만L ⇒ 6,543,781백만원(단가 : L당 1,400원 기준)

L P G : '10년 소비량 105.2백만B = 16,725백만L ⇒ 18,397,628백만원(단가 : L당 1,100원 기준)

* '10년 휘발유, 경유, 등유 및 LPG 소비량은 4억 배럴('11. 지경부)로 약 85조원 추정

⇒ 현행 주유기 오차를 절반(0.75%→0.375)으로 줄일 경우→연간 약 3천억원 비용 절감
{연간 기름판매액(85조원)×오차감소(0.375%) = 약 3천억원}

전기 (2010년 1~9월)

고객 호수(호)	판매량(백만kWh) ('10.1월~9월)	판매수입(억원) ('10.1월~9월)
19,051,691	325,207	279,275

※ 자료 : '11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주요통계

* '10.1월~9월까지 전력소비는 2조8천억('11. 지경부)로 연간 약 3조5천억원 추정

⇒ 현행 전력량계 오차를 절반(1.5%→1%)으로 줄일 경우 약 1,745억원 비용절감
{연간 전력소비량(3조5천억원)×오차감소(0.5%) = 약 1,745억원}

□ 계량정보망을 이용한 체계적 계량기 사후관리(독일, 네덜란드 등)

- 계량정보망을 이용하여 검정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계량기의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수립과 사후관리 정보(합격여부 등)를 실시간 관리
- 특히 한정된 예산 및 인력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계량정보망에 등록된 과거 검정결과(불합격 및 벌금 부과 이력) 등을 활용하여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선별적(샘플링) 관리
 - * 우리나라의 경우 계량기 관리정도와 관계없이 전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형식적으로 운영

□ 정부 주도의 계량기 사후관리(네덜란드)

- 검정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계량기 소유자(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자)는 계량기에 대한 상시관리 책임이 있음
- 정부 지정기관(Verispect BV)에서 검정유효기간 도래 계량기에 대한 불시 검정을 실시(비용 : 정부 부담)하여 소유자의 관리상태 점검
 - * 네덜란드 정부에서 Verispect BV에 연간 약 40억원의 예산을 지원

□ 유럽의 경우 법정계량 분야가 다양한 생활계량기로 확대 추세

- 전력량계 등 가정용 계량기와 일반 측정기용 계량기 위주의 관리에서 맥주 정량측정기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확대 추세
 - * 예 : 식품안전(참치의 납함유량 등), 의료(유방암 측정, 콜레스테롤 측정 등), 환경보호(탄소측정 등) 등
 - * 국내의 경우 전력량계 등 가정용 계량기 위주의 18개 품목 만 관리

□ 추진 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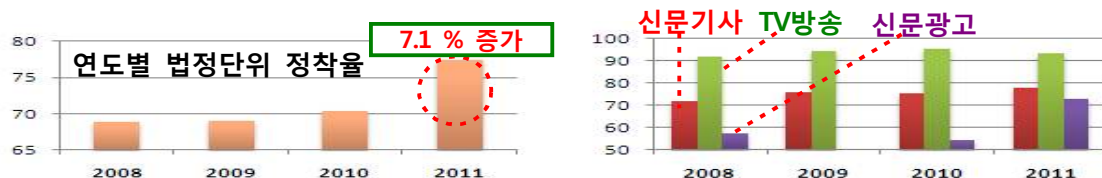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 계량단위로 채택하고 非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
 - * 국제단위계 : 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으로 m, kg 등이 기본 단위
- '07년부터 일제 잔재인 '평(坪)·돈' 단위 사용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고 인치, 야드, 파운드 등의 단위는 제도 중심으로 추진

< 추진경과 >



□ 법정단위(m²) 정착 현황

- 주요 언론매체(기사, 광고)의 m² 정착율은 '10년 대비 7.1% 증가
 - TV뉴스와 경제신문 기사의 m² 정착율이 높으나, 일간신문의 기사 및 신문광고는 낮은 경향



연도	TV 방송	신문(기사)			신문 광고	평균
		일간지	경제지	평균		
'11	93.4	67.6	84.0	78.0	72.7	77.4
'10	95.5	66.6	81.6	75.6	54.4	70.3
'09	94.5	70.4	79.8	76.1	50.0	69.0
'08	92.1	67.5	74.3	72.1	57.4	68.8

* 조사대상 : TV(KBS, MBC, SBS, mbn, YTN),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15종

- 전국 29개 시·군·구의 675개 부동산중개업소 조사결과 “m²” 표기 16%, “평” 표기 32%이며, “m²”와 “평” 병행표기는 52% ('11.6월)

* '11.11월 서울 강남 소재 1,796개 부동산업소 실태조사결과 “m²”표기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812	1,500	2,000	500	33.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6 - 301

* 담 당 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이상진), 기술규제정책과장(임헌진, 02-509-7258),
사무관(주원군, 02-509-7261), 연구사(김용득, 02-509-725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 기술규제 선진화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중복, 과다인증 등 부적절한 국내 기술규제 예방과 선진화를 위한 사업임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 1,211백만원

- 수출기업 지원 :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 FTA TBT 협정 연구 : 5국가 × 약35백만원 = 171백만원
 - TBT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분석 : 1,040백만원
 - * WTO TBT 통보문 요약문 번역 및 현황조사 : 2000건 × 70,000원/건 = 140백만원
 - * 주요 규제 통보문 본문 번역 및 심층분석 : 180건 × 5백만원/건 = 900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대응 국제협력 및 「TBT 중앙사무국 운영」 : 289백만원
 - WTO, FTA TBT 위원회 및 관련 국제회의 참가 : 147백만원
 - TBT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및 대응 회의 개최 : 55백만원
 - * TBT 대응 확산을 위한 행사 : 35백만원
 - * 전문가그룹 회의수당 : 20회 × 10인 × 10만원 = 20백만원
 - FTA TBT 협정 관련 법률 자문 = 4건 × 10백만원 = 40백만원
 - FTA/TBT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 2건 × 10백만원 = 20백만원
 - 중앙사무국 운영 : 27백만원
- 국내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선진화 : 500백만원
 - 각 정부 부처의 신규 기술규제 도입 시 중복규제,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 기술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 예방
 -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기술규제 개혁 신규 예산 : 500백만원
 - * 신규 기술규제 영향평가(전문가활용, 자문, 현장방문·평가 등) : 250건 × 1.8백만원 = 450백만원
 - * 전문가분석비(117만원/건), 번역비(36만원/건), 자료구입비(27만원/건) 등
 - * 국가표준(KS)(24천여종)과 19개부처 기술기준(24천여종)의 불일치 조사 및 기존의 기술규제 발굴 : 1식 × 50백만원 = 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무역기술장벽(TBT)이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함
 - * 제품의 적기출하(Time to Market)가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발생이 큼
- 최근에는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가 세계적으로 확대 및 강화 되면서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 WTO TBT 통보문 추이 : ('06) 875건 → ('08) 1,251건 → ('10) 1,419건 → ('12) 1,550건
 - * 최근에는 기술규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국가로까지 다변화 및 강화되는 추세임

- WTO TBT 통보문에 의한 기술규제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이 60일 이내로 시간이 부족하며,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포기
- 양자·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상대국의 새로운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에 전달하여 사전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812	1,500	2,000	500	33.3
▪ 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및대응지원	559	1,211	1,211	-	-
▪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등	253	289	289	-	-
▪ 기술규제영향평가지원체계구축	-	-	500	500	순증
☐ 비목(합계)	812	1,500	2,000	500	33.3
○ 일반수용비(210-01)	140	120	120	-	-
○ 임차료(210-07)	16	15	27	12	80
○ 국외업무여비(220-02)	88	147	136	△11	△7.5
○ 사업추진비(240-01)	9	7	6	△1	△14.3
○ 연구개발비(260-00)	559	1,211	1,711	500	41.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인 무역 기술규제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대응 지원 서비스 운영
- 수출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을 규제 입안 초기단계에 입수·분석하여, 협상, 공식 이의제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
 - WTO, FTA TBT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등 TBT 업무의 국내 총괄 조정기능 및 TBT 중앙사무국 운영
 - 무역기술규제(TBT)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화(single window)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TBT대응 서비스종합허브' 운영
- 국내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규제 선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전파 대응 및 FTA TBT협상전략마련: 1,211백만원 ▪ TBT 대응 국제협력 및 중앙 사무국 운영: 289백만원
'14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전파 및 FTA TBT협상 전략마련 : 1,211백만원 ▪ TBT 대응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289백만원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원체계 구축 : 500백만원
'15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전파 및 FTA TBT협상 전략마련 : 1,211백만원 ▪ TBT 대응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 289백만원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원체계 구축
'16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전파 및 FTA TBT협상 전략마련 : 1,211백만원 ▪ TBT 대응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289백만원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원체계 구축
'17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전파 및 FTA TBT협상 전략마련 : 1,211백만원 ▪ TBT 대응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289백만원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원체계 구축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WTO TBT 협정 제2.2조, 제10.1조, 제10.2조, 한·미 FTA 협정('07)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 WTO TBT 협정 제2.2조, 제10.1조, 제10.2조

WTO TBT 협정문

제2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이하 생략

제10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10.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10.2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한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 OECD 규제개혁보고서('07.4)

OECD 규제개혁보고서

< Conclusions and policy options >

3. Strengthen efforts to avoid unnecessary trade restrictiveness and further promote international harmonisation of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 Encourage greater co-ordination between ministries in the area of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viding KATS/MOFAT with greater authority for such co-ordination in its review under the 2nd National Standards Plan (2006-2010). In addition, the creation of a central WTO Enquiry Point would facilitate trade and increase transparency.

- 한·미 FTA 협정('07)

한·미 FTA TBT 협정문

제9.6조 (투명성)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부속서 9-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 한·EU FTA 협정('10)

한·EU FTA TBT 협정문

제 4.10 조(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부속서 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1.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 추진경위

- '06.6 FTA 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 보고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 '10.2 '기술보호무역주의 선제대응체제' 구성
- '10.11 기술규제서비스과로 과명 변경
- '10.12 TBT KOREA 2010 컨퍼런스 개최(외교부, 기재부, 복지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KOTRA, 주한EU, 상공회의소 등 참여)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12.7.13)
- 지경부내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구성('12.12.12)
-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 개정('12.12.13)
- 기술규제 영향평가가 포함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전부처 공지 ('12.12.21/국무총리실)
 - * 국정과제 1-5-1(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 국정과제 4-137-5(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8.69	8.13	8.13	15.0	2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종합적 기술규제 대응활동 추진을 위해 43백만원 및 집행잔액 등 21백만원 불용
- 2011년 : 집행잔액 등 2백만원 불용
- 2012년 : 집행잔액 등 1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69 ()	()	()	8.69 ()	8.48 ()	()	0.21 ()
'11년	8.15 ()	()	()	8.15 ()	8.13 ()	()	0.02 ()
'12년	8.13 ()	()	()	8.13 ()	8.12 ()	()	0.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예정처 검토 의견
 -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확대·강화중인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 필요함
-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음
 - 원칙적으로 증액이 필요함
- 2010년도 예결위 종합심사('10.12월)
 - 동 사업예산의 증액의견이 제시됨
 - * 동 사업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확대·강화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
- 2009년 국회 종합심사('09.12월)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증액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WTO 회원국의 질의처 운영실태				
◇ 사무국을 설치한 136개 국가중 113개 국가(83%)가 단일 사무국을 운영				
사무국(개수)	1개	2개	3개	4개
국 가	113개 국가	13개 국가	6개 국가	4개 국가
◇ WTO/TBT 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시 관련 정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타 회원국의 통보내용을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보급해야 함				

- EU

- EU 공동위 산업국에 TBT 지원팀을 운영하여 EU 회원국 27개국에 대한 의견조정 총괄기구 및 대외창구 역할 수행
- FTA 체결국간의 정보제공 및 질의회신 등의 역할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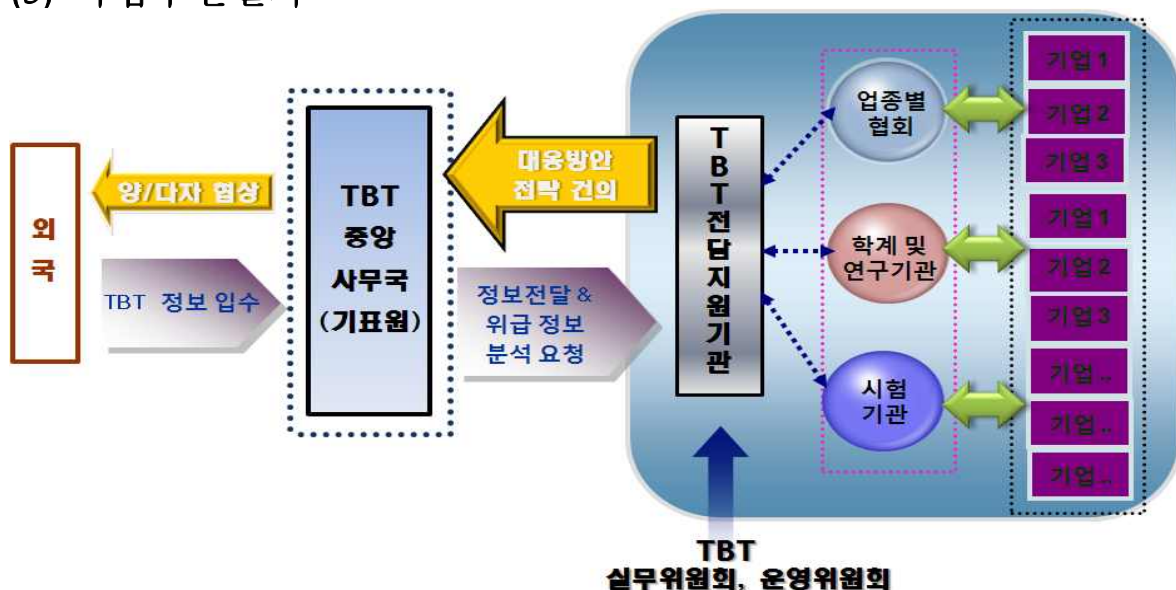
-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국립표준인증정보센터(NCSCI; National Center for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를 설치하여 연방 및 51개주를 대표하는 중앙질의처 역할 수행

- 상무부 Technical Compliance Center에서 해외기술규제, 업계의 수출 애로 모니터링, 미국무역대표부(USTR)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 도모

- 중국

-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AQSIQ;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 소속 International Inspection and Quarantine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Research Center를 설치하여 중앙질의처 역할 수행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주요 TBT 대응사례 】



미 국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정 강화 [성공사례]

- (개요) 미 교통부는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소형 리튬이온 전지를 항공운송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항공 운송수량 제한, 포장 강화, 보관위치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10. 1월)
- (예상 피해) 동 규제 시행시 우리 휴대폰 제조업체는 휴대폰 Unit 당 최대 \$3의 운송비 증가 예상 및 신제품 출하 지연 불가피
 - * 규제 시행 시 약 3000억원 이상이 운송비로 추가 소요
-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 이의제기(7회), 양자협약(5회) 등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일치화, 과도한 규제 철회를 미국에 요구
- 미국은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여 완화된 규제안을 발표('12. 4월)
 -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 무역기술장벽 해소



베트남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규제 [성공사례]

- (개요) 베트남에서 '13년 1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시행
- (애로사항) 에어컨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시험소가 1개이어서 규제 시행('13.1) 이전에 시험완료가 불가하여, 수출에 차질이 예상됨
 - * 對베트남 에어컨 1,400만불 수출('11년)
- (대응 활동) 시행 6개월 연기 또는 우리나라의 시험소를 베트남 에너지 규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요청
 - * 베트남 산업무역부로 아국의견 전달(8월, 9월), 상무관 방문(10월)
- (대응 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베트남 에너지 규제 시험기관으로 지정('12.11.29)받아 국내에서 시험 가능하게 되어, 애로사항 해소

터 키 에너지 효율규제 대응 (성공사례)

- (개요) 터키에서 EU와 동일한 에너지 효율규제를 도입하면서 '13년 1월부터 시행함을 통보함('12. 8)
- (애로 사항) 규제를 적용하여 터키에 수출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되나, 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수출에 차질이 예상됨
* 對터키 에어컨 4,500만불 수출('11년)
- (대응 활동) 터키에 1년 이상 규제 시행유예를 요청하고, 불합리한 시험항목(에너지 효율비) 수정을 요청('12.10)
- (대응 결과) 터키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을 1년 유예하고, '14년까지 불합리한 시험항목을 수정할 계획임을 통보('12. 11)

EU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연료효율성 라벨링 규정 (성공사례)

- (개요) EU는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연료효율성 라벨링 시행('12.11)을 통보함
* 국내업체의 대EU 타이어 수출량(2011년도) : 8.2억\$
- (예상 피해) 스테드 타이어(스테드 핀을 부착한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는 동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이나
- EU 측에서 장거리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스테드 타이어에 대해 라벨 부착을 요구
* 스테드 타이어 특성 상 라벨 획득이 쉽지 않아 對EU 수출중단이 우려
-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12.3), 한-EU FTA/TBT 위원회('12.4) 이의제기 등을 통해, EU로부터 핀이 제거된 스테드 타이어도 적용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음 📝 무역기술장벽 해소

 인도 전자제품 안전인증 대응 [성공사례]

- (개요) 인도에서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13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12. 10)
- (애로 사항)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7개)은 부족하고 인증을 받을 우리 제품은 많아, 시행일까지 수출제품에 대한 시험완료가 불가
 - * 시행일('13.4)까지 수출제품의 40% 정도만 시험 가능
 - * 대상제품 對인도 8,800만불 수출('11년)
- (대응 활동) 인도에 규제시행 6개월 연기, 시험방법의 국제표준 부합화 등을 공식 문서로 요구('13.1)하고, 인도 규제당국 방문('13.2), WTO TBT 위원회에서 공식 이의제기('13.3)
- (대응 결과) 인도에서 규제시행을 3개월 연기, 경과조치 3개월 설정을 발표하고, 시험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혀 수출 애로사항 해소('13.3)

 브라질 철강제품 강제인증 [실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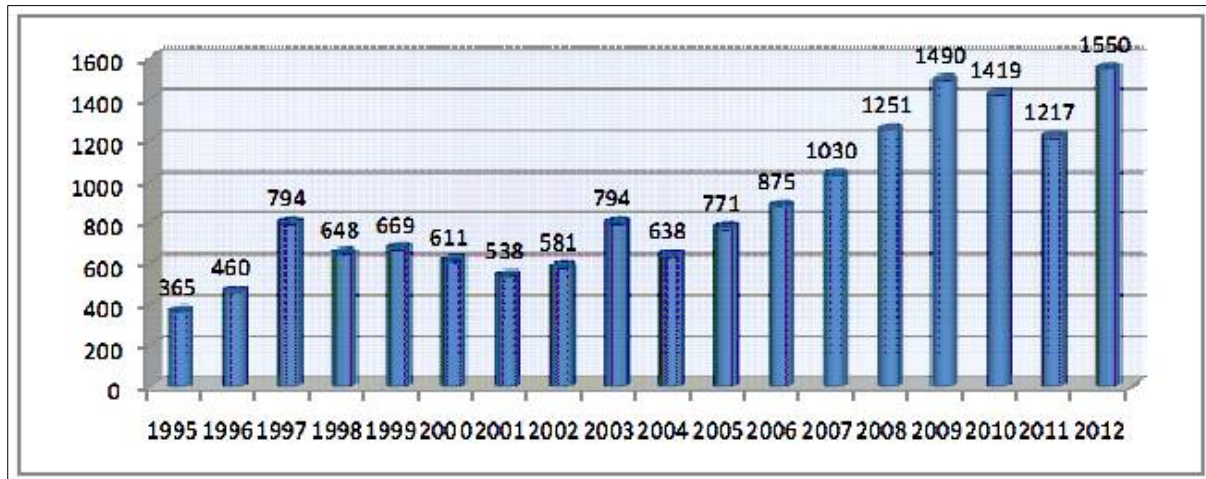
- (개요) 브라질 계량품질기술원(INMETRO)는 건축용 철강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고 WTO TBT 통보문을 발송('11. 1월)
 - 2페이지 정도 요약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규제 원안이 포르투갈어이고 예산부족으로 규제원안을 번역·분석하지 못하였음
- (피해) 국내 철강회사가 기 시행된 강제인증을 인지하지 못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철강제품 9,000톤을 통관하지 못하고('12.7) 국내로 반송
 - 국내 KS기준과 브라질 인증기준이 달라,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 규격에 맞추어 제품을 다시 제작함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원인분석 및 대책) TBT 통보 초기에 규제원안을 충분히 분석하였다면,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등을 요구하고 국내 기업에 강제인증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예방이 가능

무역기술장벽 통계 자료

□ WTO TBT 통보문 현황

연도 대응활동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TBT통보문	365	460	794	648	669	611	538	581	794	638	771	875	1,030	1,251	1,490	1,419	1,217	1,550
우리나라 통보문	13	9	14	8	21	27	27	19	19	16	19	29	37	33	57	45	47	77

< 1995년 이후 TBT 통보문 건수 >



□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건수]

연도 내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위원회 전체현안	27	24	36	46	58	75	61	76	90
아국제기 건수	2	1	4	2	7	8	6	10	9
아국대상 건수	2	2	2	2	3	4	3	7	8

□ 선진국-개도국 TBT 통보 현황

[단위 : 건(비율)]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선진국	287(79%)	322(70%)	567(71%)	387(60%)	365(54%)	370(61%)	249(46%)	257(44%)	254(32%)
개도국	77(21%)	139(30%)	232(29%)	257(40%)	308(46%)	238(39%)	298(54%)	328(56%)	543(68%)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선진국	230(36%)	270(35%)	293(34%)	358(34%)	408(32%)	278(19%)	281(20%)	262(22%)	310(20%)
개도국	410(64%)	492(65%)	579(66%)	680(66%)	851(68%)	1,217(81%)	1,147(80%)	953(78%)	1,240(80%)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890	900	900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3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이상진), 기술규제협력과장(최철호, 02-507-7649),
연구사(전종윤, 02-509-72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전액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2. 사업목적

□ 수출전략지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체계를 우리와 동질화시키기 위한 교육·컨설팅·포럼·양자프로젝트 등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수출시장 확대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우리 표준체계 전수를 통해 사전 기술무역장벽 대응, 수출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화를 이해시키는 문화적 외교활동으로도 접근

* 표준동질화 ⇨ 경제·사회·문화 동질화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기술표준 초청과정 운영 : 260백만원

-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아프리카표준화기구(ARSO), 남미표준화기구(COPANT), 중동표준화기구(GSO), 아세안표준화기구(ACCSQ)와 공동으로 전략국가 대상 표준, 시험인증, 계량관련 초청과정 운영
- 52명(초청인원수) × 5백만원(1인 평균 교육운영비) = 약 260백만원

○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 300백만원

- 집중협력과정 6개국 × 약50백만원(1개 평균프로젝트 비용) = 300백만원
- * 전략 협력국 기술표준인프라 향상 및 우리 표준체계 전수를 위한 공동연구, 컨설팅, 워크숍, 전문가 활동지원 등

대상국	주요 내용
베트남	건설분야 한국표준(KS)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계량법체계 구축
몽골	한국 건축시험인프라 및 인증체제구축 협력기반 조성
나이지리아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제도 및 인프라 구축지원
볼리비아	전략자원표준화, 시험인증제도, 계량법체계 등 인프라향상 지원
브라질	생활제품 안전관리제도 활성화 및 강제기술규제 대응
아프리카	아프리카표준화기구(ARSO)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표준 제·개정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미얀마 등과도 사전협의 추진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페루) : 190백만원

- 전기안전 시험인증원 건립지원을 위한 페루정부와 공동연구, 전문가 포럼 운영, 기술기준 제정, 법제화 지원 등 : 190백만원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기반구축·강화 : 150백만원

- 한국형 컨텐츠, 사례연구, 국가표준역량진단툴 등 과정개발·강화 : 120백만원
-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포럼 구성·운영 : 30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 개도국표준 체계 보급지원	900백만원	900백만원
▪기술표준초청 과정운영	(260백만원) 아프리카, 아세안 등으로 협력 대상지역 과정 운영(약 50여명)	(260백만원) 초청인원은 전년과 동일수로 진행하되, 전략국위주로 대상국집중 및 국제·지역 기구와 공동과정 개최 강화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300백만원) 6개 국가에 대한 맞춤형 방문 교육·컨설팅 추진	(300백만원) 표준체계보급 공동연구, 국가역량진 단컨설팅 등 6개 국가별 프로젝트 심층협력 강화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190백만원) 전기제품안전관리제도 전수를 위한 전문가과건 및 법제도 수립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190백만원)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을 위한 페루 정부와 공동 연구, 기술기준제정, 법제도 구축 컨설팅 추진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기반강화	(150백만원) 한국형 콘텐츠 개발, 전문가 포럼구성, 프로그램 기획, 정보 구축	(150백만원) 표준화 성공사례 연구 등 한국형 콘텐츠 심화개발, 국가표준역량진단 톨 보강, 전문가포럼 활성화, 정보체계 보강

□ 지원 필요성

-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국가의 기술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
 - * 인도네시아 및 인도가 철강인증, 에콰도르가 전기용품인증을 최근 도입
- 이에, 동 지역의 표준체계 부재로 인해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무역촉진 필요
- 단순히 개도국에 우리 경험을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기술 표준 법체계를 이식하여 기술규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국가적 협력 사업 (국정과제 129번 과제)

- 현재 추진 중인 「페루, 한국형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 구축」 사업의 경우, (한국정부) 기술규제와 FTA 사전·사후 대응 및 수출 활성화, 시험인증기관·기기업체 진출, (페루정부) 안전관리제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한국기업) 페루에 저품질제품 유입차단을 통해 자사 제품 판매 급증 및 新시장 개척 등의 기대효과 존재
- 국가필수 인프라인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은 신흥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실제로 개도국의 많은 교육 및 협력사업 요청이 쇄도
 - 또한, 동 사업은 개도국과 기술무역장벽(TBT)관련 대응시, 표준 협력사업을 협상의 촉진제로도 활용
 - * 인도네시아와 타이어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도입관련, 협상을 통해 시행시기를 연기시키고, 인증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관련 교육시행을 약속
- 동 사업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개도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국가적 기술외교 업무
 - 특히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1국 1투표권 제도'로 인해,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최대 우호국 확보가 관건
 - 이러한 개도국과의 표준체계 구축지원은 일회성 수익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임
- ODA 중점협력대상 개도국 26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40여개국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전개하여,
 -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화제도, 관련기술 및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
- 한국의 新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FTA, 자원외교, 신아세안 구상 등의 정책 이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FTA 체결 시 양국 간 TBT협정에 명시되는 기술규제제도 증진을 위한 협력사항, 자원외교 연계지원, 아세아협력 확대 실무이행에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890	900	900	-	-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300	260	260	-	-
▪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250	300	300	-	-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190	190	190	-	-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기반강화	150	150	150	-	-
☐ 비목(합계)	890	900	900	-	-
○ 민간이전(320-01)	890	900	9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형 체계 전수) 수출전략지역 주요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법, 제도, 기술기준, 장비, 인력 등)를 효율적으로 전수하여,
 - 동 국가의 표준체계 부재(空)이함으로 인해 시장진입(空)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FTA 대응 강화
 - 우리 시험인증기관 및 기기업체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 (親한국 네트워크 구축) 국제표준화 분야에 친한국형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空)대하여, 우방국을 확보하고 한국의 영향력 극대화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및 기술위원회 등 임원진출 확대 및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채택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300백만원 (6회×50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90백만원 ▪ 표준화체계보급지원 기반강화 : 150백만원
'14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300백만원 (6회×50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90백만원 ▪ 표준화체계보급지원 기반강화 : 150백만원
'1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400백만원 (7회×약57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90백만원 ▪ 표준화체계보급지원 기반강화 : 150백만원
'16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560백만원 (7회×80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200백만원 ▪ 표준화체계보급지원 기반강화 : 210백만원
'17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660백만원 (8회×약82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300백만원 ▪ 표준화체계보급지원 기반강화 : 21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 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사업 시작

* '00.11월 ASEAN+3 정상회담 시, VIP께서 ASEAN 국가에 대한 적합성평가 분야 교육훈련계획 발표

- 그러나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 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 해와 사업 확대 추진

- * 우리 기업들도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개도국의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10.12.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의 심의대상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에 따라 '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 추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임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2013년 국정과제 129번(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의 세부사업으로도 포함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개도국표준 체계보급지원	-	-	8.9	9.0	9.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UN은 UNIDO를 중심으로 시험, 인증, 계량측정, 표준화, 인가 등 5개 분야에서 필요한 TCB(Trade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ISO, ILAC, IAF, OIML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
- EU는 EuroeAid(유럽원조협력청)을 '01년에 발족,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인 독일, 스웨덴, 영국 등과 공동으로 표준, 적합성, 품질관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 장기 전문가파견, 집체교육, 현지워크샵 등
-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국제표준화 우군 확보 및 일본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해 표준 및 적합성평가분야 교육을 추진해왔고, 특히 '01년부터 '아세안 표준인증 협력프로그램'을 수립, 전폭적 예산투입으로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 추진
 - * METI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기구(JICA),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일본 무역기구(JETRO)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형태로 운영

- 미국은 USAid(국제개발처)를 통해 TCB 프로그램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혜국의 제도개선이나 향상보다는 WTO가입에서 요구되는 국제제도를 갖추도록 지원하여 자국의 수출입 자유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

* NIST, FDA, DOC 등의 부처에서 민관합동으로 수행

(5) 사업추진절차

-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전년 12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한국형 표준체계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 수출전략지역 한국표준체계 확산방안(5개년 계획) 수립(장관결재)

VISION

2016, 글로벌 표준인프라 선도국가로 변모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의 국제확산

* 기술표준인프라 : 법, 제도, 인력, 기술, 기관, 장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671	646	595	△51	△7.9

* 사업코드 : 21 - 11 - 00 - 110 - 114 - 3700 - 3740 - 301

* 담 당 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이상진), 기술규제협력과장(최철호, 02-509-7226),
사무관(김상용, 02-509-7229), 주무관(박성환, 02-509-72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 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정책업무 수행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구축) : 120백만원
 - 기술표준원 업무별 홈페이지 통합 및 기능개선 용역사업 : 120백만원
 -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신규	302.5	0.8398	1.0	1.1		21,128,504
설계	119,382	재개발						26,688,566
구현	159,177	재개발보정					0.8	35,584,978
시험	124,357	총점수	302.5					27,800,757
개발금액=개발원가×1.1(VAT) (백만원이하 절사)								120,000,000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운영/유지보수) : 135백만원

- 서버 및 시스템 S/W 설치 : 110백만원
 - 웹서버 및 시스템 S/W 등(110백만원)
 - ⇒ 유형1(운영/유지보수),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업무용 S/W 구매 : 25백만원
 -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15백만원), PC용 바이러스 백신(10백만원)
 - ⇒ 유형1(운영/유지보수), 유형2(운영/유지보수), 비목(일반수용비)

구분	품명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백만원)
전산장비	웹서버	4	27.5	110
	소계			110
업무용 S/W 구매	PC용 백신 (인터넷망, 업무망)	500	0.03	15.0
	서버용 백신	30	0.34	10.2
	소계			25
합계				135

○ 통합유지보수체계 운영 관리(운영/유지보수) : 250백만원

-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 250백만원
 - ⇒ 유형1(운영/유지보수), 유형2(운영/유지보수), 비목(시설장비유지비)

구분	품명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백만원)
통합유지보수	예비장비(서버)		5	10.88	54.42
	유지보수요원	고급	1	7.6	7.6
		중급	1	23.8	23.8
	인건비	초급	3	38.53	115.6
		제경비(인건비의 10%)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 10%)				16.2
	부가가치세(인건비+제경비+기술료의 10%)				17.8
	합계(백만원이하 절사)				250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교육장 설치(구축) : 90백만원

- 정보화교육장 설치 : 90백만원
 - 교육용 PC 등(75백만원), 교육용 S/W(15백만원)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구분	품명	수량	단가(백만원)	금액(백만원)
정보화교육장 설치	교육용 컴퓨터	38	1	38
	교육용 모니터	38	0.3	11.4
	교육장 책상(2인용)	18	0.55	9.9
	교육장 의자	38	0.17	6.46
	비디오 프로젝터	1	8.25	8.25
	영사용 스크린	1	1.18	1.18
	화이트보드	1	0.11	0.11
	교육용 S/W(한글)	38	0.16	6.08
	교육용 S/W(MS Office)	38	0.23	8.74
합계				90

□ 지원 필요성

- 국가·국제표준, 각 부처 기술기준·인증제도 등 다양한 기술표준 정보의 DB 구축 및 통합연계서비스 제공은 국가표준 대표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만 추진 가능
- 유사하거나 이용이 저조한 시스템 통합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기술표준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체계 재확립 필요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28개 시스템(14개 홈페이지, 14개 업무처리 시스템)의 부문별 통합·개편을 통한 비용적·업무지원적 가치 향상
 -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적사항 반영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내용년수 경과로 인한 장비 노후로 기술표준행정의 연속성 보장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구분	수량	내용년수 미경과	내용년수 경과
서버	26대	4대	22대
네트워크, UPS, 항온항습기 등	41대	5대	36대
합계	67대	9대	58대

- 전산장비 교체, 장애발생 위험 대비 유지보수 등 제반 경비 및 '14년 지방이전에 따른 정보화교육장 설치 등을 위한 예산지원 시급
 - '13년까지는 본부와 국표원이 인접하여 정보화교육 등 업무 연계가 원활하였으나, 지방이전 후에는 세종시(본부)와 충북혁신도시(국표원)로 분리되므로 정보화교육장을 자체 운영하여야 함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운영/유지보수)	671	646	595	△ 51	△ 7.9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구축)	340	-	120	120	순증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 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 (운영/유지보수)	-	261	135	△ 126	△ 48.3
▪ 통합유지보수체계 관리 및 운영 (운영/유지보수)	251	250	250	-	-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교육장 설치(구축)	80	135	90	△ 45	△ 33.3
☐ 비목(합계)	671	646	595	△ 51	△ 7.9
○ 일반수용비(210-01)	23	25	25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28	250	250	-	-
○ 연구개발비(260)	340	-	120	120	순증
○ 시설비(420-03)	-	40	-	△ 40	순감
○ 자산취득비(430-01)	80	331	200	△ 131	△ 39.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행정·정책업무 수행 및 대국민서비스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6.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1x261백만원) ▪ 통합유지보수체계 운영 관리(1x250백만원) ▪ 업무용 S/W 구매 및 전산교육장 등 설치(1x135백만원)
'14	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1x12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 (1x135백만원) ▪ 통합유지보수체계 운영 관리(1x25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교육장 설치(1x90백만원)
'15	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1x12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 (1x135백만원) ▪ 통합유지보수체계 운영 관리(1x25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1x90백만원)
'16	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1x12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 (1x135백만원) ▪ 통합유지보수체계 운영 관리(1x25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1x90백만원)
'17	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1x12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 (1x135백만원) ▪ 통합유지보수체계 운영 관리(1x25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1x9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3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11~2015)
- 산업표준화법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 무역상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8.11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정보화추진위원회)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4.5월 : '14년 부처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미래부)에 반영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 전용 : 신규 및 기 운영 중인 서버 보안을 위한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신규 구입,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백신 프로그램 구입 사유로 여비 8백만원을 동 사업의 운영비로 전용
-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8백만원

○ '11년

- 전용 : 신규 및 기 운영 중인 서버 보안을 위한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신규 구입,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백신 프로그램 구입 사유로 여비 5백만원을 동 사업의 운영비로 전용
-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백만원

○ '12년

-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백만원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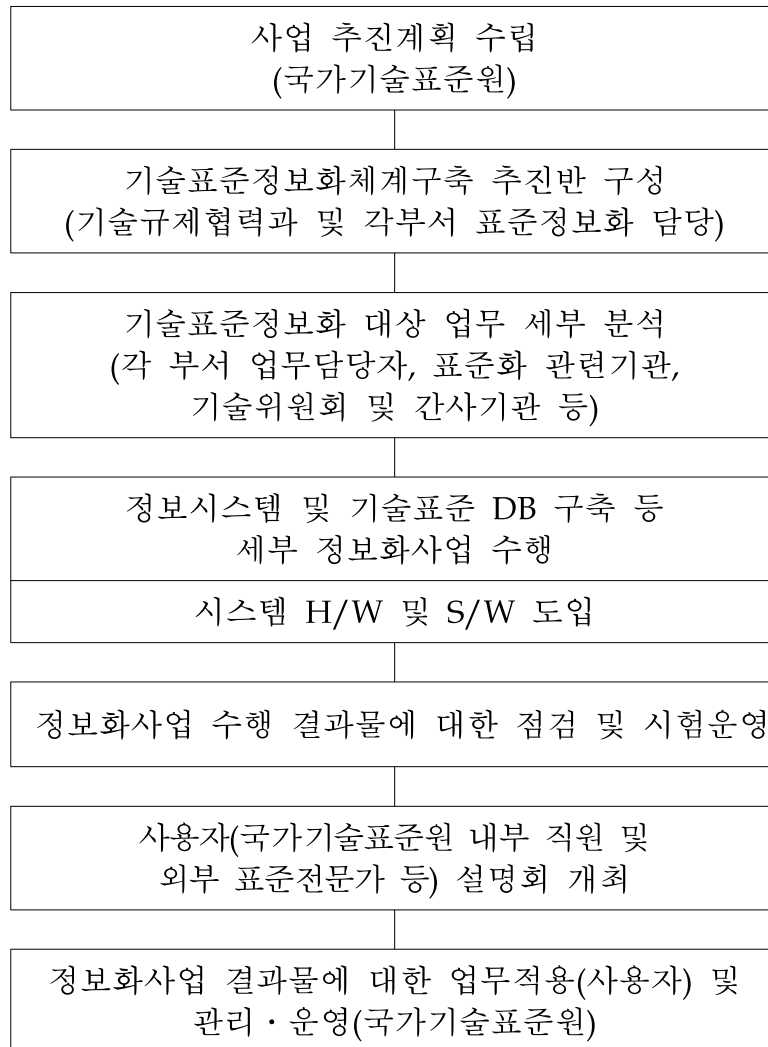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7.0 ()	()	()	17 ()	16.82 ()	()	0.18 ()
'11년	8.0 ()	()	()	8 ()	7.8 ()	()	0.2 ()
'12년	6.8 ()	()	()	6.8 ()	6.7 ()	()	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종합점수 69.2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현황

1. 홈페이지 현황

번호	시스템명	주요 업무기능	비고
1	메인 홈페이지 (www.kats.go.kr)	우리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기술자료 및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e-홍보관 등	
2	한국제품인증제도 (www.kats.go.kr/kas)	KAS 소개, KAS 인정기관 및 인정분야 정보 등	
3	신제품인증 (www.kats.go.kr/nep)	신제품인증 소개 및 인증·제품·업체 정보제공	
4	자원순환산업제품인증 (www.kats.go.kr/gr)	인증신청 진행현황, 인증절차, 관련법규 및 인증 업체·제품 소개	
5	법정계량단위 (www.kats.go.kr/unit)	법정계량단위 연혁 및 필요성, 활용사례, 비법정계량단위 피해사례 안내 등	
6	행사지원시스템 (www.kats.go.kr/event)	우리원 주관 행사 홍보를 위한 행사 홈페이지 자동 제작, 온라인 사전등록, 행사 결과자료 제공	
7	R&D·특허·표준정보포털 (www.kats.go.kr/korpas)	R&D·표준·특허 관련 정보 및 온톨로지 기반 검색서비스 제공 등	
8	국가통합인증마크 (www.kats.go.kr/kcmark)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배경, 기대효과, 도입절차 소개 및 대국민 홍보	
9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www.standard.go.kr)	KS, ISO/IEC, 정부기술기준, 인증제도 등 기술·표준·인증 정보서비스 및 전문가·유관기관, 표준화활동 등 표준정보 통합검색	
10	국가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 (www.standard.go.kr/metadata)	산업기술정보 메타데이터 소개,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메타데이터 포럼 운영 등	
11	KOLAS 사이버교육 (www.kolas.go.kr/edu)	KOLAS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측정자, 내부감사자 등 KOLAS 운영인력 온라인 교육	
12	사이즈코리아 (sizekorea.kats.go.kr)	인체치수자료 및 표준인체 측정법 소개	
13	TBT 종합정보허브 (www.knowtbt.kr)	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문, 국내·외 기술규제정보 제공	
14	한중표준정보포털 (korea.standards-portal.kr)	KATS 소개, 기술표준 뉴스, KS 및 안전기준 검색 등을 영어·중국어 서비스	

2. 업무처리시스템 현황

번호	시스템명	주요 업무기능	비고
1	국가·국제표준 통합관리시스템(내부)	KS의 제정·개정·확인·폐지를 위한 신청서 작성에서 고시까지 KS업무全过程를 온라인으로 처리 및 ISO/IEC 국제문서 관리	
2	국가·국제표준 통합관리시스템(외부)	ISO/IEC 국제문서 검토 및 투표, 외부 표준전문가와 내부 직원 간 지식공유 등	
3	COSD 활동지원 및 관리시스템	기술표준원과 COSD, COSD 간의 정보 공유 및 COSD 표준화활동 관리 등	
4	기술기준통합관리시스템	각 정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23천여종의 기술기준 등록, 수정, 삭제	
5	업무포털시스템(KMS)	주요 업무 관련 지식공유, 업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링크 및 내부 게시판 등	
6	e-KOLAS	인정, 평가, 사후관리 등 KOLAS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7	KS 인증심사원 관리시스템	KS(제품·서비스) 인증심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증심사원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8	표준화활동통계정보시스템	KS 제·개정 현황, 국제회의 개최·참가 현황 등 실시간 통계정보 및 유관기관·전문가 통합관리	
9	정책홍보도우미	정책고객들에게 국내외 표준동향, KS 고시정보 등 정책정보를 e-mail을 통해 일괄 발송	
10	표준전문가 정보공유시스템	해외 인적 네트워크 공유 및 출장보고서 관리, 국제표준화활동 콘텐츠 다운로드 등	
11	웹통합 관리도구	공지사항, 보도자료, 전자민원, 자료실 등 홈페이지 공통 게시판 관리	
12	전자도서관시스템	전자도서의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조회 및 링크 사이트 정보 등	
13	콜센터관리시스템	콜센터 관리, 콜 상담 및 일반민원 처리실적 관리	
14	표준화과제관리시스템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경상연구, 학술연구용역사업, 표준 기술력향상사업 통합관리	

참고 2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사용년수 현황

장비유형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수량	사용년수 (‘14년)	비고
컴퓨터서버	Compaq,proliant ML570	2002-03-29	1	12	교체
	컴팩코리아, 프로라이언트 서버 DL580, Pentium3 제온 700MHz, 제온 900MHz	2002-07-30	1	12	
	LG IBM, xSeries235 86714AX, Intel Xeon 2.4GHz	2002-12-13	1	12	
	Dynamic analysis workstation(hp x4000,2.4GHZ)	2002-12-16	1	12	
	LG IBM, xSeries235 86714AX, Intel Xeon 2.4GHz	2002-12-27	1	12	
	한국HP, HP Proliant ML350 G3	2003-06-12	1	11	
	Intel Pentium III 1.26GHz 512KB, windows2000 server 5 client1셋,oracle,MS-SQL2000 hot back up s/w	2003-06-12	1	11	
	한국HP, HP Proliant ML350 G3	2003-06-25	1	11	
	(주)아이엔아이테크놀로지, 주전산기(linux서버), 2.4g*2개, RAM4G, 15인치 LCD	2003-12-22	1	11	
	(주)아이엔아이테크놀로지, 주전산기(NT서버), CPU2.8*2개, RAM6G	2003-12-22	1	11	
	한국HP, xw6000	2004-03-12	1	10	
	한시스템, Windows 2000 서버, Xeon 3.0GHz dual	2005-06-29	1	9	
	LG IBM, Xseries 235 Server, Xeon DP 3.0GHz	2006-03-30	1	8	
	소형컴퓨터, 백업서버, Xeon 2.8Ghz, 2G ECC Memory, 200G SCSI, 6Tera S-ATA, Raid 5 System, Hotswap	2007-12-24	1	7	
	소형컴퓨터, DB서버, Xeon 3GHz, 4MB통합 L3캐시, 4G B ECC Memory, 1Tera SAS HDD, Array Type, Raid 5 System, Windows 2003 Server	2007-12-24	1	7	
	소형컴퓨터,DB서버,XeonDualcore3.0GHz,4MB통합L3800MHz,4GBECCMemory,1.2TBHDD,ULTRASCSI 320, Raid 5 System, Hotswap, Windows 2003 Server, MS SQL 20 05 Server	2007-12-24	1	7	
	소형컴퓨터, Xeon 2.8Ghz, 2G ECC Memory, 200G SCSI I, 6Tera S-ATA, Raid 5 System, Hotswap, 백업서버	2007-12-24	1	7	
	소형컴퓨터, Xeon DualCore 3.0GHz, 4MB 통합L3 800 MHz Memory, 2.3Tera S-ATA HDD, Array Type, Raid 5 System, Hotswap	2007-12-24	1	7	
	터미널서버, 쿼드코어 2.1 X 2, 4MB 캐쉬, 8G Memory, 1Tera SAS HDD(146*8), Rain 5 System	2008-10-15	1	6	
	터미널서버, HP, US/DL580G5, Intel Xeon E7340 Quad-Core(2.4GHz)*4	2008-11-25	1	6	
	터미널서버,CPU : Intel Xeon Quad Core E7320(2.13GHz)*2, RAM	2008-11-27	1	6	
	터미널서버,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2009-12-23	1	5	
내용년수 미경과	터미널서버, 한국HP, US/DL380G5, Xeon QuadCore 2.6 6GHz	2010-04-27	1	4	
	터미널서버,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2010-06-08	1	4	
	터미널서버,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2010-09-30	1	4	
	sizekorea웹서버	2010-11-24	1	4	
냉방기	(주)센추리, PA-A180GG2, 냉방21,000W	2004-08-17	1	10	교체
	센추리, PA-A62GK2, 18평형, 스탠드형	2004-10-14	1	10	
무정전 전원장치	3KVA,220V,정전보상30분	2000-08-10	1	14	교체
	3KVA,220V,정전보상30분	2000-08-10	1	14	

장비유형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수량	사용년수 (‘14년)	비고
	3KVA,220V,정전보상30분	2000-08-10	1	14	
	3KVA,220V,정전보상30분	2000-08-10	1	14	
	5KVA 배터리내장	2000-08-10	1	14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3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3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3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3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3	
	무정전전원장치, 1φ 30kVA 30분	2008-12-02	1	6	
네트워크 라우터	부품, 5C-5000-1104, Alcatel OmniCore 5022 장착용	2001-09-17	1	13	교체
	부품, 5C-5000-1104, Alcatel OmniCore 5022 장착용	2003-06-24	1	11	
	스콕정보통신, IPScan Probe 100, Ethernet 1port	2004-11-15	1	10	
	네트워크 회선 이중화 및 관리시스템	2006-08-17	1	8	내용년수 미경과
네트워크서비스 집중장치또는 허브	5022BASE UNIT CHASSIS(7SLOT)	2000-08-17	1	14	교체
	9SLOT CHASSIS/OMNIS/R-5	2000-08-17	1	14	
	9SLOT CHASSIS/OMNIS/R-5	2000-08-17	1	14	
	9slot chassis/OMNIS/R-9	2000-08-17	1	14	
	9slot chassis/OMNIS/R-9	2000-08-17	1	14	
	Enterasys Networks, VH-2402S, 24Port(아이엔아이테크놀로지, OMNISTACK 6124 BASE SWITCHING UNIT)	2003-12-30	1	11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8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8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8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8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8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8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LS-6248, 52port	2008-12-22	1	6	내용년수 미경과
네트워크 스위치	전산망보강위한 네트워크장비	2006-09-28	1	8	교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	제아정보통신, JEA-IC/N1, 휴대전화망인터페이스	2001-12-06	1	13	
다중통신장비	스위칭 허브, 네트웍용, 24Port	2001-12-19	1	13	
	스위칭 허브, 네트웍용, 24Port	2001-12-19	1	13	
방화벽장치	방화벽장치, 펜타시큐리티시스템, Wapples-100	2006-09-28	1	8	내용년수 미경과
	방화벽장치, 어울립정보기술, SECUREWORKS 1000 V4.0	2008-12-07	1	6	
	방화벽장치, 나우콤, SNIPER IPS V5.0(E2000), 침입방지시스템	2008-12-17	1	6	
통신서버 소프트웨어	인프라닉스, SysMaster Network Manager Site License, 전산망 통합관리 솔루션	2002-12-27	1	12	교체
하드디스크 어레이	아이엔아이테크놀로지, QuRAID FX2i, 73x6GB	2004-09-13	1	10	
SAN스위치	Qlogic, US/SANbox 5200, SAN Switch, 2Gbps 16port	2004-11-22	1	10	

1. 목별 산출내역

(백만원)

구 분	'14예산	산 출 내 역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 체계구축(운영/유지보수)	595	
○ 일반수용비(210-0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운영/유지보수) -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업무용 S/W 구매(1x2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유지보수체계 운영 관리(운영/유지보수) -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1x250백만원)
○ 연구개발비(260)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구축)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별 홈페이지 통합 및 기능개선 용역사업 추진(1x12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운영/유지보수) - 서버 및 시스템 S/W 설치(1x11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교육장 설치(구축) - 정보화교육장 교육용 PC 등 설치(1x90백만원)

참고 4

사업추진 주요 성과

1. '11~'1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1	'12	'13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건수(건)	목표	4	3	-	관련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12년도 목표 설정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건수	용역결과 산출물
	실적	5	3	-			
	달성도	125.0	100.0	-			
공인시험기관 평가에 대한 만족도(%)	목표	65	70	74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12년도 목표 설정	KOLAS시스템 (www.kolas.go.kr)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공인시험 기관 평가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물
	실적	81.5	82.1	-			
	달성도	125.4	117.3	-			
KS무료열람수(건)	목표	130만	160만	148만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12년도 목표 설정	국가표준종합 정보센터를 통한 KS무료열람수	국가표준종합 정보센터
	실적	141만	161만	-			
	달성도	108.5	100.6	-			

2.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년도	사업추진 실적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국제표준 통합제정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국제표준 통합제정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및 국제문서투표(e-Vote) 시스템 통합 ○ 정부기술기준 정보제공 모듈 개발(e-KOLAS, PCRM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KOLAS(KOLAS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기능 구축 및 시험성적서 신뢰성 강화 ▪ 기술표준원 정책홍보도우미(PCRM)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 메일 발송을 위한 시스템 기능 ○ 연구·표준·특허 연계 선순환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표준·특허 연계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표준·특허정보 포털사이트 기능 ▪ 표준부합화 웹기반 설계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부합화 웹기반 설계시스템 시범 구축 ○ 기술표준원 주요 홈페이지 기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별 홈페이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등 기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별 5개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강화 ▪ 표준정보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관리·서비스용 통합 DB 기능 ○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서버 및 PC) 통합유지보수 ○ 표준서 뷰어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DT를 이용한 KS표준 입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서 서식에 따른 KS표준 원문 기능 ▪ 표준전문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회의자료 공유 및 정보화사업 감리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국제표준통합제정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국제표준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타당성평가 등 업무처리 기능 ○ 기술표준 정보제공 모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KOLAS(KOLAS 업무처리시스템) 스마트화 기능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업무처리 및 통계분석 기능 ○ 기술표준원 주요 홈페이지 기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공유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망·인터넷 간 자료교환체계 구축 ○ 통합유지보수체계 관리 및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서버 및 PC) 통합유지보수 ○ KS 무료열람 서비스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원 e-Book 열람서비스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비트 지원 등 e-Book 열람 기능 ○ 기술표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서비스시스템 기능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서비스시스템 전반의 기능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원 통계정보 관리 및 COSD 활동지원·관리 기능 ▪ KS 인증심사원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제품·서비스) 인증심사원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편 등 기능 ▪ NEP 인증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구매정보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P인증제품 구매정보 제공 기능 ○ 통합유지보수체계 관리 및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 ○ 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개인정보 암호화 S/W 구매
--	--

3. 향후 기대효과

- (1) R&D · 표준 · 특허 연계로 산업원천 기술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 (2) 국제표준(ISO/IEC) 문서관리 · 검토의 효율성 증진 및 국가표준의 국제화 촉진
- (3) 기술기준과 KS, 국제표준 통합관리체계구축으로 중복투자 방지
- (4) 기술 · 표준 · 인증정보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관련정보 획득비용 절감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36,047	42,620	47,571	4,951	11.6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5 - 301

* 담 당 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국제표준과장(정기원, 02-509-7399), 연구관(김동원, 02-509-7400)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정부출연(일부 내역사업은 25%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분석기관 등

2.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국가·국제) **개발 및 인프라**(시험인증 등)를 **확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품질 기반 조성**

- 기술선도 및 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추진, 표준화 기반구축 등을 통해 수출 시장 선점 견인
-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평가기준 개발 등 기반조성을 통한 안전한 제품의 개발 보급과 국민의 생활 안전 확보

- 글로벌 협업, 국제적인 안전 규제 강화 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新품질 경영기법 개발·보급 및 글로벌 품질경영 기반조성
- 산업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성장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 연구, 국책과제 (국가R&D, 실증사업 등) 표준화 조율·지원 등을 통한 국가표준 경쟁력 강화
- IT·SW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 조작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표준 조기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 및 국내 계량·측정산업의 선진화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융·복합 분야, 수출전략 산업 등의 국가국제 표준 개발, 표준화 기반조성 등을 위한 표준화 R&D 지원
(‘13년 대비 1,920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13년 : 20,700백만원 → ‘14년 : 22,620백만원)
 - 신규과제 지원 : (‘13년) 7,430백만원 → (‘14년) 7,550백만원
 - * 미래 新성장 분야 등 약 60개 과제 지원(중소·중견기업에 30% 이상 지원)
 - 계속과제 지원 : (‘13년) 13,270백만원 → (‘14년) 15,070백만원
 - * 녹색 및 수출전략 산업 등의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102개 과제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첨단시험장비구축개발, 해외 시장진출지원 등을 위한 사업(‘13년 대비 1,186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13년 : 9,670백만원 → ‘14년 : 10,856백만원)
 - 국제시험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시험장비 구축 등 :
(‘13년) 9,320백만원 → (‘14년) 9,856백만원
 - * 첨단 융합소재 평가기술 및 분석기반 구축 등 7개 기반구축 분야 17종의 첨단 시험장비 구축 지원

- 국산화 개발 수요분야 평가장비 개발·활용 :
(‘13년) 250백만원 → (‘14년) 800백만원
-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지원 :
(‘13년) 100백만원 → (‘14년) 200백만원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13년 대비 동일)

- 산출내역(‘13년 : 3,945백만원 → ‘14년 : 3,945백만원)
 -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 3,200백만원
 - * 단기연구로 제품 안전성 향상 과제 : 15과제×160백만원 = 2,400백만원
 - * 기술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향상 과제 : 4과제×200백만원 = 800백만원
 - 시험·검사 방법 개발 등 기반조성과제 지원 : 745백만원
 - * 신제품 및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기준 개발 등 : 5과제×149백만원=745백만원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브랜드 파워를 가진 명품 창출 유도·확산 및 국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기반과제 도출 (‘13년 대비 805백만원 감액)

- 산출내역(‘13년 : 2,805백만원 → ‘14년 : 2,000백만원)
 - 품질경영촉진 : 600백만원(3개 과제 × 200백만원)
 -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 기반강화 : 1,400백만원(28개 기업 × 50백만원)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13년 대비 400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13년 : 2,000백만원 → ‘14년 : 2,400백만원)
 - 국가참조표준 15개 데이터 개발 : 1,470백만원
 - * 15개 DB 개발 × 98백만원 = 1,470백만원
 - 국가참조표준 5개 DB 패키지 개발 : 300백만원
 - * 5개 DB 패키지 개발 × 60백만원 = 300백만원
 - 참조표준 DB 시스템 구축 : 630백만원
 - * 23개 참조표준생산기관 시스템 구축 × 27.4백만원 = 630백만원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미래성장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별 국책과제 (국가R&D, 실증사업 등) 표준화 조율·지원 및 국내 기업 표준화 자문 등을 통해 국책과제의 효율성·산업화율 제고 및 우리 제품의 세계화 지원 ('13년 대비 300백만원 감액)

○ 산출내역('13년 : 3,500백만원 → '14년 : 3,200백만원)

- 표준기반 R&D 기획(표준프레임워크 및 중장기 표준화 로드맵 개발) : 840백만원
* 120백만원 × 7개 분야 = 840백만원
- 국책과제 표준화 조율 및 표준과제 발굴을 위한 분야별 현황조사 : 336백만원
* 4백만원 × 7개 분야 × 12개월 = 336백만원
- 국내기업 기술□표준 자문 및 국제표준화 지원 : 431백만원
* 20.5백만원 × 7개 분야 × 3회 = 431백만원
- 연구 결과물의 활용 확산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기술□표준 세미나 등 개최 : 203백만원
* 29백만원 × 7개 분야 × 1회 = 203백만원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지정□운영 : 1,390백만원
* 110백만원 × 7명 + (50백만원 + 35백만원) × 7명 + 25백만원 × 1명 = 1,390백만원

⑦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산출내역 : 1,450백만원(신규)

- 계량·측정기기 SW불법조작방지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 : 300백만원
* 3과제 × 100백만원 = 300백만원
- IT융합 계량·측정 기술개발 : 350백만원
* 2과제 × 175백만원 = 350백만원
- 계량·측정기기 검·교정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기술개발 : 500백만원
* 5과제 × 100백만원 = 500백만원
- 취약 기술 분야 조사, 개발기술 전파 및 기술기준 개발 : 300백만원
* 4과제 × 75백만원 = 300백만원

⑧ 기획평가관리비 : 1,1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미래 산업, 기존 주력산업, 기술선도 산업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업계의 수요증대에 따라 국가국제 표준 개발, 국제표준화 추진 및 이행확산 등 지원 확대 필요
- * 국제표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22건('11년) → 331건('12년) → 430건('13년)으로 연평균 200% 이상 증가
- 중소중견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 '14년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 30% 이상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활성화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국내기관의 국제규격 시험능력이 70% 수준으로 저조('12년)하고 다국적 기관이 국내시장의 약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방어 필요
- * 특히 해양구조물 등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은 90%이상 외국에 의존
- 시험인증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형 서비스산업으로 FTA확대 시 비관세분야 대표 규제인 TBT관련 진입·진출을 위한 장치 마련 필요
- * 세계 1위 시험인증기업인 SGS(스)는 매출액 5.9조원, 인력 6.7만명으로 국내 7대 시험인증기관 전체 대비 약 20배 이상 규모
- *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시험장비 미 구축 시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외국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시험부담(비용/기간), 신기술 유출 등 국부 누출 사례도 발생

“경제정책조정회의('07년 3차, 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10년, 28차) 의결사항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FTA시대 국가R&D 전략”(‘12.3) 관련 사업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 등)은 인증 등 규제를 통한 제품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제품사고·위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
- * 공 산 품 : ('10) 12,890건 → ('11) 16,269건 → ('12) 20,800건
- * 전기용품 : ('10) 2,905건 → ('11) 2,950건 → ('12) 4,140건
- 안전취약제품 원인 해소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 제품 안전 기술력 향상과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

○ 품질혁신기반구축

- 글로벌 경영환경(글로벌 협업, 사회적 책임, 보건안전환경규제, 품질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및 대형리콜, 소비자 니즈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품질지원정책 필요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품질경영 수준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품질경영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품질경영 우수기법을 보급함으로써 산업계 품질경영 수준의 상향 평준화 추진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정부 3.0'이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생산된 산업·기술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중요
 - * 연간 100억원 투입 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723.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96.6억원, 고용창출효과 1,683.7명의 산업파급효과 발생(참조표준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보고서, (주)날리지웍스, 2009)
 - * 중복실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10년 기준)
- “참조표준”은 산업·기술 데이터의 정확도·신뢰도 평가를 통해 관련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공인된 데이터로써, 산업현장에서 기술개발·공정개선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를 융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 기대
 - * 참조표준 : 반도체용 가스물성, 원자력 등 첨단 기술데이터, 한국인 경동맥 두께 등
- (활용) 기업에서 장비·공정 설계 등에 적용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성향상 가능, 보건의료 진단기준 등에 활용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 * 한국전력연구원은 내열금속의 역학물성을 노후 화력발전소의 내구수명 예측에 활용
- (사업화) 참조표준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공하거나, 제품·서비스와의 융합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화 가능
 - * 경원테크(주)는 가스물성 참조표준으로 반도체공정용 시뮬레이터 개발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생태계 창조형 R&D 견인) 융·복합 촉진에 따른 미래유망산업은 상호운용성(표준)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확산 및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화 가능
 - * 각 국 정부 및 기업은 국제표준화가 적용된 시스템 및 제품의 구입을 희망

- (R&D 효율성 제고) 국가표준코디네이터(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제적 표준기반 R&D를 기획하고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
- *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12.8, 총리 주관 12개 부처 합동)에서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역할 명시
- (추진 분야 확대) 산업원천 14대 전략분야 등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R&D를 추진할 분야는 150여개로 이중 우선 20여개의 분야에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 미래성장산업으로 예측되는 분야 중 현재 7개 분야를 선정·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진 분야를 최소 10개 이상으로 확대가 요구됨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소비자 권익보호) 최근 고유가 및 난방비 증가로 불법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조작 방지 등 신뢰할 수 있는 계량·측정기기에 대한 국민 요구 증가
- IT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기의 조작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기반마련이 필요
- * 경기 D아파트 1,400여 세대 중 100여 세대가 3년간 난방요금 미부과로 주민간 갈등 발생('11년 국감 지적사항) 등 다수
- * “계량기 불법조작('11.4.8 연합뉴스)”, “계량기 기술기준 미흡…조작 대책 없어(매일경제TV)” 등 다수
- (무역수지 개선) FTA등 글로벌 경제체제 심화로 무역적자폭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요구
- * 국내 계량·측정기기 무역규모는 126억달러(약 13조원, '11년 기준)로 이중 수입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적자는 48억달러(약 5조원)로 매년 증가 추세
- (중소기업 육성) 계량·측정산업은 기술집약적인 분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기술적 창업효과가 큰 반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5년 정도 뒤쳐져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이 시급
- * 국내 계량·측정기기 산업규모는 제조업 총매출액(1,464조원)의 0.69%, 총 고용인력의 1.3%를 차지하나,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87%를 차지
- IT 융·복합화로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계량·측정기기의 선도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 지원 필요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IT를 융합한 계량기의 기술기준 개발이 활발함에 따라, 선도적 대응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시장 기술선점 필요
- * 스마트그리드 검침기의 경우 한전에서 '30년까지 매년 약 100만대씩 보급 예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36,047	42,620	47,571	4,951	11.6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2,513	20,700	22,620	1,920	9.3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사업	7,534	9,670	10,856	1,186	12.3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3,100	3,945	3,945	-	-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1,900	2,805	2,000	△805	△28.7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보급	1,000	2,000	2,400	400	20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3,500	3,200	△300	△8.6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1,450	1,450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	-	1,100	1,100	순증
☐ 비목(합계)	36,047	42,620	47,571	4,951	11.6
○출연금(350)	36,047	42,620	47,571	4,951	11.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미래성장동력, 융복합 산업 등 우리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표준기반조성 및 중소중견 기업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유망신산업 분야는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주력 산업은 국가표준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표준개발 확대 지원

- 국제공인 인정기관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시험장비 구축 및 시험분석 방법의 원천기술개발 등 시험인증역량 확보로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극복하고 수출기업을 지원
 - * WTO 이후 TBT장벽은 도리어 강화추세('95년 365건 → '11년 1,217건)
- 국민 생활수준 및 소득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안전이 취약한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은 부진함에 따라, 국민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개발(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제품안전 기술력 향상과 국민 생활안전 확보
- 브랜드 파워를 가진 명품창출 유도·확산하고 국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기반과제 도출
- 미래성장동력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참조표준데이터 센터 구축
- 법정계량기 평가기술 및 측정기술 개발 보급을 통한 계량산업육성 지원 및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07.0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96.7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39.5 ▪ 품질혁신기반구축 : 28.0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0.0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35.0
'14	4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26.2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08.5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39.5 ▪ 품질혁신기반구축 : 20.0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4.0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32.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14.5 ▪ 기획평가관리비 : 11.0
'15	4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07.0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96.7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39.5 ▪ 품질혁신기반구축 : 28.0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0.0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35.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0('14년 신규 사업으로 중기재정 미반영)
'16	4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07.0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96.7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39.5 ▪ 품질혁신기반구축 : 28.0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0.0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35.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0('14년 신규 사업으로 중기재정 미반영)
'17	4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07.0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96.7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39.5 ▪ 품질혁신기반구축 : 28.0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0.0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35.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0('14년 신규 사업으로 중기재정 미반영)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및 동법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2월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 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 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8.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6월 :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205	185	225	207	226.2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 「MRA사업」 1차년도 추진(49억원)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10.9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75.22	90.0	75.34	96.7	108.5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추진경위

- '03.5월 : 대통령 「어린이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6월 :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 '06.9월 : 불량타이어 시중유통 국민생명 위협 언론보도
- '06.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작성
- '07.3월 : 전면 개편된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시행
- '07.12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1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의원입법 추진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09.4월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비지원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사업	38	35	31	39.45	39.45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 지원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04.7월 : 품질경영 실태조사 실시(18개 부문 181개 항목)
- '05.3월 : 품질경영 기본계획 수립
- '06년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정부예산(일반회계) 15억원) 신설
- '08.2월 : '기술이전사업화촉진(R&D)'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직제개정)
- '08.10월 : '10년부터 '기술이전사업화촉진(R&D)'에서 분리
- '10년 : '기술이전사업화촉진'에서 분리하여 신규 예산 확보
- '10.6월 :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품질혁신기반 구축사업	20	20	19	28.05	20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 참조표준의 제정·보급을 위한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데이터센터지정, 참조데이터 평가 및 참조표준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06.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표준과학연구원內)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06~'10년 : 연구소, 대학, 시험기관 등 21개 데이터센터 지정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신규사업
- '12년 : 24개 데이터센터 지정 21개 데이터센터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	5	10	20	24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 관리),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추진경위

- '10.4월 : “국책과제 표준 코디네이터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0.12월 : 국가표준심의회 “선진인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수립”
- '11년 : 40억원(기술료)으로 시범 사업 실시
- '12년 : 25억원(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으로 2차년도 사업 실시
- '13년 : 35억원(R&D)으로 3차년도 사업 실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	-	-	35	32

⑦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지원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9조(형식승인 사후관리), 제34조(보고 및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 * 계량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원 가능

○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
- '13.8월 : 계량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추진
- 국정과제 1-7(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과 부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	-	-	-	14.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338 ()	- ()	- ()	- ()	338 ()	()	()
'11년	335 ()	- ()	()	- ()	335 ()	()	()
'12년	360 ()	()	()	()	360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미국

- '00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 '03년 상무부, 8개 항의 표준화 전략(Standard Initiative) 발표
- '08년 융합기술 연구개발(나노, 생명과학 재료, 기술 등)에 14.5억달러 투자

○ 일본

- '01년 표준화 활동의 성과보급을 위해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발족
- '03년 “신시대 표준, 인증제도 보고서”를 통해 표준화전략 등을 추진
- '07년 경제성장전략 대강 중 국제표준화 전략 목표 수립 및 추진
- '08년 5월 발표한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에 따라 21개 탄소저감 기술을 선정 및 로드맵 작성·추진

○ EU

- '03년 EU 표준화기구의 2010 Vision(단일표준을 통한 무역촉진) 추진키로 하고 EU 각료이사회를 통해 표준화활동 지원 결의
- '06~'09년 기술융합개발 프로젝트 “Knowledge NBIC Project” 추진
- '07~'13년 범유럽 차원에서 추진하는 FP7에서 융합기술 개발을 확대 및 학제간 연구개발 추진 강화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산업인프라 구축 및 정부 시험업무 위임 시 정부 예산지원

- 미국의 경우,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를 제정하여, 민간시험기관에게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및 시험분석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

○ 또한,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ndards Laboratory)라는 거대 조직을 구축하여 시험분석 전문인력양성 강화

- 적합성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을 9개 이상 설립하여 전문교육 실시

○ 글로벌

- 글로벌 시장교류 확대 및 각국의 시험·인증규제 증가로 세계 시험 인증시장이 최근 5년간 급성장 추세('07년 76조원 -> '11년 132조원)로 국내시장방어 및 글로벌 시장 참여필요

* 주요국 시험인증산업 GDP내 비중 : 독일(0.52%), 프랑스(0.32%), 한국(0.19%)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국내·외에서도 정부주도로 제품안전에 필요한 정부자금을 지원 하도록 법제화

- (국내)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할 수 있도록 규정(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 (국외) 제조업 단체의 제품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美 소비자제품안전법 섹션 5)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 국제기구(ISO)

- ISO는 '90년대 ISO9000(품질보증), '96년에 ISO14000(환경인증)을 제정·적용, '10년에 ISO26000(기업의 사회적책임) 적용

* 품질+환경+사회적책임경영을 테마로 하는 경영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 미국

- '03년 이후, 하나의 통합된 접근법*으로 고객만족, 비용절감 및 성장 추구

* MBNQA(국가품질상) 모델, ISO9000 및 6-Sigma 3개 요소 통합

- 대다수 기업이 품질개선·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6-Sigma 등의 혁신활동 추진

○ 일본

- '90년대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품질과신, 생산원가 삭감, 교육훈련 부족 등으로 품질위기(잃어버린 10년)를 자초

- '04년, 과학기술연맹(JUSE)을 중심으로 품질강국의 명성 회복을 위해
“Quality Japan Again!”을 모토로 품질혁신운동 부활 시도
- *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통해 품질개선 노하우를 공유

○ EU

- 유럽품질기구(EQO),유럽품질경영재단(EFQM)을 중심으로 품질경영 확산
- * 33개 유럽국가의 품질단체 후원, 대·중소기업·대학 등 700개 조직 가입
- * 국제품질표준인 ISO 9000시리즈를 기업경쟁력 및 고객만족도 제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중소기업에서의 철저한 준수와 실천 강조

○ 민간사례

- (삼성) 품질 위기 환경에 따라 ‘절대품질’ 경영 강화
- * ‘절대품질’ 확보대상 : 휴대전화 배터리의 폭발가능성, 전자파, 유해물질 함유여부
- (현대차) 안전 및 품질 최우선 경영 강화
- * 연구개발본부, 구매본부 및 협력업체의 품질중요성 강화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미국

- '68년 ‘참조표준법(Standard Reference Act)’제정
- 미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참조표준사업 주도
- 7개 연구부서의 측정과학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참조표준 개발
- 23개 분야 135개 참조표준 DB 개발 및 보급
- NIST에서 개발한 참조표준은 약 1,800개 기관에서 활용, 개인 컴퓨터용
제품(PC Product)은 매년 약 6,000개가 판매되고 있음.
- NIST와 미항공우주국(NASA)이 공동개발한 물질의 분광학 데이터는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분야에 널리 활용(연간 약 40억원 판매)

○ 일본

- '76년 통산산업성이 참조데이터 사업 본격 추진
-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산하의 61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DB(RIO-DB) 구축 및 보급

- AIST 산하 첨단정보계산센터(TACC)에서 연구개발 DB 구축 및 운영
- 생명과학, IT, 나노/재료, 환경/에너지, 지구과학, 측정표준 등의 분야에서 94개 DB 개발 및 보급

○ 독일

- '74년 '참조표준진흥사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 연방재료시험연구원(BAM), 연방물리기술청(PTB)를 중심으로 화학, 재료, 표준물질 등 5개 DB 구축 및 운영
- 민간차원의 데이터 개발 및 보급
- 화공생명기술학회(DECHEMA)는 순수성분 및 혼합물 열역학물성에 관한 세계 최고의 DB인 DETHERM(Thermophysical Property DB) 개발 및 유료 판매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미국

- '90년 NIST(미국립표준기술원)의 주도로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고려하는 첨단기술계획보조금 프로그램(ATP)을 시행
- * ATP : Advanced Technology Program
- '10년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표준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가 표준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R&D 연계 표준개발을 통합 조정
- 국립과학재단(NSF),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등 R&D 전문기관들은 효율적 국가 예산운영을 위해 PD(Program Director) 제도를 도입·시행

○ EU

- (EU) '85년부터 에너지, 나노 등 7대 산업분야의 표준화 연계 기술 개발을 위하여 범유럽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인 'EUREKA' 도입
- * EUREKA를 통해 공동개발된 기술은 자체가 유럽표준으로 정립(예: GSM 통신기술)
- (독일) 독일연구협회(DFG)는 R&D의 효율화를 위하여 PD 제도를 도입하여 R&D 기획제 운영

○ 일본

- '00년 '국가산업기술전략'을 수립하여 기술의 활용·보급을 위해, R&D 추진시 표준화와의 연계성, 추진목표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 일본학술진흥회는 R&D의 효율화를 위하여 PD 제도를 도입하여 R&D 기획제 운영

○ 한국

- '03년 정통부는 IT R&D의 성공률 및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민간 기술전문가가 기획·관리하는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
- '09년 한국은 유럽시장을 고려한 R&D-표준 연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EUREKA'에 준회원국(지정부)으로 가입
- '09년 지정부는 미래선도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후 상용화 단계까지 책임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인 MD(Managing Director)·PD 제도 도입
- '09년 문화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위한 5단계 기술혁신 체계 (과제기획-선정-수행관리-평가-활용) 수행을 위해 문화기술PD 제도 도입

⑦ 계량·측정 기술고도화

○ (실태조사) 독일, 네덜란드 및 일본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계량·측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도개선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등의 복합 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 기반산업으로 인식
- 단순하고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모든 산업 현장에 필수적 기기로 인식
- 산업의 고도화에 맞춰 자동화와 연계된 계측시스템으로 전환
- *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실태조사 사례 없음

○ (기업특성) 국제적 계량·측정 기업은 계측기기가 기술집약적, 소품종이 주류를 이루는 특성으로 다국적 기업이 전시장의 65%를 차지

- 국내 계량·측정기는 제품별 3,000억원 이하의 시장구조로서 대기업의 참여 없이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다국적기업 : Agilent Technology(미국), Fluke Cooperation(미국), Rohde & Schwarz(독일)
- * 국내 측정기 기업은 중소기업(87%) 및 중견기업(13%)으로 대기업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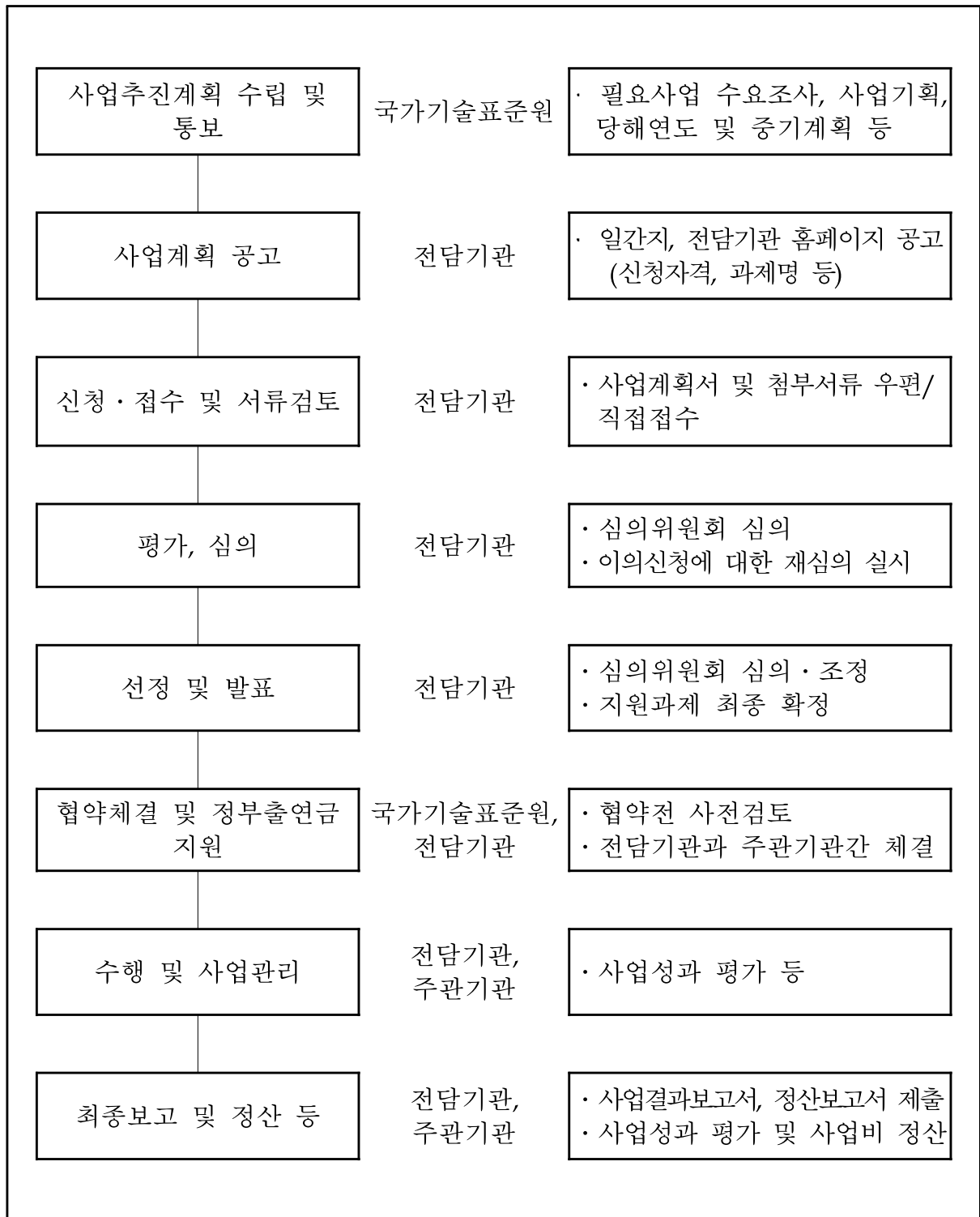
- (무역규모) 국제 계측시장은 EU가 41.5%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며, 선진국은 평균 10%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냄
 - * EU는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41.5%(177,518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14.7%의 성장률을 나타냄
 - * 중국은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26.2%(112,185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22.7%의 최고성장률을 나타냄
 - * 미국은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21.5%(92,141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6.4%의 성장률을 나타냄
- (산업육성전략) 세계 1, 2위의 미국과 일본의 산업육성 체계는
 - 미국은 연방정부의 담당부처별로 지원하나 일본은 과학기술진흥 기구의 국가주도로 산업 지원
 - 미국은 연구비의 90%이상을 공모에 의해 지원하고, 일본은 기기 개발과 요소 기술 프로그램을 나누어 진행
 - * 국내는 계량·측정기기에 대한 부처별 규제만 있을뿐,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 (검정장비 현황) 독일 등 대다수의 OECD는 국제표준(OIML)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의 검사기법, 설비,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는 턱없이 부족
 - *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기법, 설비 등이 없이 일부 계량기에 대한 시험·인증만 가능 (예 가스미터($1,000\text{m}^3/\text{H}$ 이하), 수도미터(350mm이하) 등 다수)
 - * 저울의 경우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OIML MAA) 대상 품목이어서 외국에 별도 시험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검사기법 및 설비 등이 없어 대형 저울 등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는 불가능
- (신기술 계량기 개발) 미국, 일본 등 계량분야 리딩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지능형 IT 융·복합 계량·측정기 개발 등을 집중 지원
 - * 미국(NIST) : 지능형 전력량계 개발지원, 혈당측정기 개발지원 등
 - * 일본(NMIJ) : 질량 교정 기술개발(밀도 측정방법 등) 지원 등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IT를 융합한 계량기(지능형전력량계, 전기차 충전기 등)의 기술기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

(5) 사업추진절차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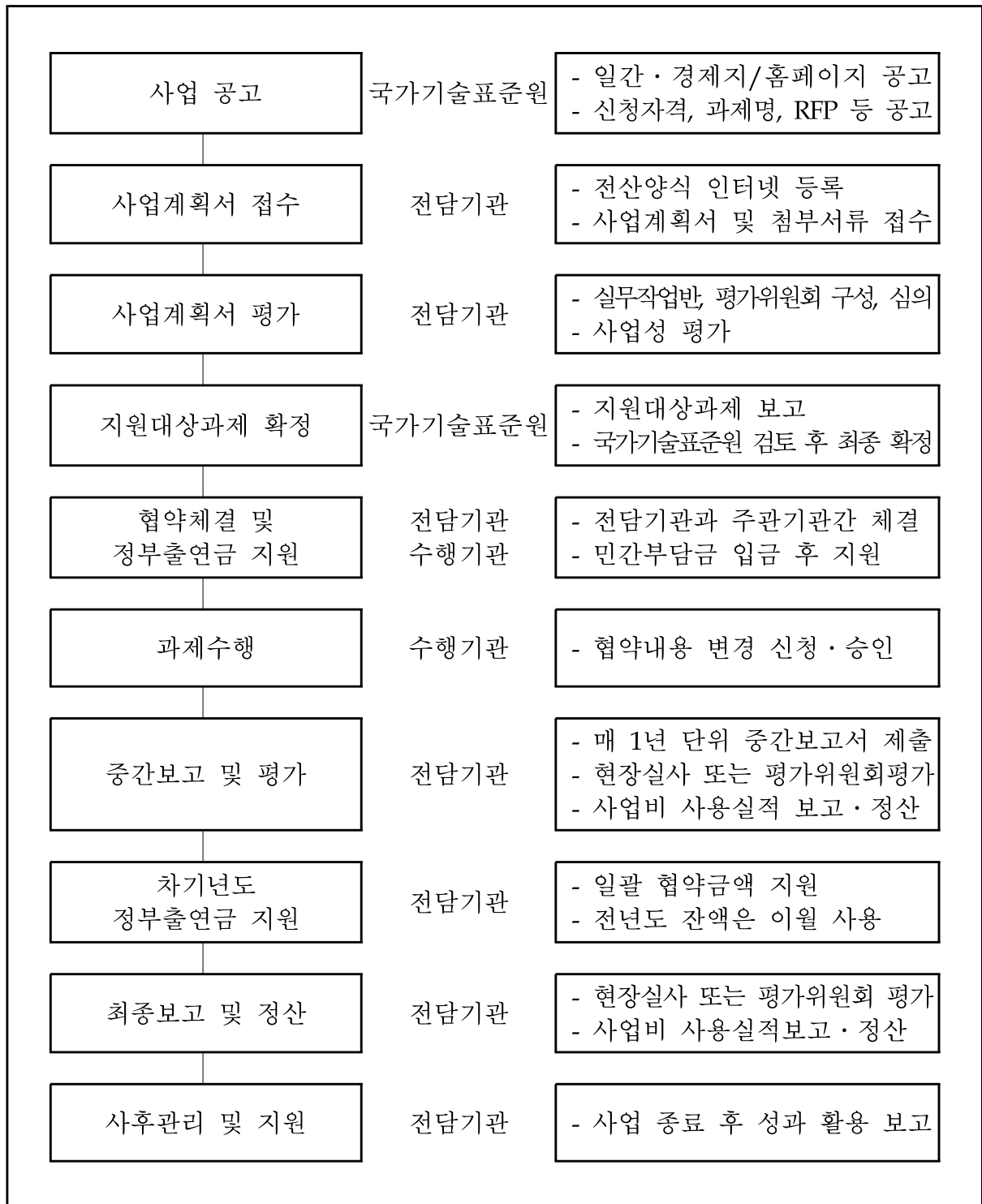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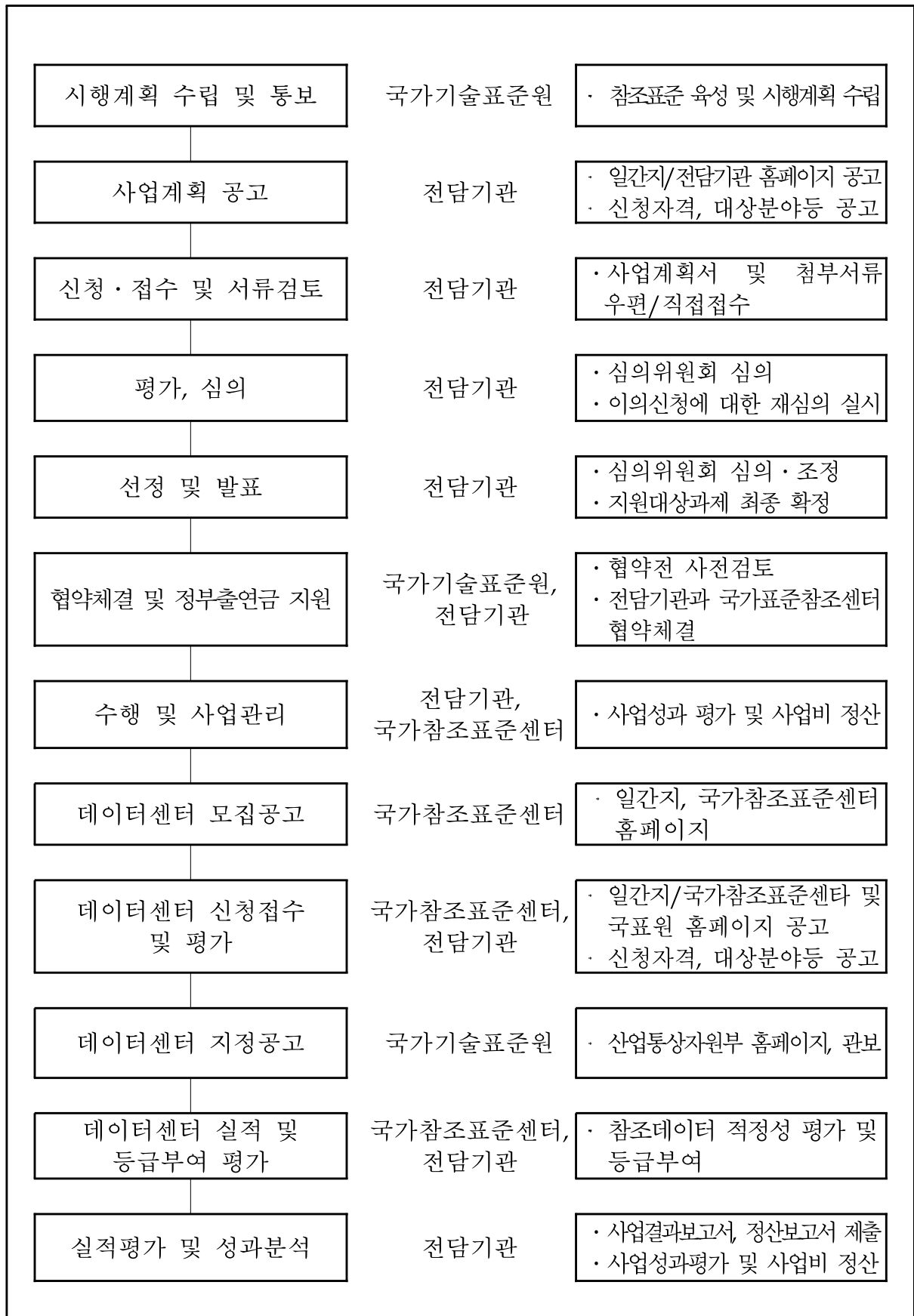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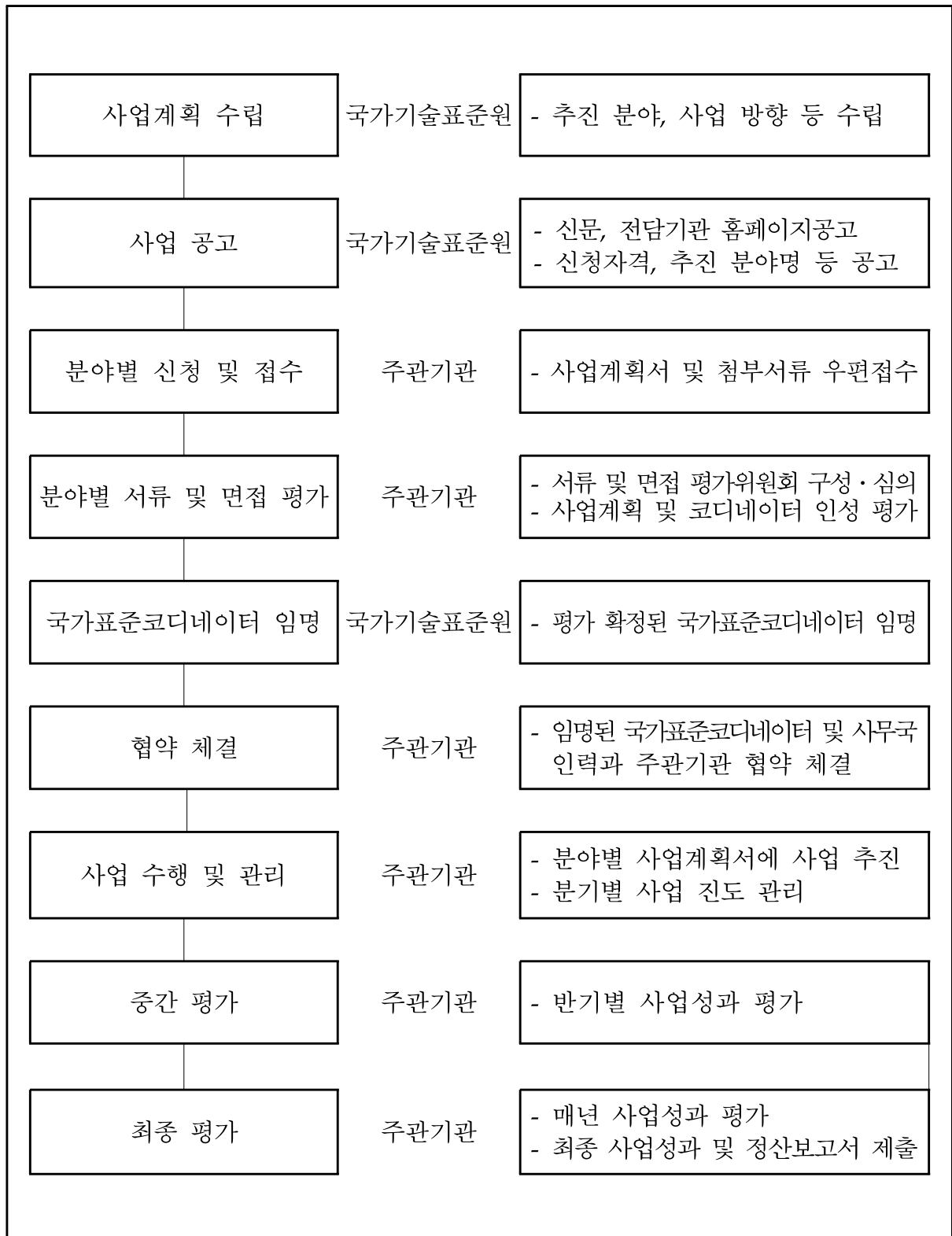
○ 품질혁신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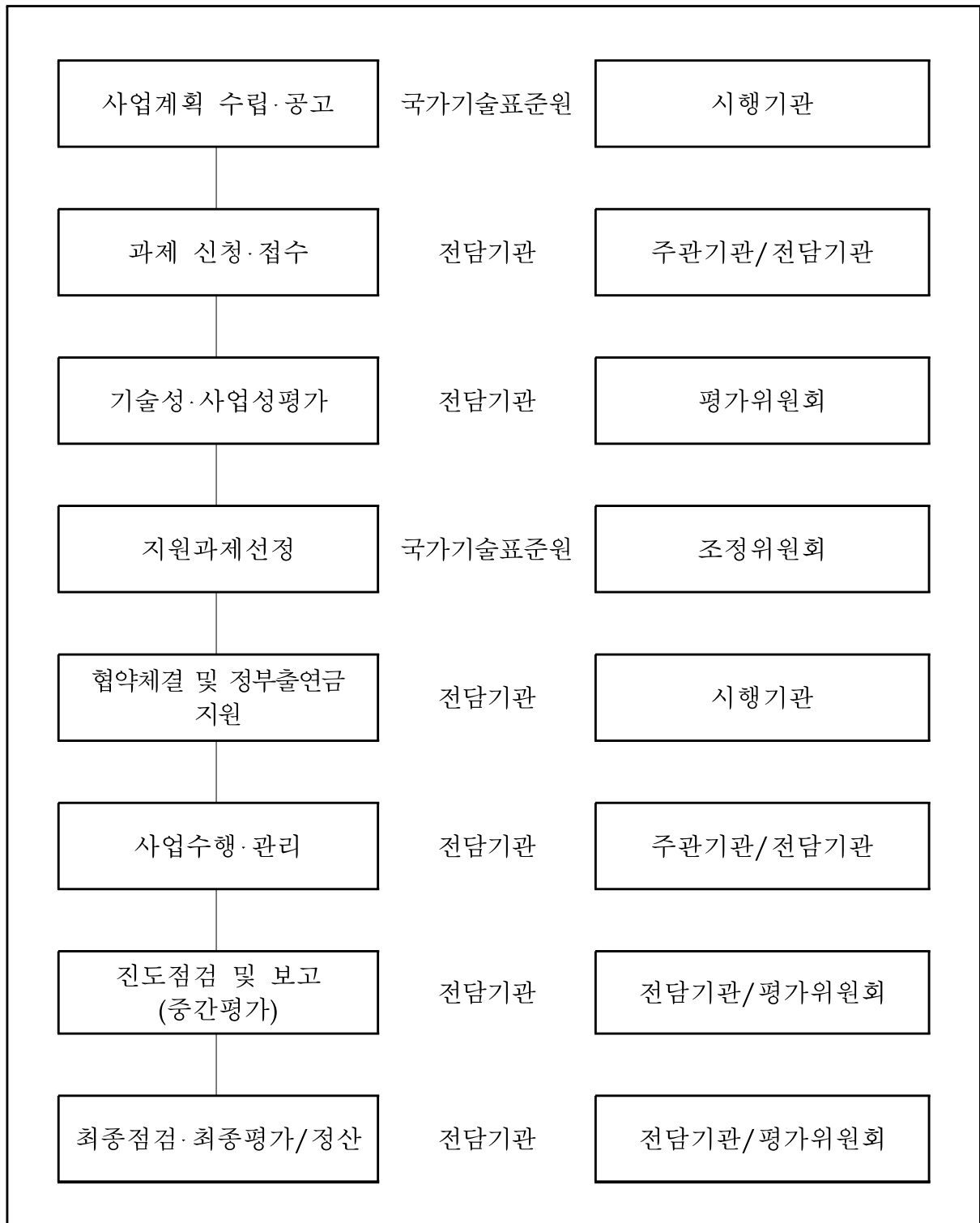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국정과제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1-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 □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창출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표준 선도,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등 기반 조성을 병행

* 규격 평가시험 및 검증 기술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 확대 등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IT 활용 촉진, 서비스 R&D 활성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청년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
- 특히, 유사 또는 이중 서비스간 결합, 융합 등 서비스 쏠분야에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 추진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트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校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시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국가참조표준센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국가참조표준센터(이하“참조표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8조(지원대상사업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장으로 하여금 참조표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조표준 개발 대상을 발굴·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조표준센터 및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9조(형식승인의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계량기의 구조·성능 등을 시험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작업자, 수리업자, 제7조에 따라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기술표준원충북혁신도시이전정착(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술표준원충북혁신도시이전 정착(계속)	-	989	631	△358	△36.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91 - 301

* 담 당 자 : 지원총괄과장(최광국, 02-509-7207), 사무관(탁계성, 02-509-706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를 충북혁신
도시로 이전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14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버스임차료(출퇴근) : 370백만원

- 산출근거 : 4대 × 240일 × 385.4천원

○ 관사구입비 : 170백만원

- 산출근거 : 1채 × 170,000천원

○ 모빌랙 구입 및 설치 : 91백만원

- 산출근거 : 91개 × 1,000천원

□ 지원 필요성

- '14년 청사 지방이전에 따른 기술표준·제품안전·적합성 분야 등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출퇴근 편의성 도모를 위한 버스임차료, 기관장 관사구입 및 모빌랙 구입 등 소요예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기술표준원충북혁신도시이전정착	-	989	631	△358	△36.2
▪ 사무실이전	-	186	-	△186	순감
▪ 도서관이전	-	47	-	△47	순감
▪ 통신시설 등	-	29	-	△29	순감
▪ 칸막이공사	-	111	-	△111	순감
▪ 시험연구시설장비 이전설치	-	616	-	△616	순감
▪ 버스임차료	-	-	370	370	순증
▪ 관사구입비	-	-	170	170	순증
▪ 모빌랙	-	-	91	91	순증
□ 비목(합계)	-	989	631	△358	△36.2
○ 일반수용비(210-01)	-	989	-	△989	순감
○ 임차료(210-07)	-	-	370	370	순증
○ 자산취득비(430-01)	-	-	261	261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기술표준원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전 추진
- 신청사 업무환경 조성에 이전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환경 개선 및 이전 직원들의 편의성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13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이전 : 186백만원 ▪ 도서관이전 : 47백만원 ▪ 통신시설 등 : 29백만원 ▪ 칸막이공사 : 111백만원 ▪ 시험연구비 : 616백만원
'14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임차료(출퇴근) : 370백만원 ▪ 관사구입비 : 170백만원 ▪ 모빌랙 : 91백만원
'15	-	
'16	-	
'17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 범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47조1항에 따른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 신축비, 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적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2008. 12. 30.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국가균형발전위)
- 2010. 03. 30 : 이전청사 부지매입 계약 체결(대한토지주택공사)
- 2010. 05. 13 : 기본/실시설계 연구용역계약 체결
- 2011. 05. 30 : 총사업비조정
- 2011. 11. 30 : 설계완료
- 2012. 03. 15 : 착공식(충북혁신도시 일원)
- 2013. 05. : 과천청사 매각(매각액 978억원)
- 2013. 09. : 지상 골조 완성 및 내·외장 공사 중(공정률 83%)
- 2014. 02. : 청사 준공 예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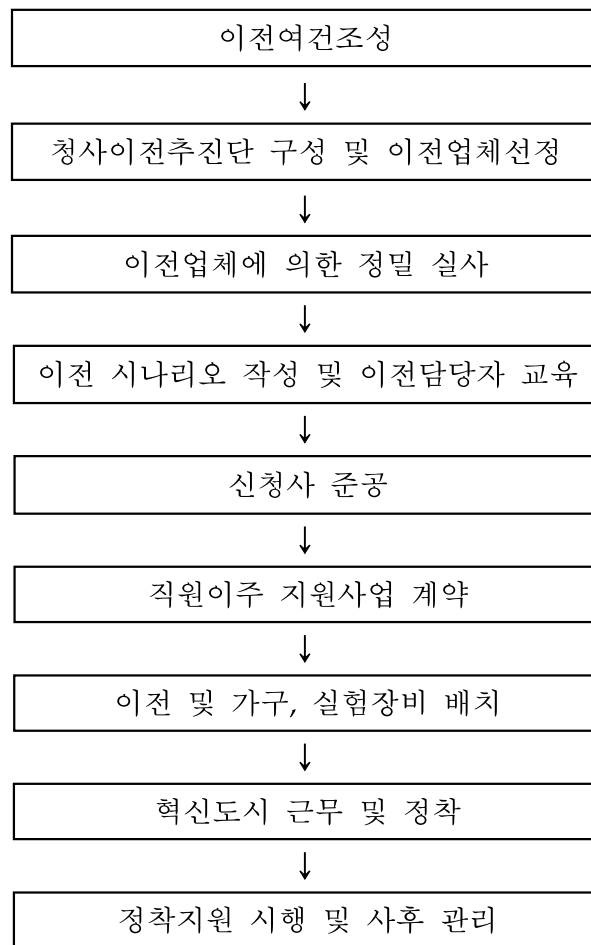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기술표준원충북 혁신도시이전 정착	-	-	-	9.89	6.3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기술표준원기관운영(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30	1,161	1,122	△39	△3.4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1

* 담 당 자 : 지원총괄과장(최광국, 02-509-7207), 사무관(박두강, 02-509-7210),
주무관(김신웅, 02-509-721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시설장비유지비 : 1,045백만원

- 산출근거 : 건물유지비(2백만원), 기계통신 및 전기시설유지비(4백만원),
청사관리용역비(1,039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15백만원

- 산출근거 : 평균연간유류비(1.5백만원)×6대, 평균연간수리비(1백만원)×6대

○ 연금지급금 : 60백만원

- 산출근거 : 일용직퇴직금(50백만원), 산업재해 및 보험료(10백만원)

○ 지식관리포상금 지원 : 2백만원

- 산출근거 : 포상금 등(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표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 및 표준정책 관련한 신속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지원 필요
- 표준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포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포상제도 운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30	1,161	1,122	△39	△3.4
▪ 운영비	1,095	1,127	1,045	△82	△7.3
▪ 보조금	6	2	2	-	-
▪ 민간이전	27	31	60	29	93.5
▪ 건설비	2	1	-	△1	순감
□ 비목(합계)	1,130	1,161	1,122	△39	△3.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77	1,112	1,045	△82	△7.3
○ 차량선박비(210-10)	18	15	15	-	-
○ 포상금 등(310-03)	6	2	2	-	-
○ 연금지급금(320-03)	27	31	60	29	93.5
○ 실시설계비(420-02)	2	1	-	△1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사업으로 지속적인 증액 필요
(전년대비 약 4% 수준의 삭감으로 운영 애로 있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유지비 : 1,110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0백만원 ▪ 연금지급금 : 30백만원
'14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유지비 : 1,050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0백만원 ▪ 연금지급금 : 60백만원
'15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유지비 : 1,050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0백만원 ▪ 연금지급금 : 20백만원
'16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유지비 : 1,050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0백만원 ▪ 연금지급금 : 20백만원
'17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유지비 : 1,050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0백만원 ▪ 연금지급금 : 2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표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
및 표준정책 관련한 신속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지원 필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1.8	11.5	11.5	11.6	1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및 경상경비 절감
- 2011년 : 계약직 직원 퇴직금 부족으로 인한 전용
- 2012년 :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기존청사의 건설비/시설비 및 예상 퇴직직원의 미퇴사로 인한 미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1.80 ()	- ()	△0.9 ()	11.71 ()	11.27 ()	- ()	0.44 ()
'11년	11.51 ()	- ()	0.22 ()	11.73 ()	11.68 ()	- ()	0.05 ()
'12년	11.46 ()	- ()	- ()	11.46 ()	11.30 ()	- ()	0.16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기술표준정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술표준정책	944	914	866	△48	△5.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2

* 담 당 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표준정책과장(유동주, 02-509-7220), 연구사(기현중, 02-509-72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기술표준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표준정책분야 업무수행

- 국가표준선진화전략, 국제표준협력방안 등 기술표준정책분야 연구개발
-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개발한 우수부서 포상
- 국제표준 선도,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회원 부담금 납부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기술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 : 80백만원
 - 산출내역 : 40백만원(평균용역비) × 2과제 = 80백만
 - 표준정책, 국제표준협력, 기술규제대응 분야 연구 등
- 포상금 지원 : 5백만원
 - 산출내역 : 1백만 × 5과(우수부서) = 5백만원
-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부담금 : 781백만원
 - 산출내역 : ISO 등 10개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부담금 = 약 781만원

<최근 3년간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기 구 명	'10년 집행액	'11년 집행액	'12년 집행액
ISO(국제표준화기구)	489	573	597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177	211	168
IECQ(국제전자부품품질인증위원회)	6	6	6
IECEX(국제방폭전기기기인증위원회)	3	4	4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위원회)	8	8	8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12	15	16
APLAC(아·태 시험기관인정협력체)	19	18	18
PAC(태평양인정협력체)	4	4	5
APLMF(아·태 법정계량포럼)	6	10	5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	-	4	5
합 계	734	860	839

□ 지원 필요성

- 글로벌 표준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표준선진화전략, 국제표준협력방안 등 기술표준정책분야의 지속적인 정책연구개발이 필요
- 국가산업발전 및 글로벌표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표준업무 관련 부서 포상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역량 극대화를 유도

- 국제표준 선도,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국정과제 8번)를 위하여,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 부담금 납부는 필수적인 사항임

<최근 3년간 예산 및 실제납부액>

[백만원]

구 분	'10년 예산(실제납부액)	'11년 예산(실제납부액)	'12년 예산(실제납부액)
국제기구부담금 예산	557(723)	591(852)	652(832)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기술표준정책	944	914	866	△48	△5.3
▪ 기술표준정책 연구과제	105	81	80	△1	△1.2
▪ 포상금 운영	6	5	5	-	-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	832	828	781	△47	△5.7
☐ 비목(합계)	944	914	866	△48	△5.3
○ 연구개발비(260-00)	105	81	80	△1	△1.2
○ 보전금(310-03)	6	5	5	-	-
○ 해외이전(340-02)	832	828	781	△47	△5.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최신 산업환경변화 및 국제표준 동향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표준 리더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당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국제부담금 확대 등 국제표준협업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 : 2개×40백만 = 81백만원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부담금 : 10개 기구 = 828백만원
'14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 : 2개×40백만 = 80백만원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부담금 : 10개 기구 = 781백만원
'15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 : 10개 기구 = 581백만원
'16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 : 10개 기구 = 532백만원
'17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 : 10개 기구 = 438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인증)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확정)
- 2006. 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수립
- 2012. 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기술표준정책	8	8	9	9	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기술표준원기본경비(7118-251-210), 기술표준정책국기본경비(7118-253-210) 등에서 168백만원 전용
- 2011년 :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기술표준원기본경비(7118-251-210), 기술표준정책국기본경비(7118-253-210) 261백만원 전용
- 2012년 :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기술표준원 기본경비(7118-251-420), 기술표준정책국 기본경비(7118-253-210) 등에서 180백만원 전용, 용역수행기관의 자진해지요청으로 45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7.95 ()	()	1.68 ()	9.63 ()	9.61 ()	()	0.02 ()
'11년	7.16 ()	()	△47 ()	6.69 ()	6.51 ()	()	0.18 ()
'12년	8.09 ()	()	1.80 ()	9.89 ()	9.44 ()	()	0.45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각국 정책과

○ 연구개발 사업계획 작성

□

해당부서(과, 팀)

○ 부서별 수요과제 제출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 심의회 심의결과를 통한 연구과제 선정

□

해당 부서(과, 팀)

○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

평가

○ 연구결과물 종합 평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제품안전정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제품안전정책	389	371	387	16	4.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3

* 담 당 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환), 제품안전정책과장(전민영, 02-509-7238), 주무관(모덕신, 02-509-724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제품안전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 공산·전기용품 등 생활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정책 수립 및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운영

* 신속조치제도 : 위해제품에 대한 조사(제품사고조사센터 활용 등)후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리콜, 개선조치, 홍보 및 대상품목 반영 등 실시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위한
시료구입·평가 보조비 등 : 124백만원

- 기타직보수(111), 복리후생비(2), 연금지급금(11) 등

* 기타직보수 (111백만원) : 현원 6명 * 평균지급금액 154만원(월) * 12월

○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운영 : 186백만원

- 12품목 × 평균 시료구입·평가비 15.5백만원 = 186백만원

* 시료구입 : 12품목×0.30백만원×10개 = 36백만원

* 시험·평가·분석 등 : 12품목×1.25백만원×10개 = 150백만원

○ 제품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77백만원

- 제품안전정책, 전기제품·생활제품 안전분야 등 연구 : 77백만원

* 평균 연구비 39백만원 × 2과제 = 7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신속조치제도 운영을 통한 제품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구용역 등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제품안전정책	389	371	387	16	4.1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 평가보조비	183	180	186	6	3.5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6	191	201	10	5.0
□ 비목(합계)	389	371	387	16	4.1
○ 기타직보수(110-02)	-	-	111	111	순증
○ 재료비(210-11)	-	27	-	△27	순감
○ 복리후생비(210-12)	-	-	2	2	순증
○ 시험연구비(210-13)	183	157	186	29	15.6
○ 연구개발비(260-00)	206	187	77	△110	△142.9
○ 연금지급금(320-03)	-	-	11	11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제품안전정책 수립 및 신속조치제도 운영을 통한 제품안전 확보
- (추진방향) 제품안전정책 조사·분석, 연구개발 및 신속조치제도 운영을 통한 제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평가보조 : 186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187백만원
'14	3.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평가보조 : 186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201백만원
'15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평가보조 : 150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130백만원
'16	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평가보조 : 132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125백만원
'17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평가보조 : 124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87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08. 3월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수립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제품안전정책	4.55	4.10	3.90	3.71	3.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집행잔액 불용(5백만원)
- 2011년 : 연구개발비 잔액 반납 등에 따른 불용(11백만원)
- 2012년 : 여비(39만원), 일반수용비(34만원) 등 집행잔액 불용(1백만원) 및 시험연구비로 전용(27백만원)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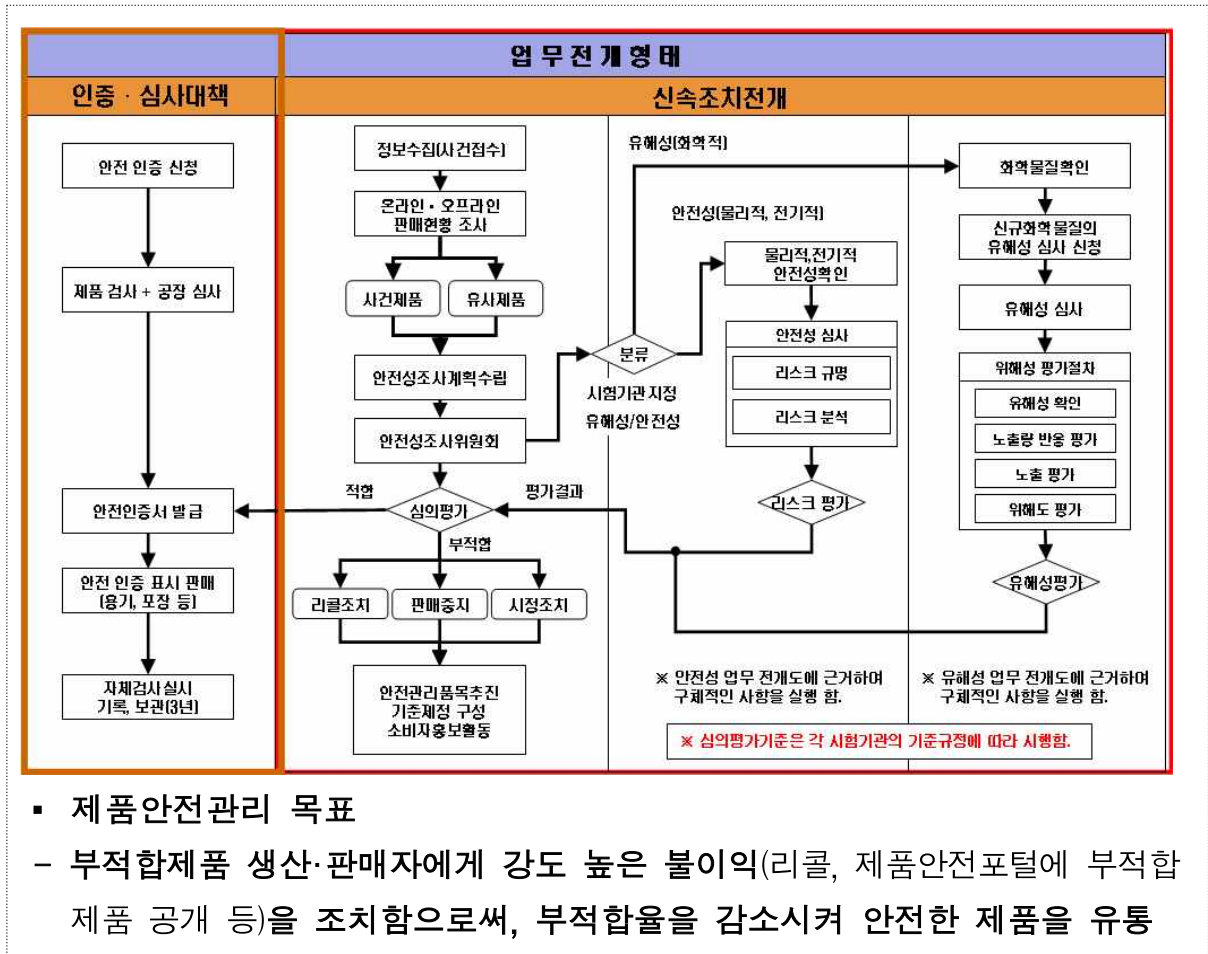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55 ()	()	()	4.55 ()	4.50 ()	()	0.05 ()
'11년	4.10 ()	()	()	4.10 ()	3.99 ()	()	0.11 ()
'12년	3.90 ()	()	()	3.90 ()	3.89 ()	()	0.0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제품안전관리 개략적 업무 흐름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1) 언론보도 - 안전위해 제품 리콜 대표사례(가습기 살균제, 오존살균기 등)

이투데이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019면 정치/사회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명령

복지부, 동물실험서 폐손상 위험 확인
15일 제조사 정보공개 판매 원천 차단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사망한 산모와 영·유아를 사인이라고 잠정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는 한편 12월부터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동물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면(액체)(한빛화학) △세류 가습기 살균제(주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홀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니 가습기 살균제(에스엘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벌엠)이다.

이중 옥시싹싹 가습기 당면, 와이즐렉, 홀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수거대상 가습기 살균제

제품명	제조사
옥시싹싹 가습기 당면(액체)	한빛화학
세류 가습기 살균제(액체)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용마산업사
홀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니 가습기 살균제	에스엘화장품
가습기 클린업	글로벌엠

등 4개 제품의 주요 살균 성분은 'PHMG'으로 밝혀졌다. 세류와 아토오가니에는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가 주요 살균 성분으로 쓰였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가지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람과 같은 병리학적 소견이 나왔다.

실험쥐에게서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삼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고 다른 1개 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

찰됐다. 두 군 모두에서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옥시싹싹 제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1차 실험 결과로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오는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살균제 이외의 다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거대상 6종류 이외에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머지 살균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험을 하고 필요하면 즉각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

다시타입스

2011년 06월 30일 목요일 010면 산업과학

오존살균기 7개 제품 개선·리콜

기표원, 12종 안전성 조사… 배출농도 기준 넘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시중에 유통된 아채과일 세척기, 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 발생 전기용품 12종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 개선 명령을, 1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2개 제품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표원은 국내 판매된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 배출농도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라 관련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험결과 하셀의료기의 하셀에어존(모델명 HS-102), 새한오존의 오존살균탈취기(SOZ-ADC1) 하나제어기의 타이즈(Taize), 바이오니아의 오투플러스 등 4개 실내공기 오존살균기 제품은 근접 배출 오존농도가 1ppm을 넘었다고 기표원은 밝혔다. 기표원은 4개 제품에 대해 오존의 유해성과 사용 주의사항을 제품에 부착시키도록 하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청립테크의 아채·과일 오존세척기 크린플러스(모델명 OKP 9630)는 용기 내 오존 배출농도가

1ppm을 초과해 리콜을 명령했다. 로러스생활건강의 아채과일 살균세척기(LMW-9030)와 J&C글로벌의 다기능 살균세척기(CC-001)는 배출 오존농도가 0.1~0.3ppm을 기록해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으나 장시간 사용시 유해할 수 있어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기표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기제품 중 오존 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 발욕조, 반신욕조 3개 제품에 대해서만 0.05ppm 이하로 규정돼 있고, 살균기나 아채과일세척기 등과 같은 오존발생 제품에 대해서는 오존배출 농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승룡기자 srkim@

▪ 2012년 5월 & 7월 - SBS 보도



▪ 2012년 9월20일 - YTN 등 다수 보도



▪ 2013년 2월6일 - YTN 등 다수 보도



지식산업표준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지식산업표준화	325	314	288	△ 26	△ 8.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4

* 담 당 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표준정책과장(유동주, 02-509-7220), 연구사(기현중, 02-509-72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산업표준정책 수립을 위한 지식산업표준화 업무 수행

- 최근 국제표준 동향 및 산업환경 추세에 따른 신속한 표준화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지식산업분야 표준화 정책 연구 수행
- 국가표준(안) 개발시 요구되는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및 기술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운영 및 관련 시험·평가연구 수행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운영비 : 248백만원

- KS관련 국제표준 조사·분석 및 시험·평가비용 및 회의수당 등
 - 산출내역 : KS(안) 기술검토 및 심의수당, 재료비, 시험수수료, 공청회·세미나 개최, 시험사 인건비 등

○ 연구개발비 : 40백만원

- 지식산업분야 표준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산출내역 : 1개 과제 × 40백만원 =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내·외 동향을 반영한 표준개발 및 보급을 통해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의 다양화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활동예산 지원 필요
- 국가표준 수요 증가에 따른 KS관리 내실화 및 불량 KS인증제품 유통 방지 등을 위해 KS(안) 개발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업예산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지식산업표준화	325	314	288	△26	△8.3
▪ 운영비/인건비	259	244	248	4	1.6
▪ 연구개발비	66	70	40	△30	42.9
□ 비목(합계)	325	314	288	△26	△8.3
○ 기타직보수(110-02)	-	-	130	130	순증
○ 복리후생비(210-12)	-	-	2	2	순증
○ 시험연구비(210-13)	259	244	103	△141	△57.8
○ 연구개발비(260-00)	66	70	40	△30	42.9
○ 연금지급금(320-03)	-	-	13	13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글로벌 산업환경변화 및 민간수요에 따른 신속한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국가표준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확대
- 국내외 시장수요에 맞는 산업표준인증제도 기반조성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및 운영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재료비, 시험수수료, 인건비, 회의수당 등) = 244백만원 ▪ 표준정책연구 : 2개×35백만 = 70백만원
'1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재료비, 시험수수료, 인건비, 회의수당 등) = 248백만원 ▪ 표준정책연구 : 1개×40백만 = 40백만원
'1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재료비, 시험수수료, 인건비, 회의수당 등) = 202백만원 ▪ 표준정책연구 : 1개×35백만 = 35백만원
'1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재료비, 시험수수료, 인건비, 회의수당 등) = 187백만원 ▪ 표준정책연구 : 1개×30백만 = 30백만원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재료비, 시험수수료, 인건비, 회의수당 등) = 149백만원 ▪ 표준정책연구 : 1개×30백만 = 3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표준화법
 -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등)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약)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확정)
- 2006. 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수립
- 2012. 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지식산업표준화	4.3	3.8	3.3	3.1	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집행잔액 등 19백만원 불용
- 2011년 : 집행잔액 등 1백만원 불용
- 2012년 : 집행잔액 등 5백만원 불용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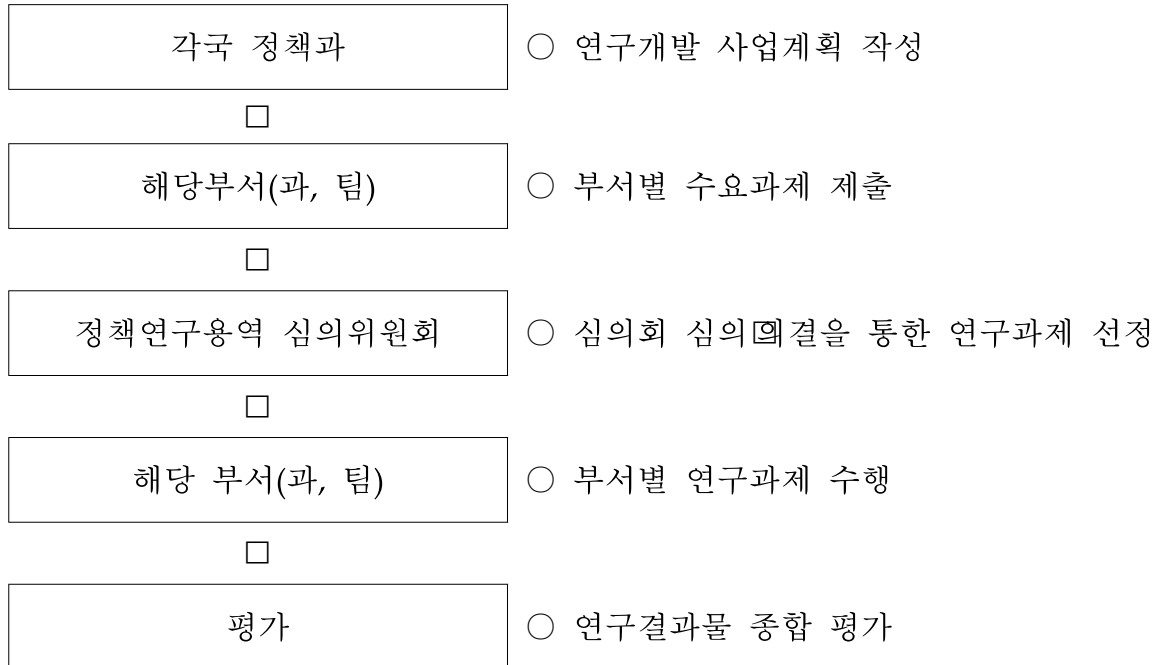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27 ()	()	()	4.27 ()	4.08 ()	()	0.19 ()
'11년	3.84 ()	()	△0.15 ()	3.69 ()	3.67 ()	()	0.02 ()
'12년	3.30 ()	()	()	3.30 ()	3.25 ()	()	0.05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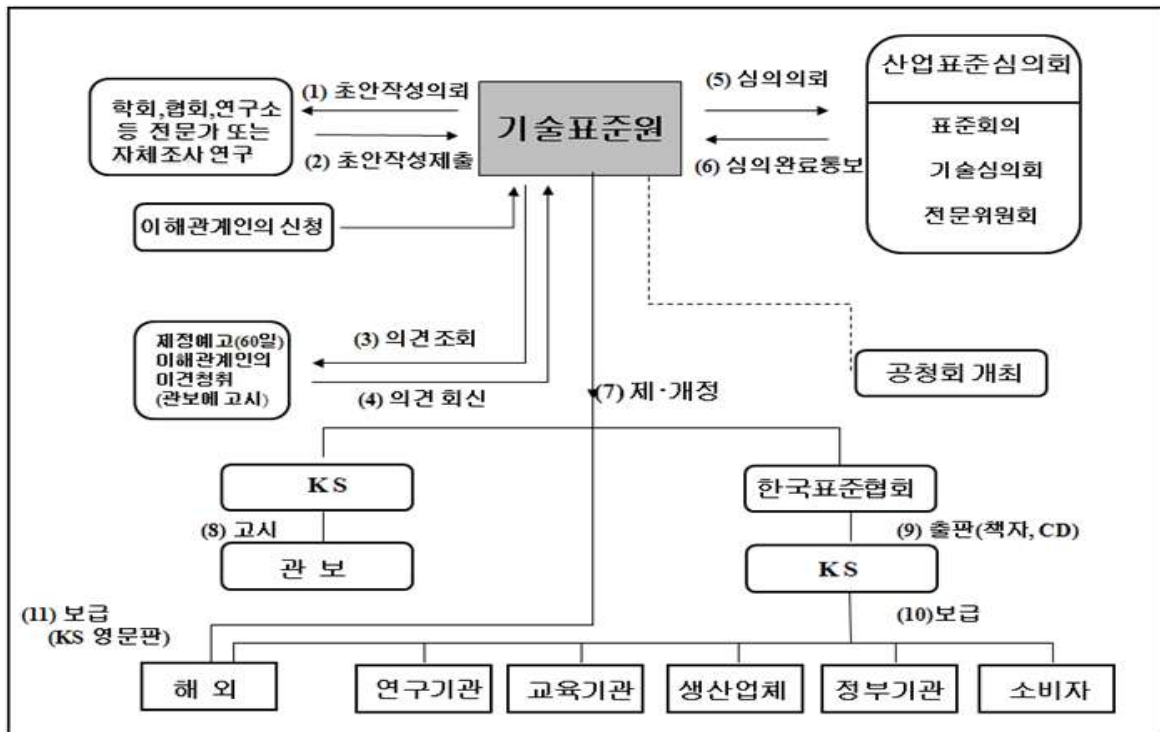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 국가표준 제개정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적합성정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적합성정책	364	346	312	△34	△9.8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5

* 담 당 자: 적합성정책국장(이상진), 시험인증정책과장(김동호, 02-509-7283), 사무관(이정남, 02-509-728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시험·검사·교정·인증 등 적합성정책의 수립 및 운영 지원

-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제도 및 관련 산업 실태조사
- 적합성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시험·평가 업무 수행 등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운영비 : 265백만원

- 기타직 보수(기간제·무기계약직 보수,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 125백만원
-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기구(ISO/CASCO 등) 협력,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간담회, 회의 수당 등 : 104백만원
- 계량기 및 실량표시상품 등 시험·평가 수수료, 시료구입비 등 : 36백만원

○ 연구개발비 : 47백만원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강화와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학술연구 : 1개 과제 × 47백만원 = 4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 연구 개발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운영비 필요
- WTO와 FTA로 인해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와 개방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내·외 실태조사 추진
- 공정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 및 실량표시상품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적합성정책	364	346	312	△34	△9.8
▪ 운영비	265	256	265	9	3.5
▪ 연구개발비	99	90	47	△43	△47.8
□ 비목(합계)	364	346	312	△34	△9.8
○ 기타직보수(110-02)	-	-	112	112	순증
○ 복리후생비(210-16)	-	-	2	2	순증
○ 시험연구비(210-13)	265	256	140	△116	△45.3
○ 연구개발비(260-00)	99	90	47	△43	△52.2
○ 연금지급금(320-03)	-	-	11	11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외 시험인증산업 환경 변화 및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개발 및 동향 조사 강화
- IT 기반 글로벌 시험인증 강국 구현을 위하여 시험인증산업의 활성화, 해외 매출 확대,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운영예산 중기계획 반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적합성평가체계 관련 국제협력, 세미나 등) = 256백만원 ▪ 시험인증 및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연구 : 2개×45백만 = 99백만원
'14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적합성평가체계 관련 국제협력, 세미나, 기타직보수 등) = 265백만원 ▪ 시험인증 및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연구 : 1개×47백만 = 47백만원
'15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적합성평가체계 관련 국제협력, 세미나, 기타직보수 등) = 221백만원 ▪ 시험인증 및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연구 : 1개×40백만 = 40백만원
'16	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적합성평가체계 관련 국제협력, 세미나, 기타직보수 등) = 209백만원 ▪ 시험인증 및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연구 : 1개×30백만 = 30백만원
'17	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적합성평가체계 관련 국제협력, 세미나, 기타직보수 등) = 167백만원 ▪ 시험인증 및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연구 : 1개×30백만 = 3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제21조(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추진경위

- 2010. 11월 :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신설
- 2011. 9월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설립
- 2011. 3월 : 국가적합성평가 협의체 구성(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 2012. 7월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대통령보고
- 2013. 5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TF구성
- 2013. 10월 : 시험인증산업 국제심포지움(명동 포스트타워)
- 2013. 12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장관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적합성정책	4.96	4.46	3.64	3.46	3.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무역투자실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무역투자실기본경비
(7111-254)로 20백만원 전용
조직개편('10.11월)으로 예산집행상 변동사유 발생 15백만원 불용
- 2011년 : 연구개발비 부족으로 인한 지식기반표준화(7134-304) 15백만원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96 ()	()	△20 ()	4.76 ()	4.61 ()	()	0.15 ()
'11년	4.46 ()	()	15 ()	4.61 ()	4.60 ()	()	0.01 ()
'12년	3.64 ()	()	()	3.64 ()	3.6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각국 정책과

○ 연구개발 사업계획 작성

☐

해당부서(과, 팀)

○ 부서별 수요과제 제출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 심의회 심의결과를 통한 연구과제 선정

☐

해당 부서(과, 팀)

○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

평가

○ 연구결과물 종합 평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